



2022.8.2.

국회입법조사처 |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V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22.8.2.

국회입법조사처 |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V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V

- 총괄** 강대훈 (경제산업조사실장)
- 분야별 총괄** 고 원 (정치행정조사실장 직무대리)
김유향 (사회문화조사실장 직무대리)
- 기획 및 조정** 전진영 (정치의회팀장)
조규범 (법제사법팀장)
형혁규 (외교안보팀장)
박영원 (행정안전팀장)
이은정 (금융공정거래팀장)
이세진 (재정경제팀장)
장영주 (산업자원농수산팀장)
정민주 (국토해양팀장)
한인상 (환경노동팀장)
김정연 (교육문화팀장)
김여라 (과학방송통신팀장)
이상묵 (보건복지여성팀장)
- 작성** 김규호·류경주·박재영·박총렬·유제범·이승만·장은덕·정선희·편지은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
구세주·김진수(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정민정(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 편집** 박지은 (산업자원농수산팀 행정실무원)
김효승 (국토해양팀 행정실무원)
이은주 (외교안보팀 행정실무원)
장효은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원)

제21대 국회 후반기의 문을 여는 2022년 국정감사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맞이하는 국정감사이자, 새 정부 출범과 새로운 국회 원 구성 이후 맞이하는 첫 국정감사인 만큼 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에 걸친 국민의 관심이 여느 때보다 크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발간하여 의원님의 국정감사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정 전 분야에 대한 입법·정책 전문연구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는 2009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시작으로 매년 국정감사를 대비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도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담아 의원님의 국정감사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은 상임위원회별 편제에 따라 16개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9권에 나누어 담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와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순서로 구성하였습니다.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감사 주제에 대하여 정리하였고,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에서는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를 평가하였습니다. 다수 상임위원회에서 전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아직 채택하지 못한 사정으로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가 누락되어 전년도 국정감사 결과를 온전히 담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이번 보고서 역시 의미있는 국정감사 주제 도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국회입법조사처 구성원들이 열심히 준비한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가 의원님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국정감사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8월 2일

국회입법조사처장 김 만 흠

목 차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부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

산업통상자원부	5
주요 산업 탄소중립 실행전략 점검	5
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 확충	9
글로벌 공급망 안정 정교화	12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유도	15
서비스산업 온라인·비대면화 정책대응 강화	18
지역혁신 정책추진체계 정비	21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추진 내실화	24
순환경제산업 활성화	26
사후 제품안전관리 노력 지속	28
전기차 도둑충전 방지 대책 마련	30
자율주행 배달로봇 상용화를 위한 규제 개선	33
EU 배터리법에 대응한 배터리산업 육성	3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37
중견기업 범위 기준과 지원정책 개편	39
IPEF 참여 전략의 정교화	42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준비	45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48
EERS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 지원	51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	54
PPA제도 활성화 과제	56
동북아슈퍼그리드 전력망 연계 방안	59
에너지 전환 관련 전력계통 유연성 제고	62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65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	68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원별 개선과제	71
도시가스 노후배관 교체 대책 마련	74

폐업 주유소 대책 마련	76
자원안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정책 강화	79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82
탄소중립을 위한 CCUS 상용화 제도기반 구축	84
청정수소 확대 방안	86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개선	88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90
에너지 부문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향후 과제	92
최근 전기 및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영향	95
중소벤처기업부	98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 보상 체계 정비	98
COVID-19 방역 조치로 폐업한 소기업 지원	102
배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음식점주 상생협력 촉진	104
소규모 물류거점(MFC) 현황 파악 및 규제 필요성 점검	108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기한 폐지	111
중소기업 ESG 경영 촉진 및 확산	114
소상공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117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119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122
제2벤처 붐 지속을 위한 엔젤투자 활성화	125
신산업 구독경제 활성화	127
벤처기업 대표자-공동창업자 간 분쟁 방지	130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	132
특허청	134
인공지능(AI) 진보에 대응한 지식재산권 확립	134
제2부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3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부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45
청년농업인 육성	145
쌀 수급 안정	148
밀과 콩의 재배 확대	151
농가 경영 부담 완화	153
통상환경의 변화와 농업부문 대응 과제	155
해외농업자원개발의 실효성 제고	157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대책	160
농지대책 후속 과제	162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164
농어촌지역 보건·의료분야 서비스 질 향상	166
여성농업인 정책 실효성 제고	169
농촌관광 활성화	172
스마트농업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175
농식품분야 탄소중립 이행계획의 구체화	177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의 확대	179
농식품바우처사업 확대	182
한식산업의 식재료산업과의 연계 강화	185
축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88
폐사가축 신고 등 이력정보 관리 철저	190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	193
반려동물 보험 대책	196
해양수산부	199
CPTPP 수산분야 대책	199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202
수산부산물 범위 확대	204
수산물품질관리 강화	206
항만배후단지 공공시설 관리 주체 설정	209
연안여객선의 안정적 운영	211
친환경선박 건조	213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215
연안침식 대책	217
농촌진흥청	219
농기계 사고 예방	219
치유농업의 정착과 성장 지원	221
산림청	223
임도(林道) 확충 대책	223
산림헬기 및 조종사 확보 필요	226
제2부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231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V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제1부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

제2부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제1부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산업 탄소중립 실행전략 점검

1 현황

- 2021년 10월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 탄소중립 사회가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산업 부문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81.4% 감소를 목표로 함
 - 2018년 전체 배출량 6억 8,630만 톤에서 '배출'과 '흡수·제거'를 합쳐 2050년 0으로 감소하도록 하는데, 산업 부문은 2억 6,050만 톤을 5,110만 톤으로 줄이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

| 2020 탄소중립 시나리오 |

[단위: 백만톤CO₂eq]

구분	배출								흡수·제거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탈루	흡수원	CCUS	DAC
'18년	269.6	260.5	52.1	98.1	24.7	17.1	0	5.6	-41.3	0	0
A안	0	51.1	6.2	2.8	15.4	4.4	0	0.5	-25.3	-55.1	0
B안	20.7	51.1	6.2	9.2	15.4	4.4	9	1.3	-25.3	-84.6	-7.4

주1: 전환 부문 A안-화력발전 전면중단, B안-LNG 일부잔존 가정

주2: 수송 부문 A안-전기·수소차 등으로 전면전환, B안-내연기관차의 대체연료 사용 가정

주3: 수소 부문 A안-국내생산수소 전량 수전해 수소(그린 수소)로 공급, B안-일부 부생·추출 수소로 공급

주4: CCUS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DAC는 직접공기포집 기술임

자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표를 재구성

-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비중이 주요국보다 높은 편인데다가 주력 제조업이 에너지 집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산업 부문의 탄소 배출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함¹⁾
 -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 비중은 2000년 38.2%에서 2017년 42.4%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 전체의 36%를 차지함

1) 이상원·이재윤, 「2050 탄소중립과 제조업이 나아갈 길」, 『KIET 산업경제 2021년 8월』, 산업연구원, pp.22-24.

- 2017년 기준 배출량은 철강 1억 490만 톤, 석유화학 4,080만 톤, 시멘트 3,560만 톤, 정유 1,550만 톤의 순서로 이들 4개 산업이 산업 부문 내 배출량의 76% 가량을 차지함
- 국내의 탄소 7대 다배출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특징은 다음과 같음²⁾
 - 철강: 고로 제강과정에서 유연탄 사용 수준이 높아 대표적 다배출 산업으로 유연탄 사용으로 인한 직접배출이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음
 - 시멘트: 주원료인 석회석을 중간 생성물 클링커로 변환하는 소성 공정에서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되며 공정배출이 67%, 연료 사용으로 인한 직접배출이 27%를 차지함
 - 석유화학: 원유 정제 시에 발생한 납사를 열분해하는 상공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직접배출이 64%, 저압 에너지를 사용하는 하공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간접배출이 34%를 차지함
 - 정유: 증질유 분해시설 24%, 상압증유 시설 18%, 방향족 제조 15%, 수소 제조 14% 등으로 배출되고 정제 가스 비중이 70% 이상이어서 직접배출 비중도 높음
 -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공정가스 사용으로 인한 공정배출이 18%, 에너지원인 전력 등으로 인한 간접배출이 78%를 차지함
 - 디스플레이: LCD와 OLED 제작·증착 과정에서 공정가스를 사용하는데 이때 다양한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됨
 - 전기전자(가전·이차전지·전선 등): 가전 냉매와 이차전지 절연가스에서 주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공정배출 비중이 70% 이상임

■ 이상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과 주요 산업별 탄소중립 전략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대부분 공정 자체의 변화, 연료 대체, 탄소포집 및 활용 등 기술개발이 중요한 과제임

| 주요 업종별 탄소중립 추진전략 |

	주요 추진전략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년 수소환원강이 전로강을 대체, 2040년까지 에너지효율개선 및 전기로 확대 ● 단, 수소환원제철의 기술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가정
시멘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회석 대체, 폐자원 및 수소 활용 ● 자체 CCU(탄소활용) 기술개발(이산화탄소 경화 시멘트 개발, 탄산염 자원화 등) 추진
석유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으로 연료 전환 부분적 도입, 중장기적으로 납사를 바이오·수소로 대체
정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탄소 연료에서 저탄소 연료로 대체 ● COTC(원유에서 석유화학 물질을 더 많이 추출) 등을 통한 산업의 융복합화
반도체·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가스 개발, 저감장치 설치
전기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냉매 대체

2) 위의 글, pp.24-26.

주요 추진전략	
자동차	• 전기차, 수소차 등 신에너지차 확대
조선	• 가스, 수소 운반선 건조 역량 확보
기계	• 에너지효율개선, FEMS(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친환경 설비 공급, 설비·장비 스마트화

자료: 이상원·이재윤, 앞의 글, p.28 <표 2>

2 향후 논의 사항

- 현재 마련되고 있는 주요 산업의 탄소중립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혁신공정 또는 관련 기술들은 기술개발이 쉽지 않거나 단기적인 도입·상용화가 곤란한 경우가 많은 상황으로,³⁾ 이제부터는 경제성·실현가능성에 따라 이행전략과 투자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탄소배출 산업인 철강의 경우 선구적인 노력을 해온 일본 철강업계에서도 수소환원제철의 실용화를 당초 2100년을 목표로 할 만큼 장기적 과제였다가 일본 정부의 2050 방침에 따라 목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대대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⁴⁾
 - 시멘트의 경우도 원료인 석회석을 대체하는 공정 개발이 쉽지 않고 각종 혼합재 확대 등의 방안도 건축자재 등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하는 등 많은 한계가 있어 CCUS 기술의 조기상용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⁵⁾
 - 따라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한 현재 상황에서는 주요 산업별로 탄소중립 실현수단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해외의 선도적 기술 연구, 관련 법·제도 개선, 국가·지자체·민간의 R&D 투자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할 시점으로 볼 수 있음
- 민간의 투자와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를 위한 각종 지원과 협력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⁶⁾
 - 탄소저감 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정책금융 활성화, 보험상품 개발 등 위험 부담 최소화, R&D 및 설비 투자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 혜택 확대, 저탄소 설비시설 도입 비용의 보전,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등을 고려할 수 있음

3) 산업별 세부적인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정책 과제, 관련 기술 동향 등은 이하 산업연구원 자료를 참조할 수 있음(이재윤·양진혁,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김경유·조철, 『자동차산업 탄소중립 추진 동향과 과제』; 박훈, 『국내 섬유와 제지산업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남상욱,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의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이고은, 『국내 시멘트산업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조용원 외, 『석유화학산업 탄소중립 전략과 정책적 대응방안』 등)

4) 사공목, 「일본 철강산업의 탄소중립화 전략」, 『KIET 산업경제 2022년 1월』, 산업연구원, pp.62-63.

5) 이고은, 『국내 시멘트산업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2022.

6) 이상원·이재윤, 앞의 글, pp.29-31.; 정은미, 「탄소중립, 산업구조 재편으로 대응해야」, 『나라경제』 2021년 3월호, 한국개발연구원.

- 저탄소 대응에서 소외·피해를 당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지역에 대한 지원, 중앙·지방·지역·기업·시민사회 간의 분쟁조정·의견수렴 등의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⁷⁾

작성자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장은덕 ☎ : 02-6788-4596**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산업환경과
☎ : 044-203-4210·4248

7) 이상원, 「저탄소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KIET 산업경제 2022년 6월』, 산업연구원, pp.103-104.

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 확충

1 현황

- 4차 산업혁명을 통해 확산되던 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이 코로나 19 팬데믹을 통해 더욱 촉발되어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융복합이 산업에 신속하게 도입되는 상황이 향후에도 가속화될 전망이다⁸⁾
 - 산업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5G, AR·VR 등을 이용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 개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제조공정의 생산성 개선 등을 창출하는 것임⁹⁾
- 정부는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디지털 뉴딜」을 발표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디지털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2020. 8월), 「산업 디지털전환 확산 전략」(2021. 3월)을 발표하였으며, 2022년 1월 제정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됨
 - 산업통상자원부는 ① 업종 전반에 맞춤형 DX 추진(산업 디지털전환 추진 체계 마련, DX 수준별 대표 프로젝트 추진 포함) ② 기업 DX 촉진 지원기반 확충(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성과 창출 체계 강화) ③ 지역·공공 DX 지원 거점 마련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임¹⁰⁾
- 국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산업군 및 기업 규모별로 격차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¹¹⁾
 - 최근 자료에서는 디지털 전환 단계(0~5단계) 전체 평균은 3.1 단계인데 산업군별로 보면 IT 서비스(3.9), 비IT서비스(3.2), 비IT제조(2.9), IT제조(2.7) 순서임
 -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중견기업이 평균 3.7단계, 중소기업은 3.0~3.1단계로 격차가 큰데 다만, IT서비스 소기업은 평균 3.8단계로 IT제조 대·중견기업(3.2)과 비IT제조의 대·중견기업(3.5)보다 높게 나타남¹²⁾

8) 심우중·김종기, 「한국 산업의 디지털 전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KIET 산업경제 2022년 2월』, 산업연구원, p.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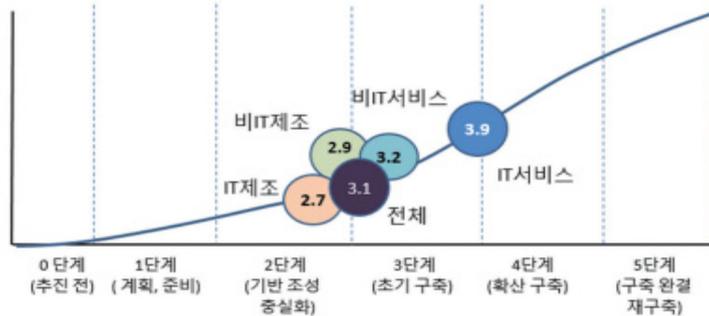
9) 위의 글, p.24 각주2.

10)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2022.06.17.

11) 조영삼, 「디지털 전환의 중소기업 수용성 제고방안」, 『i-KIET 산업경제이슈』 제99호, 산업연구원, 2020.12.02.; 조영삼 외,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전략과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2021;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2022.06.17.; 심우중·김종기, 앞의 글.

12) 심우중·김종기, 앞의 글, p.20.

| 국내 산업의 디지털 전환 단계 |



자료: 심우중·김종기, p.28(2021. 7~9월 산업연구원 설문조사)

- 주요 업종별 DX 수준도 상이한데,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범용 소재·부품 산업은 DX 수준이 낮고, 대기업이 선도하는 고객서비스 접점 분야(가전, 전기자율차, 유통)는 DX 혁신이 진행되고 있음¹³⁾

2 향후 논의 사항

■ 기존의 연구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¹⁴⁾

- AI, AR·VR,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신기술 변화를 선도하고 시스템반도체, 이차전지, 융합센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의 전략 신산업과 연계하는 과감한 육성·투자가 필요함
- 중소기업 DX 성공사례 발굴·보급, 중소기업 대상 추가적인 수요조사, 중소기업 애로사항인 기술활용 및 솔루션 개발에 대한 지원방식 다양화, 중소·중견기업의 엔지니어링 역량을 보완할 맞춤형 기술지원 및 공유 플랫폼 개발,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 간 디지털 제조생태계 조성, R&D 지원 절차의 간소화 등이 요구됨
- DX 플랫폼 및 이를 통한 제조의 서비스화를 위해 비즈니스 모델 개발, 중소기업 특화 기술 개발,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 관련 규제 개선 및 이를 위한 기업·이해당사자의 협력체 구성, 실증 R&D 투자 확대, 서비스 인증체계 마련 등과 함께 글로벌 표준 논의 적극 참여, 핵심 표준화 선점 전략 구상·실행 등도 필요함

■ 새로 제정·시행되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및 관련 제도에서 산업데이터 활용의 정책방

13)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2022.06.17.

14) 심우중·김종기, 앞의 글, pp.34-35.

향에 대한 검토와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함¹⁵⁾

-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관한 기존 규제의 틀, 의료·바이오·금융 등 전문분야의 규제 등에 대한 기업의 완화 요구와 이에 대한 반론이 지속적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규제개선의 방향성과 산업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장은덕 ☎ : 02-6788-4596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 044-203-4542·4548

15) 위의 글, pp.35-36.

글로벌 공급망 안정 정교화

1 현황

- 중·일 영토분쟁과 희토류 사태,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요소수 사태, 코로나19 팬데믹, 반도체 대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겪으며 공급망 안정이 주목받고 있음
 - 최근 일련의 공급망 관련 상황은 일시적인 갈등이나 사례가 아니라 세계 경제생산 및 우리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어왔던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구조적 변화로 나타나고 있고, 주요국의 전략적 조치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거시적 요인까지 다양한 수준의 영향이 나타남
 - 이에 그동안 개별 기업 차원에서 다루어지며 시장 기능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되던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SCM)의 문제가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산업경쟁력, 외교·안보 및 사회 안정을 위한 중대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음¹⁶⁾
 - 우리의 경우 공급망 취약품목 중 절반 이상이 중간재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반도체·디스플레이의 경우 일본에 대한 자본재 의존도가 높으며, 공급망 취약 품목들이 주력산업과 직결되어 2차 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임¹⁷⁾
- 주요국에서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자국 내 일자리 및 투자 확보를 위한 경쟁을 가속화하면서 동시에 무역패권경쟁과 경제안보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하고 있음¹⁸⁾
 - 미국: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2018) 등의 외국인투자 규제 강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법」(2020)의 민간조달 규제, 「2021국방수권법」을 통한 반도체 공장·설비 지원, 2021년 2월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반도체, 배터리, 광물자원, 의약품), 「혁신경쟁법안」을 통한 기술경쟁·대중제재·인재양성·투자강화 등으로 대응함
 - 유럽: EU 규정(Regulation 2019/452)을 통한 외국인투자 감시체계 강화, 독일의 중요 IT 인프라에 대한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2021), EU 집행위의 ‘신산업전략 패키지(2020. 3월)’ 업데이트(2021. 5월)에서 해외의존도 민감품목 분석 및 전략적 자율성 강화 정책 추진,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2021)」의 안보위험 관련 외국인투자 제한 등으로 대응함

16) 이준,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대외 여건 변화와 대응 방안」, 『KIET 산업경제 2022년 2월』, 산업연구원, p.8.

17) 위의 글, pp.16-19.; 김바우 외, 「한국 산업의 공급망 취약성 및 파급경로 분석」,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23호, 산업연구원, 2021.11.18.

18) 국회입법조사처 내부자료; 사공목, 「일본의 경제안보법 제정 경위와 함의」, 『KIET 산업경제 2022년 3월』, 산업연구원, pp.71-76.

- 일본: 지난 5월 「경제안보법」(2023년 시행)이 통과하였는데 중요물자의 공급망 강화, 핵심 인프라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첨단기술 민간협력 강화, 특허보호 강화 등이 내용임
- 정부는 공급망 안정과 관련하여 ‘공급망 관련 3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품목 수급과 관련된 점검체계를 마련하여 시장상황에 대응하고 있음¹⁹⁾
 - 공급망 관련 3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언론보도 등을 참고하면 (1)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기재부 소관-공급망 관련 정책체계와 관리체계 및 민간인무·지원 등) (2) ‘자원안보 특별법’ 제정(산자부 소관-에너지·수소·핵심광물 등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산자부 소관-수입선 다변화,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의 노력에 대한 정부지원) 등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임
 -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망 불안정성 대처 민간협력 조기경보체계 구축(21.12월),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21.12월), 무역협회 내 ‘GVC 분석센터’ 설치(22.2월),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발간(22.3월~), 산업안보 TF 운영(총 22차) 등으로 대응하여 왔음

2 향후 논의 사항

-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부 개입이 강조되고 법제화도 추진되고 있는데 개입의 원칙·기준을 설정하고 정책추진 로드맵을 마련하여 대응체계의 예측성·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²⁰⁾
 - 공급망 교란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책임과 업종·품목별 특정 임계 수준 이상 시의 정부 개입 간의 기준을 설정하여 민간·시장 기능의 효율성과 정부 조치 간의 조화를 기하고, 법제화 방안 및 정부 개입의 범위를 단기~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여야 함
- 핵심품목 모니터링 지속, 비축 확대, 수입처 다변화, 국내생산 전환, 국내투자 유치, 우호국과의 산업안보 네트워크 형성 등의 정책대안과 협력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공급망 안정 정책의 기본바탕으로 산업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된 데이터 등의 축적·분석을 정교화하며,²¹⁾ 모니터링 및 국내생산을 위한 민간협력 강화, 수입처 다변화 및 산업안보를 위한 관련국 협력 강화, 국내투자 지원 등을 꾸준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첨단기술·산업의 경쟁력이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19)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2022.06.30.

20) 이준, 앞의 글, pp.20~21.

21) 김계환 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우리의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2020, pp.229~230.

충격을 대응하고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지렛대가 될 수 있으므로, 국내 산업부문의 축소와 기술경쟁력 및 기술인력·자산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²²⁾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장은덕 ☎ : 02-6788-4596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 : 044-203-4914

22) 이준, 앞의 글, p.22.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유도

1 현황

-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이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유턴, 리쇼어링)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고, 주요국에서도 기업·투자 유치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불황을 거치며 선진국에서는 비용절감 등으로 추진되었던 오프쇼어링(생산기지 해외진출)을 되돌리려는 리쇼어링 지원을 강화하였고,²³⁾ 최근에는 무역분쟁·코로나19·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및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관심이 증대함
 - 새 정부 출범을 위한 대통령직인수위도 공급망 안정을 위한 유턴·외자유치 확대를 국정 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²⁴⁾
- 현재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또는 첨단산업·공급망 관련 국내복귀에 대해 보조금, 조세감면,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4~2022년 6월까지 총 115개 기업이 선정됨
 - 지원 내용으로는 투자보조금(이전보조금, 설비보조금), 조세감면(법인세 50~100%를 최장 7년, 자본재 수입 관세를 50~100%),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컨설팅(최대 2만 달러), 고용보조금 및 외국인고용 비자발급, 스마트공장 보조금, 입지지원(국·공유재산 특례, 산단 입주), 금융지원, 보증보험 우대, R&D 지원 등이 있음²⁵⁾
 - 국내복귀 기업 선정 현황을 보면 2017년 4개 → 2018년 8개 → 2019년 14개 → 2020년 23개 → 2021년 26개 등이고 중소기업이 90개, 중견기업이 23개, 대기업이 2개임
 - 국내복귀 후 15개 기업이 폐업한 상태임

23) 맹수석,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평가」, 『입법평가연구』 제17호, 한국법제연구원, 2020. 7., p.134.; 이수영 외,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pp.30-45.

24)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 5., p.49.

25)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zip」, 2021. 6.; 손동희,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1. 5.; 김종규,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입법·정책보고서』 제59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 10.

| 국내복귀 기업 선정 현황 |

[단위: 개]

연 도	'14	'15	'16	'17	'18	'19	'20	'21	'22.6.	계
선정 기업 수	15	2	10	4	8	14	23	26	13	115
(중소기업)	15	2	9	4	8	11	17	17	8	90
(중견기업)	-	-	1	-	-	2	6	9	4	23
(대기업)	-	-	-	-	-	1	-	-	1	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2022.6.23.

2 향후 논의 사항

- 다양한 유형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국내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 파악과 맞춤형 지원 노력, 성과관리 노력이 체계적으로 환류되어야 함
 - 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특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복귀를 주로 지원하고 있는데, 국내생산·고용창출을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다양한 형태의 국내복귀 수요를 파악하고 한계기업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국내 산업정책·균형발전 및 공급망 안정 등 국내경제 파급효과와 정책적인 핵심산업을 연계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함²⁶⁾
 - 해외사업장 청산 등의 요건보다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고위기술산업, 의료, 안보 등 국내 투자효과가 큰 분야나 국내 산업정책·균형발전·지역혁신, 공급망 안정 등 전략적 관점에서 지원의 대상·수준을 재편성·확대하는 방향이 효율적임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의 목표·방향을 각종 투자지원제도 전반과 연계하여 재검토하면서 국내투자 활성화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기업환경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²⁷⁾
 - 현재는 외국인투자 등 각종 투자지원을 칸막이식으로 분류하여 서로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경쟁력 있는 기업의 투자 유치로 실제 연결되는지 검증하기 어렵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할 우려가 있음
 - 국내복귀 지원을 포함하여 업종·국적·투자유형 등을 복잡하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고부가

26) 민혁기, 「우리나라 유턴기업의 실태와 개선 방향」, 『i-KIET 산업경제이슈』 제91호, 산업연구원, 2020.09.03.

27) 이수영 외, 앞의 책, pp.148-168.; 최혜린·이수영·박민숙, 「미국, 유럽, 대만의 리쇼어링 현황과 정책에 대한 분석」, 『한국경제학보』 제27권 제2호,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20, pp.132-134.

가치 창출 등을 중심으로 국내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기업환경으로 개선하고 걸림
돌이 되는 시장요소, 법적문제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중요할 수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장은덕 ☎ : 02-6788-4596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 : 044-203-4069·4065

서비스산업 온라인·비대면화 정책대응 강화

1 현황

-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 서비스, 비대면 경제, 비대면 기업과 이를 가능케 하는 통신 및 디지털 기술, 빅데이터·가상현실 등 최신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에는 최신 기술을 친숙하게 활용하는 MZ 세대가 소비 주요 주체로 등장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며 개인화 성향이 강해진 수요 측면의 변화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함²⁸⁾
 - 비대면 서비스산업 규모를 추정한 연구결과를 보면 사업체는 2011년 24,718개에서 2019년 60,395개로, 종사자는 2011년 311,000명에서 2019년 487,356명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2015년 이후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한 양상을 보임²⁹⁾

| 비대면 서비스산업 규모 추정치 |

[단위: 개, 명]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체	24,718	28,146	29,935	35,253	35,570	40,328	41,995	49,037	60,395
종사자	311,000	295,253	339,845	367,213	314,923	396,857	399,780	449,269	487,356

자료: 송영진 외, p.47.

- 최근 몇 년간 유통업체 매출을 보더라도 온라인 매출은 10% 중반 이상 꾸준히 성장한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2020년 -3.6%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에 소비 위축을 다소 회복함³⁰⁾

| 유통업체 전년대비 매출 증감률 추이 |

[단위: %]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유통업체 합계	7.0	8.5	6.2	6.8	4.3	5.5	11.3
- 오프라인 매출	3.5	4.5	3.0	1.9	-1.8	-3.6	7.5
- 온라인 매출	16.0	18.1	13.2	15.9	14.2	18.4	15.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8.01.31. 및 2022.01.27.

28) 송영진 외, 『서비스산업의 비대면화에 따른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산업연구원, 2021, pp.29-37.

29) 위의 책, pp.46-48.

30)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7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 전년대비 6.2% 증가」, 2018.01.3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1년 연간, '21년 12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2022.01.27.

- 참고로,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15년 19.1%, 2016년 20.5%, 2017년 19.2%, 2018년 22.6%, 2019년 18.3%, 2020년 19.1%이었음
 - 2021년은 총 192조 8,946억 원(모바일 비중 71.6%)으로 전년 대비 21.0% 증가함³¹⁾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오프라인 기반 중소기업에게 대해 온라인 전환 지원 및 디지털 경쟁력 강화, 디지털유통물류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있음³²⁾
 -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한 풀필먼트 센터³³⁾의 보급을 확산하고 있는데, 상권유형별로 포항(점포중심형), 창원(도소매복합형), 부천(도심형)에 설계·구축 중임
 - 오는 11월에 포항센터가 구축 완료될 예정이며, 여타 지역에도 풀필먼트 표준모델 보급·확산을 추진함

2 향후 논의 사항

- 비대면 서비스 모델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 R&D 및 상용화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된 규제개혁 및 관련 갈등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³⁴⁾
 - 기초 R&D 뿐만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시장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글로벌 시장 선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지역 및 상권 단위의 디지털 전환, 플랫폼 구축 및 상생협력을 유도할 필요도 있는데 이는 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선도할 필요도 있음³⁵⁾
- 예측하지 못하는 시장 등장에 대비하여 신산업 분야, 비대면 산업 분야 등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³⁶⁾
 - 규제샌드박스가 규제개선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거나 기존 규제구조를 넘어서지 못하며 새로운 시장·기술 및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음

31) 통계청 홈페이지 새소식-보도자료-도소매·서비스-온라인쇼핑동향 게시물 다수 참조

32)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2022.06.21.

33)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품입고·보관·주문·배송 등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모든 유통 단계를 통합 관리

34) 박정수 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서비스 모델과 정책 과제」, 『i-KIET 산업경제이슈』 제83호, 산업연구원, 2020.05.15.

35) 제주테크노파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 방안」, 『ISSUE PAPER』 제8호, 2021. 7.

36) 송영진 외, 앞의 책, pp.128-132.; 이준호, 『비대면 산업 성장에 따른 법적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1.10.31., pp.313-315.

■ 이 외에 비대면 산업을 선도할 인력양성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³⁷⁾도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장은덕 ☎ : 02-6788-4596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 : 044-203-4388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 : 044-215-4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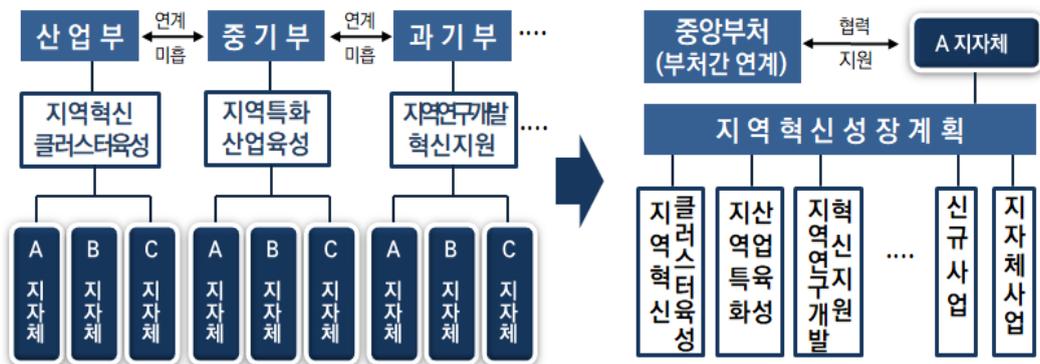
37) 박정수 외, 『새로운 직업·직무 출현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인력정책 방향』, 산업연구원, 2021.

지역혁신 정책추진체계 정비

1 현황

- ‘지역혁신’ 또는 ‘지역혁신체계(region innovation system: RIS)’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으로 논의되어 2000년대 이후 우리의 균형발전 논의 및 정책에도 적용되었으며,³⁸⁾ 최근에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주도 혁신성장의 핵심으로 강조됨³⁹⁾
 - 2018년 3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종전 ‘지역발전’ 개념을 ‘국가균형발전’으로 개편하면서 ‘지역혁신’ 용어를 새롭게 규정하였으며,⁴⁰⁾ 지역혁신체계로서 시·도에 설치하는 지역혁신협의회와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혁신지원단, 혁신지원센터 등을 도입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19년 10월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지역혁신사업에서 부처별 칸막이 구조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로 바꾸면서 지역 중심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로 함⁴¹⁾

| 지역혁신사업 추진방식 개편 |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도자료, 2019.10.30.

38) 장재홍, 『지역혁신정책과 지역균형발전 간의 관계 분석 및 정책 대응』, 산업연구원, 2005.

39) 김주태·고경일, 「지역혁신체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21. 3., pp.363-365.

40)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산업생산·기업지원·문화·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는 것”을 말함(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

4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도자료, 「지역혁신체계 전면 리모델링, 지역 혁신성장 속도 낸다」, 2019.10.30. 및 해당 보도참고자료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

- 최근 의결된 「2023년도 지역혁신성장계획」(2022.5.30.)에 따른 지역혁신전략산업 예산규모(안)을 보면 국비 9,212억 원, 지방비 6,742억 원 등 총 1조 5,953억 원임

| 2023년도 시·도별 지역혁신전략산업 예산규모(안) |

[단위: 백만 원]

구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국비	30,245	88,490	210,732	74,399	43,005	17,700	34,809	78,175	36,358	45,281	119,552	42,288	65,092	34,040
지방비	21,789	59,505	88,250	74,747	31,127	8,426	25,351	74,209	33,947	52,486	52,010	25,909	100,875	25,511
계	52,035	147,995	298,982	150,156	74,132	26,126	60,160	152,384	70,305	97,767	171,562	68,197	165,967	59,551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출자료, 2022.6.15.

2 향후 논의 사항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혁신체계 활성화를 노력하고 있으나 지역의 주도성 강화, 지역 내 혁신주체 간 협력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⁴²⁾
 - 지역혁신 정책 및 예산 결정 과정에서 법적 권한과 실무 절차 등을 보면 여전히 중앙정부, 예산당국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고, 지역혁신의 다양한 주체들(지자체, 혁신협의회, 지역의 산·학·연 및 각종 혁신기관, 시민사회 등)의 경험과 전문성, 협업체계가 부족한 상황임
- 지역혁신협의회의 경우 전문성 강화, 예산·조직·인력 확충, 기능별 운영 및 실질적 심의역할 강화,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등의 활성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음⁴³⁾
 -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며, 분과별·기능별 구성 및 실제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자체의 의사결정에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성과 권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또한, 이러한 지역혁신협의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무를 뒷받침하는 지역혁신지원단의 예산·조직·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실·국, 산·학·연,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와 상시적인 교류·협력 및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자는 것임
- 한편, 지역 산업육성, 과학기술진흥, 기업역량 제고 등을 위해 지역 R&D 정책기획 등을 담당

42) 김주태·고경일, 앞의 글, pp.369-370.

43) 고경일, 「해외 지역혁신 추진기구 및 국내 지역혁신협의회 조사·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 방안 연구」, 『국제경영리뷰』 제25권 제1호,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21.3., pp.221-225.

하고 있는 지역혁신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지역혁신기관 및 지역대학 등과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운영 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도 있음⁴⁴⁾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장은덕 ☎ : 02-6788-4596

관련부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과
☎ : 02-2100-1151·1113

44) 김주태·고경일, 앞의 글, pp.371-373.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추진 내실화

1 현황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지역에 사회적경제 기업과 지원조직의 협력·네트워킹·혁신에 필요한 통합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쏠주기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특화 발전으로 선순환하도록 하며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려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되었음⁴⁵⁾
 - 사회적경제 기업과 지원조직을 물리적으로 집적화(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사업화, 금융·교육·홍보·판매지원을 위한 혁신·기업지원센터와 입주·사무·연구 공간을 신축·리모델링 등)함으로써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통해 협동조합(기재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마을기업(행안부), 자활기업(복지부) 등 사회적경제 지원인프라 간의 연계도 기대함
- 광역지자체가 기획·신청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총사업비 50% 이내에서 3년간 지원(설계비, 부지 제외 건축비, 장비구축비, 시설부대비 등)하며 현재까지 7개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022년 예산액은 193억 3,300만 원임
 - 선정 현황을 보면 2019년 2개(경남 창원, 전북 군산), 2020년 3개(대전 동구, 대구 북구, 충남 청양), 2021년 1개(강원 원주), 2022년 1개(광주 북구)임
 - 사업 선정 후 부지변경 절차, 문화재 발굴, 지방비 확보 지연, 건축 계획 변경 등 사정으로 사업일정이 다소 지연되면서 착공이 늦어지기도 하였는데, 2019년 최초 선정된 2개 사업(경남, 전북)의 경우 2022년 9~10월에 준공 예정임⁴⁶⁾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예산현황⁴⁷⁾ |

[단위: 백만 원, %]

연 도	예산현황			집행현황		
	본예산	이월금	합계(A)	집행액(교부액)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2019	5,600	-	5,600	2,976	54	1.8
2020	8,090	2,624	10,714	10,714	1,478	13.8

45)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2022.6.17.

4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0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1. 8., pp.275-278.;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2022.07.04.

47) 사업 1차 연도에 9.5억 원(설계비), 2차 연도에 42.7억 원, 3차 연도에 나머지 87.8억 원으로 편성하나 사업추진 현황과 공정에 따라 연도별 편성과 이월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음

연 도	예산현황			집행현황		
	본예산	이월금	합계(A)	집행액(교부액)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2021	18,760	-	18,760	18,760	1,495	7.9
2022	19,330	-	19,330	17,378	(집행중)	(집행중)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2022.07.04.

2 향후 논의 사항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은 혁신타운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자본보조사업
이므로 공정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은 부처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자체 소관의 공간 조성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외에 찾아보기 어려운데, 예산 이월이나 공정 차질이 발
생하지 않도록 부지선정 등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해야 할 것임
- 현재까지 7개 지자체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향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수요와 이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을 다양하게 수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지자체별 수요가 어떠한지, 지자체 지원 대상과 범위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
인지, 지자체별 계획에 따라 예산지원의 범위와 규모를 다양하게 도입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및 관련 부처 등과 협력하여 혁신타운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혁신타운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이나 모델이 정립되었거나 성과를 확인할 수
없는데 지역특화 발전,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 등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책
지원, 혁신타운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지자체·관련 부처 등과 구체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이 큰 시점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장은덕 ☎ : 02-6788-4596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 : 044-203-4420·4456

순환경제산업 활성화

1 현황

- 순환경제산업은 재제조와 재자원화 등을 통해 제품 순환의 전 과정에서 자원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⁴⁸⁾
 - ‘순환경제’란 원료조달, 설계, 생산, 유통, 사용, 재자원화 등 자원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를 말함⁴⁹⁾
 - 경제체계 내에서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유지, 에코효율성(환경영향 대비 가치창출) 추구, 폐기물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 감축·재사용·재활용·자원회수 수단 등을 의미함⁵⁰⁾
 - 환경부가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근거한 자원순환 분야 정책·예산을 통해 직·간접적 규제와 재활용산업 육성 등을 담당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자원순환 등의 기술개발 및 신산업 육성 등을 담당하며, 정부의 재정투자가 다양화·확대되고 있음⁵¹⁾
- 산업통상자원부는 순환경제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지원, 기업지원, 기술개발, 규제완화 등을 지속하고 수요-공급기업 간 네트워킹 및 신사업 발굴·지원 확대, 해외 규제의 선제적 대응 등을 노력할 계획임⁵²⁾
 - 기존의 기술개발 R&D 예산 외에 2021년 「산업계 순환경제 기반구축사업」(비R&D)을 신규 편성(23억 8,200만 원)하였고, 2022년 예산액은 39억 9,200만 원임
 - ‘순환경제 상생라운지’ 등을 개최하여 수요(대기업)-공급(중소기업) 간 매칭, 신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기업역량 강화, 해외판로 확대를 지원함
 - 노후산업기체,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등의 재제조, 플라스틱 산업 원료화 및 희소금속 회수·고순도화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순환경제 관련 R&D 예산 총액을 2021년 265억 원에서 2022년 356억 원으로 확대함
 - 2022년 4월 친환경산업법 개정으로 고시한 품목에 한해 재제조 대상 제품으로 인정하던 포지티브 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으로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다양한

4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산업부, 순환경제산업 활성화 지원」, 2022.04.26.

4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산업법”) 제2조 제12호

50) 배진수, 「국내 순환경제의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경제적 유인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제304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10., pp.9-10.

51) 위의 글, pp.19-22.

52)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2022.6.20.

분야에서 시장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⁵³⁾

- 재생원료 사용여부를 파악하는 '재생원료 추적성 인증', 친환경설계 등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자원효율등급제' 등의 제도에 대해 '23년 시범사업·법제화, '24년 제도 시행을 추진할 계획임

2 향후 논의 사항

- 순환경제 개념은 산업표준 자체를 바꾸면서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와 산업계가 규제개선 차원을 넘어서는 협력이 요구되고,⁵⁴⁾ 따라서 이를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과 신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함
 - 예를 들어, EU는 페트병 내 재생원료 사용을 2025년 25%, 2030년 30% 이상이 되도록 규제하고 플라스틱세를 도입하는데 이러한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와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조달에 대한 대응이 개별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임
 - 따라서 재생원료의 사용, 재제조·재자원화 제품이 경제구조 전반과 실제 소비생활에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성의 확보와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음
- 순환경제산업 육성을 개별 신사업 단위에서 산업단지, 지역경제 단위로 연결하여 육성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실증하도록 할 필요도 있을 것임
 - 기존의 산업단지는 에너지 소비 등 환경을 대가로 경제적 편익을 추구한 결과물이지만 최근 '환경친화산업단지(Eco-Industrial Parks, EIP)'가 주목받고 있고 우리의 경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일부 적용되고 있는데,⁵⁵⁾ 순환경제산업 발굴이 산업단지 차원에서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순환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국의 도시·지역순환경제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있는데,⁵⁶⁾ 지역 특성에 맞는 순환경제체계 도입을 지원하고 실제 경제성이 확보되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장은덕 ☎ : 02-6788-4596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 : 044-203-4246

53) 법 제23조(재제조 대상 등) 삭제 및 제23조의3 개정(재제조 제품의 표시 등→인증제품의 표시 등)

54) 홍수열, 「플라스틱 순환경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LIFE IN, 2022.06.26.

55) 산업기술진흥원, 「산업단지의 순환경제 도입 현황 및 전망」, 2021. 5.

56) 김은아·민보경, 『지역순환경제 전략 체계 및 사례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2020.12.31.

사후 제품안전관리 노력 지속

1 현황

- 「제품안전기본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사후안전⁵⁷⁾ 확보 수단으로 안전성조사, 수거·파기·수리·교환 등(리콜)의 권고·명령⁵⁸⁾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안전성조사, 리콜 현황을 보면 2021년 안전성조사 2,502건, 리콜명령 83건 등이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성조사는 3,014건, 리콜명령 170건 등임

| 「제품안전기본법」상 안전성조사·리콜 현황 |

[단위: 건]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5월
안전성조사	2,344	2,578	2,513	2,502	556
리콜명령	105	141	116	83	15
리콜권고	5	13	20	14	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제출자료, 2022.06.23.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안전성조사·리콜 현황 |

[단위: 건]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5월
안전성조사	2,529	2,668	2,779	3,014	602
리콜명령	216	282	187	170	31
리콜권고	0	9	4	1	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제출자료, 2022.06.23.

- 온라인구매, 해외직구(구매대행 포함)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한 안전관리정책이 적극적으로 요구되어 최근에는 이에 대한 모니터링 등도 꾸준히 실시되고 있음
 -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

57)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는 제품안전관리를 사전(KC인증 등)과 사후(안전성조사·모니터링 등 시장감시제도와 리콜 등)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음

58) 법률에서 제품의 수거·파기·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규정한 것을 통상 “리콜(recall)”로 표현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리콜 통계를 수집하고 있음. 2021년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리콜 현황은 16개 법률에서 총 3,470건(자진리콜 1,306건/리콜권고 486건/리콜명령 1,678건)임. 이 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리콜이 총 911건, 「약사법」 리콜 807건, 「소비자기본법」 리콜 461건, 「자동차관리법」 리콜 307건, 「제품안전기본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리콜 296건(위 본문 통계에 자진리콜 28건 포함), 「의료기기법」 리콜 255건의 순서임(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2022.06.16.)

심으로 불법·불량제품을 감시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인터넷 카페 계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 등을 실시함

| 온라인 유통 불법제품 모니터링 |

[단위: 건]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5월
조사건수	53,833	51,550	116,658	61,018	진행 중
적발건수	5,643	4,677	16,863	10,547	진행 중

자료: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제출자료, 2022.06.23.

2 향후 논의 사항

- 현재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안전 관련 정보시스템의 통합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처 간 협조를 통해 제품안전의 사각지대를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음⁵⁹⁾
 - 한국소비자원·지자체 등과 연계한 제품 위해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통합된 정보 관리,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신기술·신유형 위해정보의 수집·분석, 민원 중심의 사고수집을 넘어서는 다양한 경로의 정보수집과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한 법·제도·인력 확충이 필요함
 - 개별 제품이나 신제품에서 부처 소관 및 관리체계가 불명확하여 비관리되는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를 명확히 하고, 2017년 신설 이후 총 4회 개최된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함
- 기업과 소비자가 자발적·적극적으로 제품안전관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되, 사후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기업에 대해 불필요한 사전 규제는 완화하면서 사후 규제는 엄격하게 실시하여 자율적 관리 노력을 유도하고, 기업을 포함하여 안전성조사·모니터링 및 관련 시스템에 언론·소비자 등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센티브 제공, 홍보 강화 등의 조치도 다양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장은덕 ☎ : 02-6788-4596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 : 043-870-5420·542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 : 043-203-5430·5333

59) 허경옥, 「제품안전관리 정책의 현황, 주요 이슈 및 과제, 향후 개선 방향 모색」, 『표준인증안전학회지』 제11권 제2호, 한국표준인증안전학회, 2021.6., pp.125-127.

전기차 도둑충전 방지 대책 마련

1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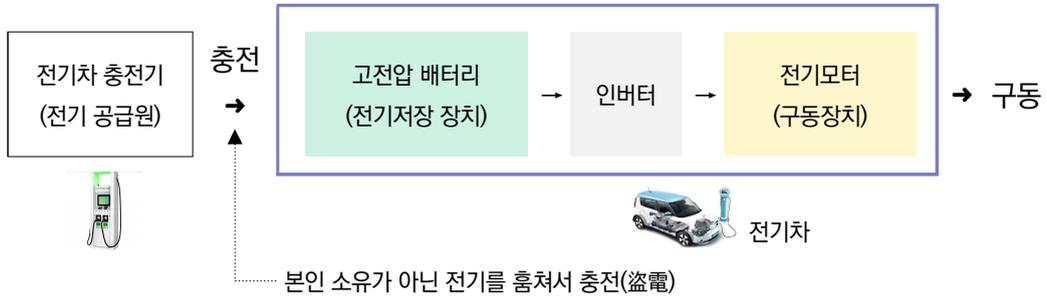
- 기후변화의 가속화 속에 화석연료 사용 자제와 더불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차(Electric Vehicle) 등 무공해차의 개발·보급이 확대되고 있음
 - 이때 전기차는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고전압 배터리에 저장)를 전기모터에 공급하여 구동력(driving force)을 발생시키는 차량임⁶⁰⁾
 -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순수 저공해차인 전기차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 없이 배터리와 모터만으로 차량을 구동함
 - 엔진이 없으므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음
 - 주행가능 거리는 배터리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전기차의 개발·보급이 확대되면서 본인의 소유가 아닌 남의 전기를 훔쳐 충전하는 이른바 도전(盜電) 행위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일반적으로 알려진 도전 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값싼 농사용, 산업용 전기를 끌어다 사용함
 - 전력량을 계산하는 계량기의 회전판이 돌아가지 않도록 철사, 바늘로 계량기를 훼손 또는 조작 하는 수법으로 전기를 훔침
 - 전자태그가 부착된 이동형 충전기⁶¹⁾를 사용하지 않고 비상용 충전기를 통해 공용 전기를 몰래 사용함
 - 최근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등에서 도전 행위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⁶²⁾

60) 전기차는 구동원과 에너지원에 따라 하이브리드차(화석연료 엔진+모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화석연료 엔진+모터), 순수 전기차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순수 전기차만을 말함

61) '이동형 충전기'는 전자태그가 부착되어 차량 소유주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일반 콘센트로 충전 시 요금이 차주에게 부과되나 '비상용 충전기'는 전자태그가 없어 도전(盜電) 행위 방지가 불가능함

62) 김재현, 「“전기도둑 어쩌하오리까” 전기차 증가세 못 따라가는 충전 인프라」, 『한국일보』, 2021년 6월 29일자.

| 전기차 구동원리 및 도둑충전 |



자료: 조사관 작성

■ 도전 행위는 「형법」에 따른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

- 전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動力)으로서 「형법」 제346조에 따라 재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므로,⁶³⁾ 이를 절취할 경우 동법 제329조⁶⁴⁾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전기차 도전 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사후적 조치(postmortem action)로서의 처벌 강화와 사전적 예방(proactive prevention)으로서의 기술적 대안 마련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사후적 조치: 「형법」에 따른 처벌(벌금형, 징역형) 강화
- 사전적 예방: ①비상용 충전기 등에 전자 태그 부착(충전기에 대한 규제), ②충전시설에 과금형 콘센트 등 전용 콘센트 설치(충전시설에 대한 규제), ③전기차 자체에 도전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전기차 제조사에 대한 규제) 등

■ 사전적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기술개발보급사업의 추진) 및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근거하여 위 ②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함

- 최근 전기차 도전 차단 솔루션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이 늘고 있으나 기존 규제의 벽에 부딪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감한 실증특례를 통한 규제 개선으로 제품의 상용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63) 권오걸, 「전기절도와 점유침해」, 『법학연구』제53권 제4호, 2012.

64) 「형법」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⁶⁵⁾에 따라 전기차 보급 확대의 일환으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때 전기차 충전시설의 종류에는 ‘과금형 콘센트’가 포함됨⁶⁶⁾
- ‘과금형 콘센트’는 이동형 충전기(또는 휴대용 충전기)를 연결하여 충전이 가능하고, 해당 충전기에 부착된 전자 태그에 의해 과금됨
 - 그러나 과금형 콘센트에는 비상용 콘센트의 사용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음
 - 따라서 전자태그 없이 사용 가능한 비상용 충전기를 해당 충전시설에서 사용할 경우 도전 우려가 있으므로 비상용 콘센트에도 전자 태그를 부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박재영 ☎ : 02-6788-4598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 : 044-203-4322

65)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66) 충전시설의 종류에는 ‘과금형 콘센트’ 외에도 ‘완속 충전기’, ‘키오스크 충전기’, ‘전력분배형 충전기’가 있음

자율주행 배달로봇 상용화를 위한 규제 개선

1 현황

- 인건비 상승, 노동력 부족, 단순 반복 업무의 자동화와 같은 사회 변화에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치면서 배달로봇(delivery robot) 시장의 성장이 촉진됨
 - 배달로봇은 지능형 로봇 분야에 속하는 기술로 소매 창고에서 고객의 문 앞까지 음식, 소포 등을 배달하는 데 사용되는 자율운송차량(Automated Guided Vehicle, AGV) 또는 자율이동로봇(Autonomous Mobile Robots, AMR)을 의미함⁶⁷⁾
 - 또한 배달로봇과 같은 서비스로봇의 활용 가치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를 활용한 유통 패러다임도 점차 변하고 있음
- 글로벌 리서치회사 Market and Market의 발표에 따르면 전세계 배달로봇 시장 규모는 2021년 2억 1,200만 달러에서 2026년 9억 5,700만 달러에 달해 예측기간 동안 연평균 35.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⁶⁸⁾
 - 특히 헬스케어, 식음료, 소매업과 같은 업종에서 배달로봇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현행 법률하에서 배달로봇은 보도 주행이 불가능한데 이를 규제하는 법령은 「도로교통법」 등 총 네 개이고,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도로교통법」: 배달로봇은 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라 ‘보행자’가 아닌 ‘차’로 분류되므로 인도, 차도, 횡단보도 모두 주행할 수 없음
 - 이는 사람도 차도 아닌 ‘로봇’을 현행 법률이 규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배달로봇의 주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반드시 동행해야 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제50조제5호는 중량 30kg 이상,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동력장치의 공원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도시공원 등에서 배달로봇은 주행이 어려움
 - 이 같은 규제는 안전상의 목적이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배달로봇의 실제 주행속도는 보행자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비춰보면 사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음

67) 연구개발특구재단, 「배송로봇 및 물류로봇 시장」, 2020.4.

68) Market and Market 홈페이지

(<https://www.marketsandmarkets.com/Market-Reports/delivery-robot-market-263997316.html>)

- 「개인정보 보호법」: 배달로봇은 주행 시 영상정보 취득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을 장애물로 인식하여 촬영하게 되므로 법 제25조제1항, 제5항 등에 저촉될 소지가 큼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 법률에 따라 물류를 나를 수 있는 운송수단은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법 제2조제3호)되어 배달로봇이나 드론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는 현재 불가능함
 -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 수단이나 배달로봇은 사람의 개입이 없기 때문임

2 향후 논의 사항

- 배달로봇은 인간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부과한 사회적 거리두기 규범이 성장을 견인하고, 관련 규제 또한 그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에 주요국들은 경쟁적으로 배달로봇 개발을 서두르고 있고, 기술수출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추진하고 있음
- 국내에서 배달로봇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배달로봇의 보도(인도, 차도, 횡단 보도) 주행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술한 네 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 구체적인 입법방안으로는 첫째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한 '차'에서 제외하는 방안, 둘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중량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셋째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촬영에 예외를 두는 방안, 넷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적용을 받는 운송 수단에 로봇을 포함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이때에는 배달로봇의 주행 시 안전성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계해 이를 충족하도록 법제화하고, 취득한 영상정보의 불법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박재영 ☎ : 02-6788-4598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 : 044-203-4312
경찰청 교통기획계
☎ : 02-3150-2251

EU 배터리법에 대응한 배터리산업 육성

1 현황

- 2022년 3월 10일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06년 제정된 기존 ‘배터리 지침(Directive 2006/66/EC)’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新배터리규칙안(New EU battery regulation, 이하 ‘규칙안’)을 채택하였음⁶⁹⁾
 - 산업시장에서 배터리가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면서 유럽집행위원회는 환경, 윤리, 사회문제 등을 두루 담기 위한 새로운 배터리 지침 수립을 추진하게 된 것임
 - 이 규칙안은 배터리의 원료부터 재활용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강조해 ‘지속가능 배터리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배터리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재활용원료 비율을 강화, 배터리 레이블링, 배터리 수거 비율 상향, 탄소발자국 공개, 공급망 실사 등 지속 가능한 기준을 수립함
 - 규정 적용대상 제품은 이동식 배터리(스마트폰, 전자기기 등), 전기차용 배터리, 경량운송 수단(전기자전거, 스쿠터 등)용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 등 모든 종류의 배터리를 포함함
 - 2035년부터는 코발트(Co) 20%, 리튬(Li) 10%, 니켈(Ni) 12%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도록 함
- 이 규칙안에 따라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EU 역내시장 판매 중지가 예상되므로 EU로 배터리를 수출 중인 우리나라 기업들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배터리 산업 육성이 필요함

2 향후 논의 사항

- 향후 우리 기업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한 EU로의 배터리 수출 전략 수립과 배터리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리튬은 주로 채굴(mining) 방식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배터리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69) 유럽집행위원회에서 규칙안 초안을 마련하여 발표(2020.12.)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에서 수정안 채택(2022.2.10.) →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수정안 채택(2022.3.10.) 순으로 입법이 추진되었음

향후 채굴 방식의 다변화가 필요함

- 성능이 떨어진 폐배터리에서 희소금속 자원(코발트, 니켈, 리튬 등)을 추출하면 배터리 양극재(Cathode Material)⁷⁰로 재활용이 가능하여 생산원가를 크게 낮출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희소금속 추출 기술을 개발하여 자원순환 산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2021년 1월 5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20조의 4 신설⁷¹)되어 전기자동차용 폐배터리와 같은 이차전지 폐기물을 회수·보관·재활용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배터리 재활용 또는 재제조(remanufacturing) 산업의 육성도 필요함

- 4개 권역(수도권-경기 시흥, 충청권-충남 홍천, 호남권-전북 정읍, 영남권-대구 달서)에 거점수거센터가 구축되었으나 정책이 시행 초기이므로 운영 성과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황임
- 동 법률은 이차전지와 관련하여 자원재활용 근거를 규정하였으나 이차전지가 포함된 폐기물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는 정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조속히 하위법령을 수립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박재영 ☎ : 02-6788-4598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 : 044-203-4266

70) 배터리 생산비의 약 35%이상을 차지하는 소재(리튬, 망간, 코발트, 니켈, 알루미늄 등)로 전기차의 주행거리나 배터리의 충전, 방전 성능을 결정지음

7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20조의4(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폐배터리등"이라 한다)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이 조에서 "거점수거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거점수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폐배터리등의 회수·보관·재활용에 관한 업무
2. 폐배터리등의 성능평가 및 매각에 관한 업무
3. 폐배터리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통계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③ 환경부장관은 거점수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1 현황

- AI, IoT, 자율주행차 등 혁신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반도체 수요 폭증이 일어났으나 미국의 對 중국 반도체산업 견제,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수준의 반도체 공급 대란 발생
 - 미국은 자국 중심의 반도체 패권 구축을 위해 미국 내 생산을 늘리는 한편 한국, 대만,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을 유치(이른바 칩4 동맹을 제안)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 중⁷²⁾
 - 우리 정부도 핵심 전략산업 생태계를 반도체 중심으로 구축하는 방안과 대학의 반도체 우수 인재 확보 강화를 추진
-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자산임
 - 최근 삼성 반도체의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2022년 5월),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2021년 1월)되어 국제적인 뉴스가 된 바 있음
 - 법률에서는 반도체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은 메모리, 대만은 파운드리, 일본은 소재, 유럽은 장비, 미국은 설비·설계 부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⁷³⁾
 -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우위를 점하고는 있지만 반도체 공정의 첫 단계인 설계(팹리스) 분야에서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고작 1%대에 머물고 있음⁷⁴⁾

72)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2월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전략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삼성, TSMC(대만) 등 해외 반도체 기업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 유치를 천명

73) 전분야의 제조가 가능한 기업으로는 삼성, SK하이닉스(이상 韓), 인텔, 마이크론(이상 美) 정도임

74) 반도체 설계 세계시장 점유율(2020년 기준): 미국 56.8%, 대만 20.7%, 중국 16.7%, 한국 1.5%

2 향후 논의 사항

■ 세계 수요가 급증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K-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할 수 있음

- 글로벌 수준에서 한참 뒤쳐진 반도체 회로 설계(팹리스)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R&D 투자를 시행하고, 위탁생산(파운드리) 분야에서는 대만(TSMC)과의 격차를 줄이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함
- 반도체 핵심기술과 우수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보호 입법이 필요함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음
- 반도체는 재료공학, 물리학, 화학, 전기·전자공학 등 여러 분야의 인재가 함께 만드는 제품이므로 단순히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질적 우수성을 갖춘 인재 양성에 주력해야 함
 - 현재 다수 운영 중인 주요기업-대학 간 반도체 계약학과⁷⁵⁾의 단순 정원 확대는 획기적인 해법이 되기는 힘들 것이므로 다학제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함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박재영 ☎ : 02-6788-4598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 : 044-203-4271

75) 주요기업-대학 간 반도체 계약학과 현황은 다음과 같음

기업	대학	학과
삼성전자	성균관대, KAIST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현대자동차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2023년 개설 예정)
SK하이닉스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LG디스플레이	연세대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2023년 개설 예정)

중견기업 범위 기준과 지원정책 개편

1 현황

- 제19대 국회는 2014년 1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을 제정함
 - 중소기업에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해 있다는 진단⁷⁶⁾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중견기업의 정의를 「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당시의 법 체제에서는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 조성이 어려울 뿐 아니라, 중견기업으로의 진입과 동시에 겪게 되는 성장통을 완화하거나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방지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함
 - 따라서 이 법을 제정하여 중견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 하려 함
-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중견기업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 중에서도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중견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과 규제 특례를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선 모든 기업에도 적용하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을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지원 정책과 규제 특례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임
 - 모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지만 정해진 기간에만 적용하는 혜택도 있음
- 그런데 중견기업법 제정 시 부칙 제2조에 법 유효기간을 시행일부부터 10년으로 정해 이 법은 2024년 7월 21일에 실효될 예정이므로, 법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상시법으로의 전환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76)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중견기업 성장 애로, 맞춤형 해결방안 논의」, 2013. 7. 19.;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졸업기업 경영실태 조사」, 2014. 5.;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 경영애로 실태조사 결과」, 2012. 9. 11.

- 새 정부가 2022년 5월에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17번째 과제인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의 주요내용 중의 하나로 '중견기업법 상시화'가 포함되어 있음
- 2022년 6월 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음(의안 번호 제2115834)

2 향후 논의 사항

- 중견기업법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상시법으로의 전환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함
- 일반적으로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중견기업, 그리고 그 외 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에 기업의 투자, R&D, 고용 확대 등을 위해 세액공제나 세액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을 마련한 것은, 이 같은 기업의 행위가 해당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임
 - 중소기업의 경우는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 R&D, 고용 확대 등이 절실하지만 이를 위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경제적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 창업 후 성장 과정을 거쳐 중견기업이 될 때까지 중소기업에 부여되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아 왔다면, 중견기업이 된 후에는 자신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은 자력으로 해야 함
 -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견기업에 세제 혜택을 계속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 졸업유예제도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3년의 기간 동안 기업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의 범위 기준이 되는 평균매출액을 산업별로 다르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견기업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보다는 크고 대기업보다는 작은 규모의 기업으로,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계속 성장하는 기업으로 인식되어 있음
 - 그런데 현행 법률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즉 대기업 중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견기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비판, 즉 일반적으로는 대기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기업도 중견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비판과 중견기업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정한 것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중견기업의 범위 기준을 현행 중소기업 범위 기준과 같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그 상한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견기업에 대한 예산지원사업이 필요하다면, 특례 조항을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지금의 방식보다는 필요한 지원사업 근거를 중견기업법에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박총렬 ☎ : 02-6788-4591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 : 044-203-4360

IPEF 참여 전략의 정교화

1 현황

- 지난 5월 23일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가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13개국의 참여로 공식 출범함
 - IPEF는 인구와 GDP 기준으로 RCEP이나 CPTPP보다 큰 규모의 경제블록으로 우리나라 세계 교역의 약 40%를 차지함
 - 관세감축(상품양허)보다 공급망 강화·디지털 전환·청정에너지 등 국제 사회에서 새롭게 부상 중인 통상의제를 핵심 이슈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자유무역협정과 큰 차이가 있음

|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제협력체 비교 |

구분	RCEP	CPTPP	IPEF
참가국	1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11개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아세안 4개국(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13개국(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세안 7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구	22.7억명 (29.7%)	5.1억명 (6.7%)	25억명 (32.3%)
GDP	26.1조 달러 (30.8%)	10.8조 달러 (12.8%)	34.6조 달러 (40.9%)
우리와의 교역규모	4,839억 달러 (49.4%)	2,364억 달러 (24.1%)	3,890억 달러 (39.7%)

주: IPEF는 출범에 참여한 13개 국가 기준이며, 현재는 피지(Fiji)도 참여기로 한 상태임(2022.5.27. 현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역내 최대 경제블록, IPEF 본격 시동」, 2022.5.23.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20번)에서도 IPEF 참여는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 통상전략 차원에서 CPTPP, RCEP과 함께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음
 -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도국-선진국을 연결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를 주도하고자 하는 내용임
 - 또한 '디지털·그린 혁신' 차원에서도 올해 중 수립할 「디지털 통상 로드맵」을 토대로 IPEF 디지털 협상에 우리 입장을 반영한다는 계획이 제시되어 있음

-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IPEF 추진전략과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적 소통채널인 ‘민관 전략회의’를 6월 23일에 출범시키고,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정부출연연구원 등이 참여한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룸
- 다만 IPEF의 추진 일정과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임
 - 현재는 큰 틀에서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네 개의 필러(Pillars)로 구성되어 있음
 - 각국이 상황에 따라 각 필러에 선별적으로 참여하는 모듈형 경제협의체를 지향한다는 정도의 내용만 알려진 상태임
 - 또한 IPEF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이를 의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 없는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으로 추진할 방침인 만큼 협상이 어떤 구조와 방식으로 진행될지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려움

2 향후 논의 사항

- 국제 교역의 블록화·파편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통상의 중심축도 점차 ‘경제적 효율성’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IPEF는 단지 불가피한 길일뿐만 아니라 출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규범 정립 등의 과정에 우리 입장을 반영하고 입지를 넓힐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임
 - 원자재 등 자원 공급망의 다변화·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역내 주요국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신기술 관련 부분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신통상 이슈에 대한 글로벌 규범 확립에 선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환경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성할 수도 있을 것임
- 그러나 이와 동시에 최정환(2022)⁷⁷⁾의 지적처럼 IPEF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큰 틀 아래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IPEF를 구성하는 필러의 일부 의제가 중국과의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하여도 신중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할 것임
 - 현재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해외 공급망 비중은 중국(46%)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일본(14%), EU(13%), 미국(11%), 동남아(11%) 순임⁷⁸⁾

77) 최정환, 「IPEF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역할」, 『i-KIET 산업경제이슈』제140호, 2022.6.17., p.7.

78) 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 「수출기업 해외 공급망 현황 및 영향 조사」, 한국수출입은행, 2022.2.

- 따라서 필리별로 IPEF 합의안 도출에 협력할 내용과 이를 명분으로 국익 관점에서 협상 상대 국의 양해를 이끌어내야 할 내용 등을 정교하게 구분하여 IPEF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김규호 ☎ : 02-6788-4593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 : 044-203-5740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준비

1 현황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은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을 탈퇴한 후 11개국이 참여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임
 - 2018년 3월 8일 CPTPP가 체결되었고, 같은 해 12월 30일 정식으로 발효하였음
 - CPTPP의 모체(母體)인 TPP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억지하기 위해 구상한 대중(對中) 경제봉쇄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음⁷⁹⁾
 - 그런데 2021년 9월 16일 중국 상무부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데미언 오코너 뉴질랜드 무역장관에게 CPTPP 협정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2021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CPTPP 가입 신청서 제기 이슈(수산 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위생검역 등)에 대해 대비하기 시작한 우리 정부는 2022년 1월 교역·투자 확대와 같은 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가치와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을 모두 고려하여,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⁸⁰⁾
- 2022년 4월 15일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⁸¹⁾에서 공청회(2022.3.25.) 등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의 보고 등 국내절차를 거쳐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음⁸²⁾
- 향후 우리나라의 CPTPP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음⁸³⁾

79) Catá Backer Larry,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Japan, China, the U.S., and the Emerging Shape of a New World Trade Regulatory Order", 13 *Wash. U. Global Stud. L. Rev.*, vol.13, 2014, p.49.

8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022.1.25.

81)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주요 대외경제정책을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정부 부처 간 협의체임(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8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정부, CPTPP 가입 추진계획 의결」, 2022.4.15.

83) Jeffrey J. Schott, "China's CPTPP bid puts Biden on the Spot", *PIIE Trade and Investment Polic Watch*, 2021.9.23. (최종 검색일: 2022.2.22.), <<https://www.piie.com/blogs/trade-and-investment-policy-watch/china-cptpp-bid-puts-biden-spot>>.

- 뉴질랜드에 있는 기탁처는 CPTPP 회원국과 대한민국의 신청서를 공유하고, CPTPP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가입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임
- 위원회에서 총의로 가입 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가입 실무 그룹(Accession Working Group: AWG)이 구성될 것임
- 30일 이내에 우리나라는 AWG에 CPTPP 규정에 합치되지 않는 국내 조치 목록과 합치 계획, 시장접근 조건을 제출할 것임
- AWG와 우리나라는 시장접근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고, 동시에 우리나라와 개별 회원국 간 협상도 진행될 것임
- 협상 타결 후 기존 CPTPP 회원국 총의로 회원 가입이 승인되면 우리나라는 6개월 내 국내 제도가 CPTPP에 합치되도록 국내법 정비를 완료해야 함

■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는 가입 타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통상국가이므로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새로운 통상질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CPTPP의 조속한 가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 한편 농축수산 업계는 우리나라가 이미 대다수의 CPTPP 회원국들과 양자 FTA를 체결한 상태이므로 가입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과 위생·검역 조치(SPS 조치) 규범 수용⁸⁴⁾으로 농축수산 분야의 피해가 크다고 하여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정부는 향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에 따라 「CPTPP 가입 추진계획」의 국회 보고 등 CPTPP 가입신청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한 후, 뉴질랜드에 있는 기탁처에 공식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임

■ CPTPP는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개방을 통한 교역투자 확대로 실질 GDP가 0.33~0.35% 증가할 전망이 예측되는 등(KIEP) 국가경제 전반에 이익이 되겠지만,⁸⁵⁾ 대일 제조업의 경쟁열

84) CPTPP SPS 챕터는 WTO SPS 협정과 비교해 볼 때 보다 강력한 어조로 그리고 보다 상세하게 회원국이 SPS 조치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CPTPP 제7.7.조(지역화 및 구역화)에 대응하는 WTO SPS 협정 조문은 제6조인데, 전자는 11개항으로 구성된 반면 후자는 3개항에 불과함. 즉 원활한 농산물·식품의 교역을 위해 전자는 후자보다 수입국의 위생·검역 조치 권한을 더 제한하고 있음

85)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신청 관련 공중회 개최」, 2022.3.24.

위, 농축수산업 추가개방 부담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CPTPP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연계한 전략적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CPTPP와 IPEF의 동시 추진은 대외전략 측면에서 한·미·일 공조, 동북아 안정, 아태 경제통상 리더십 확보와 연계되고, 내용적으로는 공급망, 기술안보, 디지털통상, 탄소중립과도 연계되어 있음
- 정부는 CPTPP 가입에 필요한 국내 의사결정구조를 설계해야 함
 -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TPP 협상을 직접 지휘하기 위해 총리 직속으로 ‘TPP 등 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부처를 통솔하였고, 농수산 부문의 설득에 직접 나섰다
- CPTPP SPS 챕터가 정치적 이슈로 소비되지 않도록 국내적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안전 정책 강화와 병행할 필요가 있음⁸⁶⁾

작성자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정민정 ☎ : 02-6788-4552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장영주 ☎ : 02-6788-4590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 : 044-203-5741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
☎ : 02-2100-7696

86) 김규호, 「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상의 쟁점과 과제」, 『NARS 현안분석』 제248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 p.20.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1 현황

- 2022년 6월 기준 외국이 우리 기업에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거나 조사 중인 건수는 26개국에서 총 199건임(규제 중 180건, 조사 중 19건)
- 수입규제조치는 주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로 부과되며, 수입규제조치 199건은 반덤핑 153건, 세이프가드 36건, 상계관세 10건 순으로 반덤핑이 가장 주된 수입규제 조치임을 알 수 있음

| 대한(對韓) 수입규제 건수(2022.6.1. 기준) |

[단위: 건]

분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계
조사 중	13	1	5	19
규제 중	140	9	31	180
합계	153	10	36	199

자료: 한국무역협회, 「對韓 수입규제 분기별동향」, 2022.

- 글로벌 수입규제의 특징 중 하나는 수입규제의 도미노 현상임. 글로벌 공급과잉(글로벌 경제의 저성장과 신흥국 부상의 결과)으로 인해, 미국, 인도 등 거대 경제권의 일방적 수입조치가 강화되자 자유무역을 표방하던 국가들까지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였음
 - 예를 들어, 철강의 경우 미국이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제232조 조치를 발동하자 EU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고, 다른 국가들도 동조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품목별 대한 수입규제 건수(2022.6.1. 기준) |

[단위: 건]

분류	철강/금속	화학	플라스틱/ 고무	섬유	전기전자	기계	기타	계
건수	94	42	23	13	8	2	17	199

자료: 한국무역협회, 「對韓 수입규제 분기별동향」, 2022.

- 특정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s: PMS)⁸⁷⁾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AFA)⁸⁸⁾ 등 조사당국의 조사기법 진화, 제3세계의 수입규제 증가, 양자 세이프가

드 조치⁸⁹⁾ 등 조치의 다양화로 수입규제의 대응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음

● 조사당국의 조사기법 진화

- 2017년 미국 상무부는 한국 정부의 보조금과 전기 요금 통제, 중국산 열연 조달자와 한국 강관/판재 생산자간 전략적 제휴를 이유로 한국 시장이 왜곡되었다고 판단하고, 한국 유정용강관(OCTG) 반덤핑 조사 건에서 최초로 PMS를 적용하였음. 즉 한국 기업이 제출하는 정상가격 대신 다른 기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함. 그리고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한국 기업에 대한 PMS 적용 건수가 가장 많음. 미국의 국제무역법원은 한국산 철강에 대해 미 상무부가 PMS를 적용하는 근거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PMS를 적용하지 않고 관세를 재산정할 것을 명하였음
- 2016년 5월 미국은 도금강관 반덤핑 조사 이후 한국에 대해 8건의 AFA 기법을 적용하였고, 우리 정부는 2018년 2월 미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였음. 3년간의 분쟁 끝에 2021년 1월 WTO 패널은 미국 조사당국에서 AFA를 적용한 8건 모두에 대해 WTO 불합치 판정을 내렸음⁹⁰⁾

● 제3세계 국가의 수입규제 증가

- 그간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2019년 이후 인도, 태국, 파키스탄, 브라질, 베트남, 필리핀, 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들의 대한 수입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이들 국가들은 수입규제 경험이 많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낮고, 행정절차도 불투명하여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 국가별 대한 수입규제 건수(2022.6.1. 기준)

[단위: 건]

분류	미국	인도	터키	중국	캐나다	EU	태국	파키스탄	호주	브라질	기타	계
조사중	3	3	2	-	1	1	-	-	1	-	8	19
규제중	44	15	16	14	13	7	8	8	6	6	43	180
합계	47	18	18	14	14	8	8	8	7	6	51	199

자료: 한국무역협회, 「對韓 수입규제 분기별동향」, 2022.

87) PMS는 수출국 시장이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 왜곡되었다고 보고, 수출국 내에서의 내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는 대신 미국 조사당국이 임의대로 정상가격을 결정하겠다는 조사기법임

88) AFA는 조사대상 기업이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규제당국이 정확한 마진율을 산정하지 못할 경우, 제소자들이 제공한 정보 즉 불리한 정보를 바탕으로 마진율을 상향시키는 조사기법임

89) 양자 세이프가드는 FTA 체결로 관세가 양허된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과도기간 동안 해당 FTA 상대국에만 적용하는 세이프가드 조치(세율 인상 또는 세율적용 중지)임.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부과하는 다자 세이프가드는 모든 국가의 수입 제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양자 세이프가드는 FTA 협정 상대국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90) Panel Report, *United State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Products and the Use of Facts Available*, WT/DS539/R, 2021.1.21. 채택

-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 등 조치의 다양화
 - 2018년 한·터키 FTA에 근거하여 터키 정부가 한국산 Pet-Chip(주로 음식과 음료를 담는 용기를 제조하는 데에 사용되며, 독성이 없고 환경친화적인 소재임)에 대해 2년간 양자 세이프카드를 부과하였음. 2019년에는 인도 정부가 한·인도 CEPA에 근거해 한국산 화학 제품 무수프탈산(PA)과 폴리부타디엔고무(PBR) 제품에 대해 양자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여 2020년부터 2년간 관세를 부과하였음

2 향후 논의 사항

- 외국의 대한 수입규제는 조사대응만으로도 우리 기업과 정부에 법률자문과 회계관리 등에 따른 높은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조사단계 이전부터 철차적으로 빈틈없이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현지 시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수입규제 조치 해소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공관을 통해 조사당국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수입규제는 수입국 입장에서 수입물량이 급증한 품목 위주로 조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특정국의 수입규제 가능성을 낮출 필요가 있음
- 우리의 수출 동향과 수입국의 현지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수출품목 중 외국의 수입규제 위험 품목을 사전에 식별하여 상대국 정부·업계·협회에 아웃리치 등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정민정 ☎ : 02-6788-4552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장영주 ☎ : 02-6788-4590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 : 044-203-4870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
☎ : 02-2100-7695

EERS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 지원

1 현황

-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EERS)제도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수요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전기·가스·열 공급자가 에너지 판매량과 비례해 에너지 절감 목표를 정부로부터 부여받고 다양한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함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법률적 책무가 있으나, 판매량 감소를 이유로 효율 향상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수요관리 핵심 수단의 하나로 EERS를 제시함
- 그 이행 방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부터 고시(「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한전을 대상으로 EERS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2019년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로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함
 - 시범사업 대상 기업은 고효율 기기 보급 지원사업 등 소비자들의 에너지 수요 절감 관련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⁹¹)의 투자 대행을 통해 할당받은 목표량을 이행⁹²)함
 - 시범사업 운영 결과 2018년 기준 한전은 당초 목표 에너지 절감량의 1.1배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2019년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사업실적이 다소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범기간 중 패널티 미부여 및 각 공급자별 경영 여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⁹³)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도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운영 인프라 개발 및 법제화를 통해 사업을 확대시킬 계획이었으나 제도 대상과 재원 충당 방안을 확정하지 못해⁹⁴) 아직까지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91)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사업에 참여하여 기술·자금 등을 제공하고,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체를 말함

92) 박연수,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입법정책보고서』제64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12.29.

93) 박연수, 위의 글

94) 전사신문, 「정부,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 법제화 추진...전기요금 반영 주목」, 2020.10.30.

| 연도별 EERS 시범사업 추진 현황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력 공사	전력 공사	가스 공사	난방 공사	전력 공사	가스 공사	난방 공사	전력 공사	가스 공사	난방 공사
단위사업 수	14	16	5	5	25	5	5	21	5	6
투자예산(억 원)	1,631	1,913	60	19	1,708	80	20	1,499	78	20
에너지 절감량	746	1,015	50,187	20,258	1,091	51,672	36,985	1,041	49,168	21,888

주1: 에너지 절감량 단위는 GWh(한전), Tcal(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임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2021 KEA 에너지편람」, 2021.

2 향후 논의 사항

- EERS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제도로서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등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EERS 사업 확대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 에너지공급자의 참여를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에너지공급자의 참여를 유도할 재무적 보상방안 등 인센티브가 부재한 상황임
 - 이에 에너지 절감 목표 이행으로 판매량이 감소할 경우 그 손실분을 보상해주고, 에너지 수요 관리 사업에 소요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⁹⁵⁾이 있음
- 또한 에너지 절감 목표량에 근거한 성과평가와 패널티 또는 인센티브 적용을 위해서 에너지 절감량 계측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⁹⁶⁾되고 있음
 - 현재 공급사들이 제출한 절감 실적과 관리기관의 검증 확인 실적과의 괴리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 데이터가 필요하나, 우리나라는 축적된 데이터가 없어 공급자가 제출한 모니터링계획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여 에너지공급사가 제출한 에너지 절감량과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 관리기관과 에너지공급자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에너지 절감량에 대한 객관적 측정 및 검증 가능한 시스템 구축의 방법론으로 미국 및 EU에서 시행 중인 에너지 M&V(Measurement & Verification) 시스템이 논

95) 투데이에너지, 「E효율향상, 체계적 제도가 먼저」, 2022.2.24.

96) 투데이에너지, 위의 기사

의되고 있음

- 에너지 M&V는 에너지 절감 조치에 따른 에너지 절감량을 신뢰할 수 있도록 측정 및 검증을 수행하는 것으로 EU, 미국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EERS 제도, 에너지효율 (Energy Efficiency) 프로젝트, 에너지성과계약 등의 에너지절감사업에 대해 제3기관이 검증하는 프로세스⁹⁷⁾임

■ 에너지 절감 목표량에 근거한 명확한 성과평가와 패널티 또는 인센티브 적용을 위해서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M&V 검증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는 M&V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갈 필요⁹⁸⁾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정선희 ☎ : 02-6788-4592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 : 044-203-5705

97) 에너지데일리, 「한국품질재단, 국제 에너지효율 M&V 전문가 7명 배출」, 2019.8.28.

98) 에너지데일리, 위의 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

1 현황

■ 에너지 신산업이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산업'으로서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 Clean Energy와 ICT 전력망 등을 통한 효율적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의미⁹⁹⁾함

- 박근혜 정부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마련·발표(2015.11.24.)한 바 있는데, 동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총 5,5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총 100조 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구축하여 일자리 50만 개 창출을 목표화¹⁰⁰⁾함
-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16년 7.0%에서 2022년 10.5%, 2030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임을 밝힘
- 주요 내용은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시장 조성', '저탄소 발전을 중심으로 전력 산업 확대', '2030년까지 순수 전기차를 100만 대 이상 확산', '국내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 요소인 ESS 시장 활성화' 등임

■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기 공급자와 소비자 간 실시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분산형 전원의 확산 및 재생에너지의 안정화 등 에너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이 창출되고 지속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필요¹⁰¹⁾가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구조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개선과제¹⁰²⁾는 아래와 같음
 - 우리나라는 스마트그리드,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원자력 안전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술 수준이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 상황임은 물론 에너지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액 역시 선진국 대비 부족한 수준임
 - 원거리 중심의 대규모 에너지 설비 공급 확충에만 집중함에 따라 지역별 전력 자급률이

99) 한국전력홈페이지, https://cyber.kepco.co.kr/ckepco/mobile/kepco_info/bussiness_smart.jsp(검색일: 2022.6.15.)

100)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신기후체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발표」, 2015.11.24.

101) 백흥기, 「국내외 에너지 신산업 트렌드 및 활성화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18.1.2.

102) 백흥기, 위의 글

- 낮고 송전선로 건설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분산형 전원 활성화 진척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 거래 시스템으로 전력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발전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친환경 발전원의 비중 확대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2 향후 논의 사항

-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으로 연구개발 투자 확대, 분산형 전원 확충,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거래 시스템 개선 등이 지적¹⁰³⁾되고 있음
 -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 차원에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에너지관리 시스템(EMS)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화석연료 설비의 친환경성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적이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소규모 분산형 전원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집단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분산형 전원의 환경 기여도를 감안하여,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편익 보상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제도 정비, 투자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현행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거래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기됨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정선희 ☎ : 02-6788-4592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 : 044-203-5705

103) 백흥기, 위의 글

PPA제도 활성화 과제

1 현황

-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제도는 산업계의 RE100(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를 이행하는 기업 활동) 과제 이행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기업을 비롯한 전기 사용자들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와 자율적인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로 특정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함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세계 전력의 70~8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RE100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방안인 동시에 우리 기업에는 또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됨
 - 이에 문재인 정부는 기업의 RE100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PPA 제도를 도입·시행(2021.10.20.)함
- 동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한전 중개를 거쳐 RE100 이행 기업에 전력을 판매하는 계약방식인 '제3자 PPA' 방식(2021. 6. 시행)과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 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 PPA'(2021.10. 시행)가 동시에 시행 중임
 - 그러나 동 제도 시행 후 현재(2022.5.1. 기준)까지 전력구매계약은 단 2건에 불과한 상황임
 - 제도를 시행한 해인 2021년도에도 기업들은 한전에 녹색 프리미엄¹⁰⁴⁾을 구매하는 방법 또는 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구매하거나, 재생에너지 시설을 자체 건설하는 방법을 통해 RE100을 이행¹⁰⁵⁾한 것으로 확인됨

104) 녹색 프리미엄은 RE100 이행 등 녹색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전기소비가 전기요금 외에 자발적으로 프리미엄을 추가로 부담하는 제도로 녹색프리미엄에 참여한 전기소비자에게 분기별로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가 발급되어 RE100 이행실적 및 ESG경영의 일환으로 활용가능하며, 기업들이 납부한 녹색프리미엄 재원은 산업부·한전의 재생에너지 채투자 사업에 사용됨

105) 이데일리, 「직접 전력구매제, 내달부터 본격 시행…RE100 참여 기업 늘 듯」, 2022.2.20.

- PPA 제도를 통한 전력구매계약이 저조한 이유로 망 이용료 부과, 수수료 지불 등으로 인한 높은 전력 이용요금이 지목¹⁰⁶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한전이 전기 유통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3자 PPA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송전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가 한전으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고 송전 가능한 배전선로를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임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급받은 한전의 송배전망 이용요금은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구조상 발전사 측이 아닌 전력수요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전력수요자인 기업은 송배전망 이용요금과 한전이 제시하는 전력손실반영금액, 부가정산금, 거래수수료, 복지 및 특례할인 금액,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각종 부대비용까지 부담¹⁰⁷하고 있음
 - 이러한 제반비용을 모두 고려했을 때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이용하거나 타 대체 가능한 RE100 이행수단을 고려하는 반면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유인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2 향후 논의 사항

- PPA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높은 전력 이용요금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망 이용요금에 대해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망이용 요금에 대한 부과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¹⁰⁸이 있음
 - 또한 망이용 요금 부과와 관련하여 이미 기존 산업용 전기요금을 통해 한전의 송배전망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있음에도 PPA 체결과정에서 PPA에 포함된 망 사용료를 추가적으로 이중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 한편 보완공급과 최종 전력공급의무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¹⁰⁹
 - 보완공급은 고객이 생산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한전이 전력을 공급하거나 수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에 보완공급 필요량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PPA에 참여하는 기업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로 재생에너지전기 공급

106) 뉴스핌권, “「생에너지 전환 막는 한전 망이용료와 PPA 실상」, 2021.12.14.

107) 뉴스핌권, 위의 기사.

108) 뉴스핌권, 위의 기사.

109) Electric Power Journal, 「기업 PPA 정착 위한 세부설계 방향은」, 2021.5.13.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을 경우 이를 한전과 거래할 수 있도록 보완공급약관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임

- 또한 최종공급은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사업자의 파산이나 사고 또는 재난 등 비상 시에 공급하는 전력을 말하는 것으로, 비상상황에서 누구에게 최종적인 전력 공급의무가 있는지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사업자가 최종공급의무를 이행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한전이 최종 전력공급의무를 지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정선희 ☎ : 02-6788-4592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 : 044-203-5705

동북아슈퍼그리드 전력망 연계 방안

1 현황¹¹⁰⁾

- 동북아슈퍼그리드는 러시아 및 몽골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역내 전력 대수요처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에 공급해 활용하는 국가를 초월한 광역 송전망¹¹¹⁾을 의미함
 - 1980년대 후반부터 역내 전력 전문 연구기관 간에 동북아 지역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전력망 연계 구상을 시작하였고, 1998년에 러시아 극동지역 내의 전력 분야 연구소인 에너지시스템연구소(ESI, Energy Systems Institute)가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사할린 지역을 포함한 극동지역 내 풍부한 발전원(석탄화력 발전, 수력 발전 등)을 개발하여 모든 역내 국가(한국, 일본, 중국, 몽골)에 수출이 가능하도록 동북아 지역 전력망 연계 구상을 제안함
- 2013년 11월 한전은 러시아 전력기업인 인터라오와 한·러 연계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MOU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2014년 5월에 중국의 에너지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한·중·일의 합자회사인 격맹국제¹¹²⁾에서 풍부한 산서성의 석탄자원을 활용하여 생산된 전력을 한국으로 송출하기 위하여 한·중 연계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함
- 2016년 3월에는 한국전력공사(KEPCO), 러시아 로세티(ROSSETTI), 일본 소프트뱅크(SoftBank), 중국 국가전망공사(SGCC) 등이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초기 단계로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그중 한·중·일의 전력망 연계사업을 1차로 선정·추진하기로 하고,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한·중·일의 3개 전력회사는 예비타당성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함
- 2017년 12월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기간 중 중국의 SGCC 및 GEIDCO(GEI Development & Cooperation Organization)와 한국전력공사는 ‘한·중 전력망 연계 거래조건 협정서’에 서명하고, 이를 통하여 한·중 전력망 연계를 위한 수익, 비용, 기술적 타당성 등에 관한 공동 연구가 추진 중이며, 양국 간의 실무 협의 채널이 구성 및 운영되고 있음

110) 최용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현을 위한 신에너지 연계 방안 연구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구 중심-, 산업통상자원부, 2020.3.

111) 한국에너지, 「동북아 슈퍼그리드, 한·중·일·러 청정 전력망 연계 에너지 수급 안정성 확보», 2018.5.21.

112) 격맹국제는 격맹국제는 중국 산시성 정부(산시국제에너지)와 한전, 일본 J파워 컨소시엄 등이 출자해 만든 합자회사로 한전은 2007년 총 사업비 13억3,000만달러(100억위안) 중 4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34%의 지분을 확보한 2대주주임

- 그러나 그간 역내 정치적 갈등과 자원 민족주의로 인해 그리드 연결은 타당성 검토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고, 북한 리스크 역시 상존하면서 북한을 통과해야 하는 러시아의 천연가스(PNG) 파이프라인이나 중국과의 전력망 연계사업의 성사가 어려웠음
 - 또한 미·중 간의 세력 경쟁 격화로 중국과의 전력망 연결도 미국의 견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

2 향후 논의 사항

- 국가 간의 전력망 연계 구축사업이 논의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을 통해 향후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사업 구상과 추진 단계에서 다양한 측면의 실현 가능성 및 구축 타당성과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당사자(정부, 송전업자, 발전업자, 수입업자, 건설업자, 규제기관 등) 간에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측면의 고려사항
 - 다자간 전력망 연계사업의 이해 당사자들은 전력 거래 시 가격(송전요금)에 대한 합의는 물론 제3국의 송전망 사용 시 발생 가능한 통과료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전력거래는 국제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하루전시장(Day-ahead market), 양자계약, 밸런싱 시장(balancing market), 당일 시장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일정량의 전력(MW/년)을 판매하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최소 전력 구매량에 합의하되 필요시 의무인수계약¹¹³⁾(take or pay) 형태도 가능함
- 전력망 운영 측면의 고려사항
 - 연계 전력망이 국경을 지나는 거의 모든 경우에 관련국들은 변전/변환소, 통제센터, 전력망 등과 같은 관련 시설에 대한 위치 설정에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망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송전방식(AC 또는 DC 송전), 송전노선 및 양방/일방 송전 등에 대해서 사업 참여자들의 합의가 필수적임
 - 전력망을 운영할 주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전력망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도 합의가 필요함

113) 의무인수계약(TOP)이란 천연가스 생산자와 구매자간의 구매계약 조건의 하나로서 구매자에게 연간 일정량 이상의 가스를 인수토록 의무를 부담시키고 해당량을 인수하지 못할 경우 생산자에게 가스대금을 모두 지불 하게 하는 계약조건을 말한다. 이와 같이 불공정해 보이는 계약조건을 생산국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개발시 각종 설비의 건설 등에 고비용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함 임(한국에너지공단,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2015.10.8.)

■ 법·제도적 측면

- 국경을 넘는 전력 흐름과 판매 대금의 원활한 이동이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자 간의 신뢰도 제고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전력망 연계 관련 자원(전력망, 발전원, 토지 등)에 대한 공유 원칙의 합의와 이러한 내용이 충분하고 정확하게 명시된 협정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추진 시 직·간접적인 편익 발생과 비용 산정을 어떤 방법을 활용하여 사업 참여자들 사이에 배분할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 연계 전력망을 기획하고 운용 및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 공유에 관하여 국가 간의 명확한 합의가 요구됨

■ 정치·사회적 측면

- 국가 간의 전력망 연계 운용 및 구축과 관련된 법적 틀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 내 그리고 거래국 간의 여러 이해 당사자 간의 정치적 협조와 합의가 요구됨
- 국가 간의 전력망 연계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약서와 협정서들이 사업 당사자들 간에서 체결될 것이므로 사업 참여자들은 의무적으로 이러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음
- 전력 연계망 추진을 위한 지역협의체는 국가 간에 합의 도출에 있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 우선되어야 하고, 합의가 요구되는 각종 사안과 내용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일반화되고 기본적인 정부 간 협정은 물론 정부와 기업 간 협정, 기업 간 계약 문서들이 지역협의체 공동 차원에서 제작되어 해당 사업의 주체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정선희 ☎ : 02-6788-4592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 : 044-203-5705

에너지 전환 관련 전력계통 유연성 제고

1 현황

- 전력계통 유연성은 매순간 전력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 효과적으로 발전과 부하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함
 -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는 문재인 정부가 2030년 국가 전원믹스 계획에서 에너지 정책 목표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제시한 데 따른 이행 확보를 위한 수단임
 - 재생에너지는 발전의 간헐성으로 계통 변동성이 높아 계통 안정성 및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계통 고장이나 수급 급변 등에 대처하지 못해 계통 정전을 초래하게 됨
 -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부하 조정 등의 비상조치를 수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과잉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77회에 걸쳐 약 1만 9,449MWh의 출력을 제한(2020년 기준)¹¹⁴⁾한 바 있음
- 이와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계통 불안정성은 전기부족으로 인한 블랙아웃이나 송배전망 과부하 같은 사태를 초래하는 바, 향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계통 유연성 확보가 필수적임
-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확산 초기에는 그리드 운영 개선, 국가 간 계통 연계, 재생에너지 예측 개선, 수요 반응(DR) 제도 개선 등이 가장 비용효율적인 유연성 추가 확보 수단이었지만, 한번 도입된 이후에는 유연성을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낮은 단점이 있음
 - 이에 반해 에너지저장장치, 섹터커플링¹¹⁵⁾을 통한 전력 변환 등은 초기 도입 비용이 매우 높지만 변동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과잉 공급 전력의 저장·변환 및 경제적 사용에 활용돼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유연성 확보 수단임

114) 전기저널, 「계통 유연성 개념 및 확보 방안」, 2021.12.10.

115) 섹터커플링은 에너지 소비 부문(열, 운송, 산업)과 생산(전력) 부문을 상호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력 변환·저장 기술을 통칭하는 'Power-to-X' 기술을 통해 재생에너지 과잉 공급 전력을 열, 운송, 가스 부문으로 변환·저장해 활용가능하게 함

| 유연성 강화방안별 비용 |

←저비용			고비용→		
그리드 운영개선	수요반응	공급측 유연성	그리드인프라	에너지 저장장치	섹터 커플링

자료: 전기저널, 위의 기사

■ 문재인 정부는 계통유연성 강화를 위해 2019년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76호)’을 마련하여 계통운영자 및 송배전사업자의 신재생발전기 관제운영과 신재생발전사업자의 기술적 특성자료, 출력정보 제공 사항 등 신재생 전원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제반 기술규정을 마련함

- 또한 신재생 발전기 변동성 대응을 위해 운영예비력 체계를 변경해 신재생에너지 접속 확대, 단위 발전기 용량 증가 등 계통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적정 운영 예비력 확보 기준을 명시함

2 향후 논의 사항

■ 우리나라는 아직 신재생에너지 발전 초기 단계로 향후 비용효율적인 계통 유연성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를 위한 대응 방안¹¹⁶⁾으로 전력시장 제도개선, 변동적 신재생에너지 규제·예측 시스템 마련 및 유연성 제공 자원 확보 등이 거론되고 있음

■ 전력시장 제도개선

- 현재 국내 전력시장에는 하루 전 시장(Day-ahead market)만이 있고, 실시간 시장(Real time market)은 부재하며 수급불균형을 유발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벌과금 제도가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력 실시간 시장 도입을 통해 이중정산시스템¹¹⁷⁾을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도 일반 발전사와 동일하거나 또는 완화된 밸런싱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발전량 예측 제고와 계획 발전량 준수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더 나아가 보조서비스 시장과 5분 단위의 실시간 시장 가격까지 형성될 경우에는 현재 전력 시장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유연성 제공 자원(가스터빈, 양수와 같은 피크 발전기와 DR, ESS)과 같은 신기술을 보유한 전력시장 참여자의 수익성 개선으로 비용효율적인

116) 안재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대비한 전력계통 유연성 강화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12.31.
 117) 이중정산시스템은 하루 전 시장에서 결정된 발전계획량에 비해 초과 또는 미달한 실제 발전량에 대해서는 실시간 가격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임.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시간 시장을 운영하면 변동적 재생에너지의 규제가 완화되고, 실시간 시장 가격 형성을 통해 유연성자원이 그 가치에 합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시장 시스템으로 유연성 자원의 경제성을 획득할 수 있음

예비력 확보가 용이하게 될 수 있음

■ 변동적 신재생에너지 규제 및 예측 시스템 마련

- 우리나라는 아직 신재생에너지 발전 초기 단계인 만큼 주요 선진국의 전력시장과 같이 일반 발전사와 동일한 수준의 밸런싱 의무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완화된 신재생에너지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현재 급전지시를 이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과도한 전력량 생산에 따른 출력제한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출력 변화를 사전에 경고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증감발률 예측 시스템 등 안정적인 장단기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됨

■ 유연성 제공 자원 확보

- 유연성 자원은 공급측 유연성 자원과 수요측 유연성 자원이 있는데 공급측 유연성 자원은 화력발전 리트로핏이 있음
 - 화력발전 리트로핏이란 기존 노후 화력발전의 보일러와 터빈 등을 개선해 용량, 효율을 높이고 반응 속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발전기 제어 특성을 개선해 계통 변동성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고 배기가스를 감소시킬 수 있음
 - 수요측 유연성 자원은 수요반응 제도 도입·개선이 있는데 소비자가 인센티브 또는 시간대별 차등 요금에 반응해 자발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변경함으로써 피크 전력 저감 혹은 과잉 전력의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음
 - 그 외 DSO(Distribution System Operator)나 VPP(Virtual Power Plant)를 통한 분산자원 최적 운영 시스템도 수요측 유연성 자원으로 거론할 수 있는데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기 등의 분산자원을 통합 제어해 피크 전력을 감소시키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계통에서 필요로 할 때 전기를 공급해 계통 유연성을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섹터커플링도 유연성 제공 자원으로 활용 가능함

작성 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정선희 ☎ : 02-6788-4592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 : 044-203-5705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1 현황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서방의 대러 제재와 러시아의 비우호국에 대한 에너지 공급 중단 확대로 천연가스와 원유 국제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장기화되고, 국내 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음
 - 무역수지 악화와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지난 1~5월 무역수지는 역대 같은 기간 최대 수출액 달성에도 불구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약 7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에너지수입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3개월(3~5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약 223억 달러 증가하며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지속¹¹⁸⁾하고 있음
- 새 정부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2022.4.28. 발표)에서 에너지 공급망 위기와 관련하여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조기경보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민간 자원 안보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공기업, 민간, 정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힘
 - 또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2022.6.16. 발표)에서는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 민간 해외 진출에 대한 용자 및 공공기관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임

2 향후 논의 사항

-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으로 인한 국내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장·단기 대응 전략¹¹⁹⁾ 마련이 필요함
- 단기전략은 최근의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에 따른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추진할 필요가 있음

118) 에너지데일리, 「에너지 공급망 위기 장기화… 석유류 세 부담 경감 확대해야 한다」, 2022.6.16.

119) 박진호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 위기 장기화의 국내 경제·에너지 부문 영향과 대응전략」, 『에너지경제연구원』, 2022.6.

- 단기전략의 첫 번째 정책 수단은 조세정책으로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유류세 할인이나 LNG 할당관세의 면제 등과 같은 세율할인 등을 통해 국내 에너지 가격 자체를 낮춤으로써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국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함
 - 그러나 이는 정부의 세수(稅收)를 감소시키고, 에너지가격 상승 시기에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인 효과를 수반하므로 현재와 같이 이례적인 초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 두 번째 정책 수단은 국내 LNG 중·장기 도입계약을 기반으로 한 LNG 수급안정성 확보전략으로 국내 LNG 수입의 대부분은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나, 여전히 일부 물량은 국제 현물시장에서 매우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조달해야만 하기 때문에 현재 체결되어 있는 중·장기계약의 추가구매 조항 등을 최대한 활용해 LNG 수요가 높아지는 올해 동절기가 도래하기 전에 국내 천연가스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세 번째 정책 수단은 기저발전설비의 이용률을 유연하게 조절함으로써 LNG 발전수요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최근 수년간 원전과 석탄 발전량의 발전제약으로 LNG 소비가 빠르게 증가해 온 상황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의 고공행진이 지속될 경우 석탄화력 발전량 확대의 불가피함을 고려해, 전원(電源) 비중의 일시적 조정을 위한 범부처 협력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국내 수요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에너지 수요 자체를 낮출 필요가 있음
- 장기 전략은 향후 지속될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교란에 대비해 외부적 공급충격에 대한 국내 경제·에너지시스템의 대응력과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함
- 첫째, 에너지 효율향상 및 수요관리 정책의 정비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정책 수단인 에너지효율향상 프로그램인 EERS 사업은 사업자의 투자비 회수 방안 미흡, 목표에 대한 패널티·인센티브 제도의 미비 등으로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EERS 제도의 법률적 기반 정비를 통해 효율향상 조기 달성을 통한 위기 대응과 중·장기적 수요관리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함
 - 둘째, 에너지 안보관점에서 발전설비 인프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데 국제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원전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국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또한 폐지가 예정된 석탄 화력 발전설비의 일부를 일정기간 기동 가능 상태로 보존함으로써 에너지 공급 비상시 발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휴지보존 대상설비의 선정 방안, 설비 재가동에 따른 보상체계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방안 수립이 필요함

- 셋째, 전력시장의 제도개선으로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물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원가 인상요인을 전기소매요금에 반영하고 있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원가 변동요인을 전기요금에 적기 반영해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왜곡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다만, 에너지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도 병행할 필요가 있는데 전력 산업기반기금 또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등의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넷째,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공급체계를 촉진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데 국내 전력공급시스템 내에서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화석에너지 발전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전력계통의 인프라, 거버넌스, 제도 등 통합적 개선계획 수립이 시급함
- 마지막으로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해외수소 및 핵심광물(critical mineral)의 글로벌 공급망 확보전략이 필요한데 국내 수소 수요는 수소경제 인프라가 확충되는 203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공급 체계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수소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선제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가 필요함
 - 또한 풍력, 2차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의 필수 소재로 사용되는 소위 '녹색광물'은 지리적으로 특정국가에 편중돼 있어 자원 민족주의 현상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해외수소와 핵심광물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 이행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에너지자립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정선희 ☎ : 02-6788-4592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 : 044-203-5705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

1 현황

- 탄소배출권 거래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의 온실가스 저감 활동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제시된 시장 기반 메커니즘인 ‘교토메커니즘(Kyoto flexible mechanism)’의 이행 수단 중 하나로 온실가스 배출 권리인 ‘탄소배출권’을 시장을 통해 사고 파는 행위¹²⁰⁾를 의미함

 - 탄소배출권 거래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대해 허용배출권(permit)을 할당(allocation)하고, 실제 배출량과 허용배출량의 차이인 배출량 부족 또는 잉여에 대해서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우리나라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일정 기간을 차수별로 구분하여 시행 중인데 제 1차 계획기간(2015~2017), 제 2차 계획기간(2018~2020)을 거쳐 현재 제 3차 계획기간(2021~2125) 중에 있음¹²¹⁾

 - 해당 기간 동안 시장참여자는 제 1차 계획기간 동안 525개, 2차 589개, 3차 685개 등으로 증가는 하고 있지만 증가 속도가 더더 시장 수요가 부족하고, 허용배출총량이 정책에 의해 고정된 규제시장(compliance market)의 특성으로 인해 공급 또한 한계가 있어 시장에서의 거래 부진에 따른 유동성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2020년 연간 거래량은 약 2천만 톤으로 전체 허용배출총량(5.59억톤)의 3.7% 수준이며, 거래방식도 장내거래보다 장외거래의 비중이 높은 상황임
 - 거래 부진 외에도 유상할당 확대 기초, 상쇄배출권정책¹²²⁾, 국가감축목표(NDC) 상향 등의 정책 리스크에 의한 높은 가격 변동성이 배출권 유통시장의 또다른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실제 2015년 출범 당시 8천 원 수준이었던 배출권가격은 이후 2020년 4만 원대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3차 계획기간 배출권의 이월/차입을 축소하는 정책이 발표되며 2만 원대로 급락한 바 있음

120) 안승광, 「탄소배출권과 탄소시장」, 기업지배구조원, 2010.

121) 송홍선, 「2050 탄소중립과 배출권거래제의 활성화」, 자본시장연구원, 2021.

122)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할당받은 사업장(할당대상업체)이 해당 영역(Boundary) 외에서 감축 활동을 수행하고 환경부로부터 인증 받은 배출권을 해당 사업장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감축 목표 달성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

2 향후 논의 사항

-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시장 참여자 부족의 문제는 거래 부진의 문제 뿐만 아니라 탄소 감축 전략을 짜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탄소 한 단위 배출에 따른 탄소가격에 대한 비용정보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국내 배출권시장의 거래 빈곤을 극복하고 가격 효율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첫째, 시장조성기능을 대폭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2019년 시장 활성화를 위해 2개 금융공기업이 매일 3천 톤 이상에 대해 양방향 호가를 제시하며 스프레드(살 때와 팔 때의 가격의 차이)를 1천 원 이내로 유지하는 등 거래체결을 위한 시장조성기능을 담당한 바 있음
 - 또한 3차 계획기간에는 유동성공급자제도를 도입하여 거래전문 금융회사의 참여를 허용하여 2021년 일평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사례¹²³⁾가 있었음
 - 둘째, 금융투자회사의 중개기능을 확대하여 유동성 공급으로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거래 부족으로 인한 변동성이 큰 가격을 안정화시킴은 물론 기업들의 탄소감축 등 친환경 투자에 나서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재 배출권 시장은 현물 거래밖에 없어 선물시장 도입을 통해 위험을 헤징¹²⁴⁾(hedging)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¹²⁵⁾이 있음
- 한편 탄소배출권 가격의 불안정성으로 가격 예측 불가능하게 급·등락하면 기업이 경제적 손익을 따져 추가적 감축 투자 여부 및 배출권의 매수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이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EU와 같이 시장에 배출권 공급물량 여유분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식, 미국 캘리포니아주처럼 주정부가 판매하는 배출권의 상·하한 가격범위를 사전에 제시하는 방식 또는 뉴질랜드같이 시장에서 거래하는 배출권 가격과 별도로 정부가 판매하는 배출권의 상한가격을 사전에 제시하여 기업이 배출권 구매를 필요로 하면 시장에서 구매할지, 정부 판매분을 살지 선택할 수 있는

123) 시장조성자제도와 유동성공급자제도 시행으로 시장에서 탄소배출권 일평균 거래량이 2019년 69,000톤, 2020년 84,000톤 대비 205,000톤으로 대폭 증가함

124) 헤징은 주가, 환율,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선물시장에서 현물과 반대되는 선물포지션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투자한 종목과 반대 포지션인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하여 수익은 제한되지만 손실을 방어하는 전략임

125) 서울 파이낸스, 「탄소배출권 활성화 방법론 논란...선물 도입 vs 시장참여 확대」, 2022.5.20.

옵션을 제공하는 방식¹²⁶⁾ 등을 우리 시장환경에 맞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정선희 ☎ : 02-6788-4592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 : 044-203-5705

126) Electric Power Journal, “대한상의 “배출권 가격 안정화해 기업부담 줄여야”, 2021.9.14.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원별 개선과제

1 현황¹²⁷⁾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를 제시하며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초가 원전 발전 비중 상향과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밝힘
 - 동 위원회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실행방안은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석탄·LNG 발전은 합리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함
 - 또한, 한전 독점판매 구조의 점진적 개방, 원가주의 요금원칙 확립 등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 등을 강조함
-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차별을 두는 것으로 특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원(電源) 구성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그간의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에너지원별 문제점에 대한 점검 및 이를 토대로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현실적 에너지 정책의 수립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증가해온 추세이며, 탄소중립 정책 방향이 유지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2021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 대비 15.2% 증가한 43,085GWh로 2007년 이후 연평균 17.6%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2030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전체 에너지원의 33.6%까지 증설되고, 발전량 비중은 30.2%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전력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송전선로 및 에너지 저장 설비 부족, 전력계통의 유연성 미흡으로 재생에너지 활용의 효율성이 낮고, 재생에너지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율이 낮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
- 천연가스는 최근 주요 발전원 중 가장 큰 폭의 발전량 증가를 보였으며, 2030년까지 설비용량 비중은 소폭 증가되지만 발전량은 감소할 전망이다

127) 장우석, 「탄소중립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한 발전 에너지원별 현안과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22.5.3

- 2021년 천연가스 발전량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168,262GWh로 2007년 이후 연평균 5.6% 증가했으며, 2014년부터 감소하다 2017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2030년 기준 천연가스 발전설비용량은 전체 에너지원의 32.1%까지 증설되고, 발전량 비중은 19.5%까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천연가스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유연성 전원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나 수급 불안정,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지난 10년 간 천연가스 가격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2021년부터 공급망 차질이 발생하며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3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탄소배출 감축 노력이 요구됨
- 석탄 발전량은 2018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임
- 2021년 석탄 발전량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197,600GWh로, 2007년 이후 완만하게 증가해오다가 2018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고, 2030년 기준 석탄 발전설비용량은 전체 에너지원의 18.9%까지 축소되고, 발전량 비중도 21.8%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탄소중립 이행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속적으로 폐지 또는 연료전환을 시행할 예정으로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좌초자산(시장의 환경 변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슈로 자산 가치가 하락해 상각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함
- 원자력 발전량은 10년 이상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발전량 비중은 2018년 저점을 기록한 이후 다시 반등하고 있음
- 2021년 원자력 발전량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158,015GWh로, 2007년 이후 연평균 0.7%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비슷한 수준의 발전량을 유지하였고, 2030년 기준 원자력 발전설비용량은 전체 에너지원의 11.8%까지 축소되나, 발전량 비중은 23.9%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Green Taxonomy)'에 원전이 포함되면서 명문화된 두 가지 전제조건은 실질적인 규제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50년 이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하고 운영할 세부계획을 제시하는 것'과 '2025년부터 사고저항성 핵연료¹²⁸⁾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 조건으로 전자는 지역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 때문에, 후자는 기술력의 문제로 우리나라가 이를 충족시키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128) 원전의 심각한 손상 및 대량의 방사성 물질 누출량을 최소화하거나 지연시킴으로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대형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핵심 요소 기술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2 향후 논의 사항¹²⁹⁾

-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에너지원별 당면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함
- 재생에너지 확대 경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망 혁신 및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기존 전력망의 운영 방식에 큰 변화를 초래하므로 설비 확충, 운영시스템 개선 등 전력망 혁신을 위한 투자가 요구됨
 - 재생에너지의 대폭적인 비중 증가가 가져올 수 있는 수요 대응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천연가스 공급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한 민간의 역할 확대, 경직적 시장구조 유연화 추진 및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좌초자산화 되는 석탄발전 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감축 전략과 지원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
 - 위기대응시스템으로서 일부 유지하는 설비와 효율향상, CCUS, 연료전환 등 기술개발을 통해 좌초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과 자본 손실, 지역 경제 영향을 고려하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해 나가야 함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원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 및 사고저항성 핵연료 조건 충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신규원전 건설 및 기존원전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할 수 있는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노심용융(爐心鎔融)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고저항성 핵연료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연구개발사업도 필요하며 더불어 장기적으로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핵융합 에너지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정선희 ☎ : 02-6788-4592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 : 044-203-5705

129) 장우석, 위의 글

도시가스 노후배관 교체 대책 마련

1 현황

- 1987년 LNG를 이용한 도시가스를 보급한 이래, 산업통상자원부 주도의 한국가스공사 주배관망 건설이 전국적으로 거의 완성되어 현재 우리나라 도시가스는 전국 10가구 중 8가구 이상 보급된 성숙화된 산업임
 - 2021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83.6%(수도권 90.6%, 지방 76.9%)에 달함
- 국내에 도시가스가 보급된 지 35년 이상이 경과함에 따라 초기 설치한 배관 역시 노후화되고 있음
 - 2020년 12월 기준 일반도시가스사업자¹³⁰⁾가 설치한 총 배관은 48,400km로, 이중 PE관(폴리에틸렌)은 24,249km, PLP관(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은 24,151km임
 - 1990년대 초반에 국내에 보급된 PE관은 높은 강도·난연성 및 긴 수명(평균 수명 50년)의 특징을 가지며,¹³¹⁾ 배관 보호를 위해 폴리에틸렌을 피복한 PLP관은 장시간 사용 시 자연균열이 발생하여 피복의 안전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¹³²⁾
 - 그런데 PLP관 중 31년 이상 된 배관이 3,321km(13.8%)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배관현황('20.12. 기준) |

[단위: km]

총배관	PE관 (비금속)	PLP관 (금속)	PLP관(금속) 설치년도별		
			20년 이하 ('20년~'01년)	21~30년 ('00년~'91년)	31년 이상 ('90년~)
48,400	24,249	24,151	12,708	8,122	3,32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2022.6.)

- 이와 같은 도시가스 배관 노후화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중앙정부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은 여전히 시행 중인 반면,¹³³⁾ 장기 사용 배관 교체 관

130) 전국 34개 도시가스사

131) 홍기범, 「지중매설 PE관 특성 및 재활용 현황 분석」,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9.

132) 류근창·이성민·고영태·Colin Argent, 「매설강관용 폴리에틸렌 피복재의 내구성」, 『한국가스학회지』 제6권제4호, 한국가스학회, 2002.12., p.40.

런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 않아¹³⁴⁾ 노후 가스배관 교체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2 향후 논의 사항

- 도시가스 보급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만큼, 도시가스 보급정책에서 장기 사용 가스배관 교체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¹³⁵⁾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사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만든 ‘가산투자보수율제도’¹³⁶⁾의 적용대상을 장기 사용 배관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도시가스사의 자발적 노후 가스배관 교체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는 ‘노후 가스배관’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없는데, 장기 사용 가스배관 정의를 마련함으로써 사용 연수에 따른 교체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정부가 도시가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수소 공급확대를 위해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 20% 혼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임¹³⁷⁾
 - 도시가스 수소혼입은 도시가스 공급배관에 수소(H₂)를 도시가스와 혼입하여 공급하는 것인데, 수소의 특성으로 인해 수소취성(embrittlement, 수소가 금속 내부로 확산되어 금속을 파괴시키는 현상), 수소누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도시가스 배관망 수소혼입에 맞춘 가스배관 교체를 검토해야 할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류경주 ☎ : 02-6788-4597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 044-203-3989

133) 도시가스 공급배관 용자사업

134)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2022.6.20.)

135) 이나래, 「30년 이상 된 도시가스배관 교체, 도시가스사 외면?」, 『배관기술』제34권제3호, 2020.3.2., p.65.

136) 도시가스 공급사가 신규 배관망 설치 시 지자체가 요금 기저의 3% 이내에서 요금을 가산해 주는 제도임

13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2.2.8.)

폐업 주유소 대책 마련

1 현황

- 2021년 말 기준 전국 주유소는 11,378곳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그 수가 감소하고 있음
 - 최근 5년간('17~'21) 전국에서 신규등록 된 주유소는 총 556곳인데 비해, 휴·폐업한 주유소는 총 3,702곳임
 - 특히 2021년에 전국에서 폐업한 주유소는 283곳으로, 2017년 이후 매년 200여 개의 주유소가 폐업하고 있음

| 전국주유소 현황 |

[단위: 업체수]

구분	전국주유소	신규등록	휴업	폐업	등록취소
2017	12,007	156	333	229	9
2018	11,750	98	610	272	19
2019	11,700	125	518	211	10
2020	11,589	85	514	220	23
2021	11,378	92	512	283	7

자료: 전국 주유소현황은 한국석유관리원(<https://www.kpetro.or.kr/lay1/S1T602C603/contents.do>), 주유소 등록·휴업·폐업·등록취소 현황은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data/3076606/fileData.do>)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함(최종검색일: 2021.6.2.)

- 한편 친환경적인 전기차 및 수소차의 보급 확대로 전기차 충전기 및 수소충전소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2021년 6월 기준 전국에 보급된 전기차 충전기는 72,105개, 같은 해 10월까지 구축된 수소충전소는 118곳에 이르고 있음
 - 2021년 말 보급된 전기차는 231,443대로 전년 대비 71.5% 증가하였고, 수소차는 19,404대로 전년 대비 77.9% 증가하는 등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전기차 및 수소차 현황 |

[단위: 대]

구분	'16말	'17말	'18말	'19말	'20말	'21말
전기차	10,855	25,108	55,756	89,918	134,962	231,443
수소차	87	170	893	5,083	10,906	19,404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1.28.)

| 국내 전기차 충전기 보급 및 수소충전소 구축현황(누적) |

[단위: 개]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기차 충전기	급속	919	3,343	5,213	7,396	9,805	12,789
	완속	1,095	10,333	22,139	37,396	54,383	59,316
	합계	2,014	13,676	27,352	44,792	64,188	72,105
수소충전소				14	36	70	118

주: 2021년도 누적현황은 전기차충전기는 6월 기준, 수소충전소는 10월 기준임

자료: 전력거래소,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이용 현황분석」, 2021.12.; 환경부,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2021-2025)」, 2021.11.26.

- 이와 같은 전기차 및 수소차의 보급 확대는 필연적으로 관련 충전 인프라의 구축을 요구하게 되는 반면, 주유소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 향후 휴·폐업하는 주유소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2021년도 누적현황은 전기차충전기는 6월 기준, 수소충전소는 10월 기준임
- 그런데 폐업하려는 주유소는 폐업 신고 후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위험물저장시설의 철거 등 용도 폐지 확인, 토양오염도 조사 후 토양정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에 드는 비용이 상당하여¹³⁸⁾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¹³⁹⁾

2 향후 논의 사항

- 현행 주유소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138) 300평 주유소를 기준으로 시설물 철거 비용 6.3천만 원과는 별도로 오염토양을 복원하는 비용이 평균 1억3,340만 원(7천만 원~2억 원) 정도에 이룸

139) 김재경·임찬수, 「E-mobility 성장에 따른 석유·전력·신재생에너지 산업대응 전략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12. p.99.

-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석유판매업자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주유소 폐업 또는 전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공제조합의 기본재산 조성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주유소의 사업전환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을 뿐임
 - 최근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 시대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유소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임
- 또한 방치된 폐업 주유소는 토양오염의 문제를 야기하고, 유출된 기름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갈 경우 식수까지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는 방치된 주유소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 철거 및 토양정화 비용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류경주 ☎ : 02-6788-4597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 : 044-203-5226

자원안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정책 강화

1 현황

■ 해외자원개발은 「해외자원개발 촉진법」(1978년 제정)을 1982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으로 개정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음

- 해외자원개발 추이를 살펴보면, 935개 사업(석유가스 386개, 광물 549개)에 참여하여, 2020년 말 현재 63개국 419개 사업(석유가스 118개, 광물 301개)이 진행 중임¹⁴⁰⁾
- 그러나 2014년부터 진행사업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석유·가스, 우라늄 및 니켈 등의 자원개발을 또한 하락추세에 있음

| 해외자원개발 현황 |

구분		'14	'15	'16	'17	'18	'19	'20
해외자원개발 사업 수	석유·가스	372	376	378	380	380	383	386
	진행사업	182	166	141	131	122	119	118
	종료사업	190	210	237	249	258	264	268
	일반광물	519	525	533	538	544	547	549
	진행사업	345	334	335	322	316	308	301
	종료사업	174	191	198	216	228	239	248
자원개발률 (%)	석유·가스	14.4	15.5	14.9	12.7	12.5	13.3	12.0
	유연탄	55.4	52.8	49.9	37.6	29.9	32.2	34.3
	우라늄	11.1	4.2	4.0	4.0	3.1	3.3	1.4
	철	18	15.1	27.9	26.2	31.8	32.0	34.3
	동	10.7	5.5	6.5	8.0	7.7	10.0	12.2
	아연	21.5	21.2	22.8	20.6	19.9	20.7	21.5
	니켈	61.7	68.9	63.2	61.8	55.2	55.0	47.2

자료: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최종검색일 2022.6.9.)

■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요의 대부분(94%)을 수입하기 때문에 자원의 안정적 수급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자원안보 측면에서도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가지는 중요성이 매우 큼

140)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최종검색일 2022.6.9.)

- 해외자원개발은 자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자원 공급 다변화에 기여하며, 자원 공급 위기 상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함
-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공기업의 과거 투자 실패로 인한 재무상황 악화 및 수익성 저하 등과 최근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부 예산규모 축소¹⁴¹⁾ 등으로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임¹⁴²⁾
- 최근 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니켈·리튬·희토류 등 新산업 원료인 희유금속의 수요 급증으로 인해 핵심 원료광물의 획득은 치열해지고 있는 반면, 투자 부진으로 인해 자원개발률은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¹⁴³⁾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붕괴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가 전략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국가 자원안보 기반 강화를 위한 해외자원개발은 공적 영역에서, 수익성 기반의 해외자원개발은 민간 영역에서 담당하게 하는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¹⁴⁴⁾
 - 공공부문 중심으로 수행되어 된 해외자원개발은 그간 공기업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민간의 자원개발 투자 또한 매우 위축된 상황임
 - 해외자원개발은 자원안보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공공부문은 수익성보다는 자원안보라는 전략성에 기초하여 투자하고, 민간부문은 수익성에 기초하여 투자하되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자원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장기적이고 일관된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000년대 들어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안정적인 도입’에서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로 전환함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증가하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그 규모가 축소되는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 흐름에 따라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로봇·자율주행차·

141) 용자예산(억원): ('10) 3,093 → ('14) 2,006 → ('16) 0 → ('18) 700 → ('19) 367

142) 산업통상자원부,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20~2029)」, 2020.5.12.

143) 리튬·희토류 자원개발률: ('13) 9.6% → ('18) 0.7%

144) 김태현, 「에너지전환에 대응한 국제 자원개발기업의 전략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pp.89-90.

2차전지·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생산에 필요한 원료광물 자원 확보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원자재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빈국으로 공급망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일관된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마련·시행해야 할 것임¹⁴⁵⁾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류경주 ☎ : 02-6788-4597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 : 044-203-5241

145) 매거진 한경, 「적폐 몰렸던 해외 광산…원자재 쇼크에 '귀한 몸'」, 2022.4.1.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1 현황

- 태양광·풍력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증가로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¹⁴⁶⁾ 대규모 발전소·송전선로의 건설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 및 비용의 증가로 인해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공급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¹⁴⁷⁾
 - 분산에너지는 중소 규모의 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자가발전, ESS, 수요자원 등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되어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로, 에너지 사용지역 인근에서 관련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대규모 송전선로·발전소 건설을 최소화하고,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이에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 및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을 통해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제시하였고, 분산에너지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21.6)을 마련함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 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 발전량 비중을 '40년 30%로 확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한 송·배전망 확충, 자가소비 활성화 등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 수요지 인근에서 저탄소에너지를 스마트하게 생산·소비·거래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 전력계통 관리·수용 능력 강화, 분산에너지 생산·소비 확대, 분산에너지 친화적인 전력시장·제도 개선

- 주요국 역시 탄소중립과 함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미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분산에너지 체계에 적합한 계통 관리방안, 잉여전력 해소 대책 등을 마련하여 추진 중임
- 그런데 현행 관련 법령 및 시장 제도는 중앙집중형 수요공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146) 태양광·풍력은 기상 의존도가 높아 발전계획이 어렵고, 자체적인 출력량 조절에 한계가 있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제주 현황) 재생에너지 비중: [’15] 9.3% → [’20] 16.2%, 출력제한: [’15] 3회 → [’20] 77회

147)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2021.6.30.

- 기존의 계통관리방식은 송전망에 접속되는 대규모 발전소를 중심으로 급전·제어함에 따라 배전망에 연계되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국적 단위로 전력체계를 규정함에 따라 개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유도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함
- 또한 대규모 석탄·원전발전소에 적합한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장은 시시각각 변하는 재생에너지 출력 및 발전량 관리에 한계가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으로 다음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첫째,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임
 - 2021년 7월 발의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11769호)이 해당 상임위 소위에 계류되어 현재까지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 동 법안은 전력계통영향평가, 통합발전소 제도, 배전망관리자 제도, 분산에너지 특구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에너지시스템의 분산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둘째, 지역의 에너지 정책 계획 역량 및 이행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분산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지역 주도의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따라서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지자체와의 정책 조정, 협업, 인센티브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류경주 ☎ : 02-6788-4597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 044-203-3925

탄소중립을 위한 CCUS 상용화 제도기반 구축

1 현황

-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나 메탄의 경우 열(적외선 파장)을 복사하여 방출하기 때문에 대기 온도를 상승시킴. 이에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탄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없애는 방안으로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CCUS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CCS(Carbon Capture Storage) 기술과, 포집하여 활용까지 수행하는 CCU(Carbon Capture Utilization) 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임
-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특별보고서에서 CCUS 기술에 관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필수기술로 기술하고 있고,¹⁴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70 글로벌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CCUS 기술 기여도를 총 감축량의 15%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음¹⁴⁹⁾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이 발표한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안)¹⁵⁰⁾에서 CCUS 기술을 핵심 전략 수단으로 포함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전략(20.12)」에서 발전·산업 부문 핵심 기술 수단으로 CCUS 기술을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임¹⁵¹⁾
 - 특히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철강, 시멘트 및 석유화학 제품 등은 탄소배출이 높은 산업군인데, 탄소 배출량이 높은 산업군을 가지면서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일수록 유럽이나 미국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에 큰 경제적인 부담을 지기 때문에 CCUS 기술에 대한 투자와 전략적인 대책 마련이 불가피함¹⁵²⁾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포집·수송·저장 등과 관련한 규정 등 CCUS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이 미비한 상황임

148) 윤여일, 「탄소중립 해결책으로 CCUS 기술이 급부상 중」, 『기술과 혁신』Vol. 446,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21.3.12. p.19.

149) 관계부처 합동,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혁신 로드맵(안)」, 2021.6.15.

150) (미국) Mid-Century Strategy for Deep Decarbonization, (영국) The Clean Growth Strategy, (독일) Climate Action Plan 2050, (일본) Long-term Strategy under the Paris Agreement 등

151)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임

152)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국,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동향과 선도 기업들」, 『Deloitte Insights』 2021 No.19,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2021.7.9., p.84.

2 향후 논의 사항

- CCUS 상용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포집한 탄소 저장소 확보,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CCUS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개별법 없이 40여 개 관련법을 준용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법률 간 충돌 등 CCUS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CO₂ 포집·수송·저장·이용, 안전관리 및 수용성 확보 등과 관련한 제도를 포함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¹⁵³⁾
 - EU는 「CCS 지침(CCS-Richtlinie 2009/31/EG)」을, 독일은 「CO₂ 포집, 수송 및 영구 저장을 위한 기술의 실증 및 응용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고, 미국 역시 CCS 전 과정에 관한 법제도가 정부 주도로 논의되고 있음
 - 또한 CCUS를 통한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CO₂ 대규모 저장소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데, 현재 국내 CCS 유망 저장소의 저장 가능 용량은 약 7.3억 톤으로 평가되고 있음
 - 따라서 저장소 추가 확보를 위해 해양 저장소 종합 탐사 사업 추진과 해외 저장소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CCUS 상용화 촉진을 위해 규제완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및 기술개발 지원 제도 마련 등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류경주 ☎ : 02-6788-4597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 044-203-5161

153) 박완주의원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CUS 기술의 필요성과 추진전략 국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2021.11.9.; 김경석, 「CCS 실증 및 CCUS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과 개선점」, 『기업과 혁신연구』 제44권 제2호,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21.6.30.

청정수소 확대 방안

1 현황

- 2022년 6월 10일 공포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 도입,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 대한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제도,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한 수소발전량 구매·공급제도 등 청정수소 사용 촉진에 관한 내용이 추가됨
 - 동 법률은 청정수소에 대해 수소를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무탄소수소, 저탄소수소 또는 저탄소수소화합물로 규정하고 있어 청정수소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질 것임¹⁵⁴⁾
- 최근 국내에서는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안보 강화의 관점에서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이하 '원자력수소')이 중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데,¹⁵⁵⁾ 원자력수소는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여 생산한 수소와 마찬가지로 발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 시행령으로 정해질 이산화탄소량 기준을 충족하면 청정수소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 독일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내 청정수소 계획에 원자력수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추세이고, 중장기적으로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음¹⁵⁶⁾
 -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한편,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 청정수소 자급률 34%, 2050년에는 60%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수소의 대부분이 천연가스 개질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인 친환경적인 청정수소(그린수소 및 블루수소)의 비중은 전무한 상황임¹⁵⁷⁾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청정수소의 보급·확대가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안정적인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 마련 방안의 하나로 경제적이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거의

154) 청정수소와 관련한 내용의 시행 시행일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15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가기후기술정책센터, 「원자력수소 정책 및 산업동향」, 『Climate Technology Brief』No.4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22.5

15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가기후기술정책센터, 위의 글.

157)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2021.11.26.

없는 원자력수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원자력은 국내 발전원 중 발전단가가 가장 낮아 원자력수소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생산보다 경제력 측면에서 탁월하여 수소사회로의 진입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음¹⁵⁸⁾

2 향후 논의 사항

- 원자력수소를 청정수소에 포함하여 수소경제 이행의 주요 축으로 채택·개발할 경우 관련 인프라 구축, 수용성 제고 등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¹⁵⁹⁾
 - 원자력수소 개발 및 실증 R&D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을 포함할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임¹⁶⁰⁾
 -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기술이 친환경적 기술인가를 판가름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여기서 제시된 기준을 통해 금융권이나 산업계는 녹색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녹색채권 발행,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음¹⁶¹⁾
 - 한편, 원자력수소는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안전성 문제와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가 필요해 보임
 - 원자력의 안전성 제고 및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 방안 마련과 함께, 원자력과 수소시설의 인접 설치 안전성에 대해 주민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선제적 소통과 홍보가 필요할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류경주 ☎ : 02-6788-4597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 : 044-203-3955

158) 박석빈, 「수소 시장전망 및 국내외 최신 정책 동향(원자력 활용 포함)」, 『원전을 활용한 수소생산의 국내외 정책 및 기술 동향세미나 자료집』, 2022.2.24

159) 박찬오, 「미국의 원자력 수소 개발 동향과 시사점」,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에너지경제연구원, 2022.3.18.

160) 참고로 대통령인수위는 4월 28일 녹색 금융·투자의 기초가 되는 녹색분류체계에 EU 사례를 참고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원전을 포함하겠다' 밝힘

161) 환경부 보도자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제시...녹색금융 활성화 기대」, 2021.12.30.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개선

1 현황

- 2022년 1월 현재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128개(태양광 128개, 풍력 52개)가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음

| 시·도별 이격거리 규제 현황 |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제주	인천	서울	부산	광주	세종	대전	울산	전체
지자체수 (광역별 기초)	11 (31)	17 (18)	11 (11)	15 (15)	14 (14)	22 (22)	21 (23)	15 (18)	1 (8)	1 -	1 (10)	0 (25)	0 (16)	0 (5)	0 -	0 (5)	0 (5)	128 (22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2022.4.)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에 의해 규제받게 됨
 -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추진절차는 ① 발전사업 허가, ② 개발행위 허가, ③ 공사계획 인가, ④ 준공검사, ⑤ 사용전 검사, ⑥ 전력수급계약, ⑦ 사업개시신고의 절차를 거침
 - 이 중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시행령 [별표 1의2]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태양광 등의 설치 및 시공과 관련한 이격거리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⁶²⁾
 - 이에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개발행위 허가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음
- 그러나 국내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합치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2050 탄소중립 이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¹⁶³⁾
 - 태양광 업계는 도로와 주택 등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설정하여 해당 지역 이내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제한하는 이격거리 규제방식이 태양광발전 보급 활성화를 막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¹⁶⁴⁾

162)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2022.1., pp.11-15.

163)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위의 글, p.32.

- 또한 기후솔루션, 에너지전환포럼, 넥스트,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과 태양광산업협회 등 136개 단체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극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2 향후 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기준의 무분별한 이격거리 규제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입지규제 설정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법제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격거리 설정 근거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는 이격거리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이외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아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음¹⁶⁵⁾
 - 따라서 국토계획법령 또는 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입지규제 설정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조례보다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류경주 ☎ : 02-6788-4597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 : 044-203-5366

164) 전자신문, 「산업부, 태양광 입지규제 표준안 만들고 강제화까지 검토」, 2021.1.31.

165) 「국토계획법 시행령」[별표 1의2]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1 현황

■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한파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냉·난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¹⁶⁶⁾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비용 부담이 커서¹⁶⁷⁾ 이들에 대한 에너지복지 강화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음

■ 에너지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액화 석유 가스(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 하는 사업임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로,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해당됨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됨

16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2022.6.20.)

167) 2016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연료비 비중은 13.4%인데 비해, 10분위 가구는 1.8%에 불과함(전기정보, 「에너지복지 사업, '형평성' 맞추고 '실효성' 높여야 : 에너지복지 지원체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전기정보』 통권 522호,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2018.11.10., p.40.)

| 2022년도 지원금액 |

구 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이상세대	내 용
여름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 요금차감(전기)
겨울	96,500원	136,500원	169,500원	194,500원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등유, 액화 석유 가스(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총금액	103,500원	146,500원	184,500원	209,500원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2.5.24.)

- 그런데 동 사업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자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¹⁶⁸⁾
 - 소득이 낮아도 세대원특성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소득을 중심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소득 이외의 자료로 에너지빈곤층¹⁶⁹⁾을 포착하는 지표에서는 사각지대가 크게 발생하기도 함
- 따라서 동 사업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에 대한 보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향후 논의 사항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기준을 좀 더 객관적인 지표로 개선함으로써 에너지빈곤층이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¹⁷⁰⁾
 - 에너지빈곤층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세대원특성기준 대신 에너지 지출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연료비 기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세대원특성기준의 경우 에너지빈곤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득기준 또는 연료비 기준 중 최소 한 개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정책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류경주 ☎ : 02-6788-4597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 : 044-203-5253

168) 국회예산정책처, 「에너지복지 대상 및 사각지대 추정과 지원제도 분석」, 『연구용역보고서』, 2019.

169) 특정 가구가 추위나 더위를 느끼지 않을 정도의 냉·난방을 유지하는 데 있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태에 처한 계층을 말함

170) 국회예산정책처, 위의 글.

에너지 부문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향후 과제

1 현황

- '19년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1,150만 톤으로, 국가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87.2%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3.3% 감소함¹⁷¹⁾
 -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5년~'18년까지 증가하였으나, '19년 발전·열생산 부문, 가정·상업·공공 등의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면서 배출량이 감소세로 전환됨

|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추이 |

[단위: 백만톤 CO₂eq.]

분야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증감률(%)	
										'90년 대비	전년 대비
에너지	240.3	352.0	411.6	469.4	565.7	600.3	615.6	632.6	611.50	154.5	-3.3
산업공정	20.4	43.1	50.9	54.6	52.9	54.5	56.5	55.8	52.0	154.3	-6.8
농업	21.0	22.8	21.4	20.7	22.1	21.0	21.0	21.1	21.0	-0.03	-0.8
LULUCF	-37.7	-31.3	-59.0	-55.0	-54.8	-45.6	-42.6	-42.1	-39.6	5.0	-6.0
폐기물	10.4	15.8	18.9	16.8	15.4	16.8	17.7	17.5	16.9	62.8	-3.6
총배출량	292.1	433.8	502.7	561.5	656.0	692.6	710.7	727.0	701.4	140.1	-3.5
순배출량	254.4	402.5	443.7	506.5	601.3	647.0	668.2	685.0	661.8	160.1	-3.4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1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22.

- 에너지 부문(전환 부문)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따라 '30년까지 '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4.4% 감축,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에 따라 '50년까지 100%(A안)/92.3%(B안) 감축을 목표로 함
 - 에너지 부문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¹⁷²⁾으로 에너지전환 가속화와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요구됨

17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1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22.; 환경부 보도자료,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비 3.5% 감소, 7억 137만 톤」, 2021.12.29.

172) 박기영, 「탄소중립과 에너지 혁신」, 『미래정책 FOCUS』 Vol.30, 2021.; 이상엽, 「탄소중립의 요체는 에너지 전환」, 『미래정책 FOCUS』 Vol.30., 2021.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과 신·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가 필요함

| 에너지 부문(전환 부문) 2030년 및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

[단위: 백만톤 CO₂eq.]

구분	배출								흡수 및 제거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탈루	흡수원	CCUS	국외 감축	DAC
'18년	269.6	260.5	52.1	98.1	24.7	17.1	-	5.6	-41.3	-	-	-
'30년	149.9	22.6	35.0	61.0	18.0	9.1	7.6	3.9	-26.7	-10.3	-33.5	-
'50년	0	51.1	6.2	2.8	15.4	4.4	0	0.5	-25.3	-55.1	-	-
	A안	20.7	51.1	6.2	9.2	15.4	4.4	9	1.3	-25.3	-84.6	-7.4

주: CCUS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DAC는 직접공기포집(Direct Air Capture)을 의미함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2021.10.18.; 관계부처 합동,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 2021.10.18.

- 문재인 정부는 상향된 2030 NDC 목표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 분야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4대 전략 및 14대 추진과제’)를 담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¹⁷³⁾을 수립함
 - 탈탄소 공급 믹스 전환, 분산 에너지 시스템 확산, 에너지 효율 혁신 등을 통해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함
 - 전력계통망 혁신, 에너지 저장 체계 구축, 전력시장제도 개선,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함
 -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 에너지 신(新)산업 생태계 조성, 투자 활성화 유도 등을 통해 신(新)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통한 에너지 신(新)안보 기반 조성,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글로벌 탄소중립 에너지통상 협력 강화, 에너지 거버넌스 개편 등을 통해 원활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체계를 강화함
- 윤석열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에너지정책 전환을 선정하여 추진 중임¹⁷⁴⁾

2 향후 논의 사항

- 윤석열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인 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새정부 에너지정책

173) 관계부처합동,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2021.12.10.

174) 관계부처합동,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안)」, 2022.07.05.

방향을 수립하여 그동안 추진된 에너지정책 목표를 조정할 계획이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기민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전원구성(에너지 믹스) 재정립에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새정부는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전원구성(에너지 믹스)을 재정립하기 위해, '30년 원자력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정립한다는 계획임

● 석탄발전은 전력수급상황과 전력계통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감축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감안하여 활용할 계획임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기제인 배출권거래제의 개선, 국제감축·자발적 감축시장 활성화, RE100 제도 보완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제도를 선진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임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안)」을 통해 재정립한 전원구성(에너지 믹스)은 '22년 4분기에 수립할 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¹⁷⁵⁾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므로, 관련 업계, 환경단체 등과 협력하여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21년 12월 17일, 제6차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하였음

■ 탄소중립위원회도 '23년 3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 및 부문별·연도별 대책을 담은 계획이므로, 공청회 등 수립 과정을 긴밀히 모니터링하여 계획 수립 전에 각계 의견과 입장을 수렴하여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탄소중립위원회는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따라, 기존의 부문별 2030 NDC 목표 달성 방안과 속도를 수정하여 담은 계획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이승만 ☎ : 02-6788-4595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에너지전환정책관 에너지전환정책과
☎ : 044-203-5122

175)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15년) 계획임

최근 전기 및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영향

1 현황

- 한국전력은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22년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¹⁷⁶⁾를 5원/kWh으로 확정함¹⁷⁷⁾
 - '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발표¹⁷⁸⁾하였으며,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가 '21년 1월부터 도입·적용되었음
 - 전기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조정범위 제한, 미조정 기준, 정부 유보조항 등을 마련함
 - 연료비 하락 효과를 반영하여 '21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3원/kWh 인하한 바 있으며, 이후 '22년 2분기까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을 우려하여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하거나 조정단가를 0원/kWh으로 확정함
 - '22년 7, 8, 9월에 연료비조정단가 5원/kWh이 적용됨에 따라, 4인 가구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전력공사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2년 3분기 한시적으로 복지할인 대상 가구에 할인 한도를 40% 확대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요금 증가폭만큼 할인 한도를 추가로 상향하기로 발표하여, 취약계층 대부분의 전기요금 부담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당 1.11원 인상함¹⁷⁹⁾
 - 그동안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20년 7월 이후 '22년 1분기까지 동결되었음
 - '21년 12월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정산단가를 '22년 5월 1.23원/MJ, 7월 1.90원/MJ, 10월 2.30원/MJ 등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함¹⁸⁰⁾

176) 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분을 매 분기마다 주기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연료비조정단가'(또는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함(2020.12.17.)

177) 한국전력 보도자료,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kWh으로 확정」, 2022.06.27.

17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 2020.12.17.

179)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7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1.11원/MJ 인상」, 2022.06.27.

- 특정 분기에 물가가 집중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급격한 국민 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단가 조정 요인을 연중 분산 반영함
- '22년 2분기부터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가 정상화됨에 따라, '22년 4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 인상하였고, '22년 5월에는 용도별로 8.4~9.4% 인상함
- '22년 6월 26일 기준 국제 유가,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이 전년동월 대비 각각 61%, 141%, 14% 상승함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인상 압력이 커졌음
- 이번 인상으로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7.0%, 영업용1(일반용) 요금은 7.2%, 영업용2(일반용) 요금은 7.7% 상승하여,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2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22년 7월 1일부터 적용) |

[단위: 원, %]

구 분		현행(A) ('22.6월)	조정(B) ('22.7월~)	증감(B-A)	증감률	
민 수 용	주택용	15.8810	16.9910	1.11	7.0	
	일반용	영업용1	15.4890	16.5990	1.11	7.2
		영업용2	14.4873	15.5973	1.11	7.7

주: '영업용1'은 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용장 등, '영업용2'는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7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1.11원/MJ 인상」, 2022.06.27.

2 향후 논의 사항

- '22년 10월 전기 요금에서 2회에 나누어 인상하기로 한 기준연료비 9.8원/kWh 중 나머지 4.9원/kWh을 반영하고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정산단가를 2.3원/MJ으로 적용(0.4원/MJ 인상)키로 예정되어 있어, 서민들의 에너지 지출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련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향후 생산자·소비자 물가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파악·분석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할 방안 마련이 시급함
-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분을 전력 및 도시가스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악화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 및 미수금¹⁸¹⁾ 규모를 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180) 한국가스공사 보도자료, 「가스공,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 분산 조정...국민 부담 고려」, 2021.12.27.

181)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지불한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으로, 실제 LNG 수입단

있음

- 한국전력공사는 '22년 1분기 7.8조 원의 영업손실을 시현하여 비상경영체제를 확대하고, 182) 자산 매각, 사업구조조정, 긴축경영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6조 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1년 말 기준 1.8조 원이었던 민수용 미수금이 '22년 1분기에는 1.5배로 늘어나 4.5조 원으로 증가하여 재무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이승만 ☎ : 02-6788-4595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전력혁신정책관 전력시장과
☎ : 044-203-3913
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
☎ : 044-203-5216

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높은 경우에 발생함

182) 한국전력 보도자료, 「한전, 1분기 7.8조원 영업손실, 비상경영체제 확대!」, 2022.05.13.

중소벤처기업부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 보상 체계 정비

1 현황

- 정부는 2020년 한 차례, 2021년 세 차례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국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함
 - 2020년 9월 제4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조 2,460억 원을 조성하여 251만 1천 개 소상공인을 지원함
 - 2021년 1월 본예산 예비비 3조 5,575억 원에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 원을 더한 4조 575억 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마련하여 301만 1천 개 소상공인을 지원함
 - 2021년 3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조 7천억 원을 편성하여 소기업¹⁸³⁾ 및 소상공인 291만 4천 개를 지원함
 - 2021년 7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4조 2,200억 원을 조성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183만 8천 개를 지원함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기본법」(2020년 2월 제정, 2021년 2월 시행) 제29조¹⁸⁴⁾를 근거로 지원함

18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이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 중에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시행령 [별표 3]에 정한 기준(120억 원, 80억 원, 50억 원, 30억 원, 10억 원 등) 이하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이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는 10명) 미만인 기업을 소상공인으로 분류함

184) 2020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시 제29조에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소상공인법 제12조의2를 삭제함

-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만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됨
- 이에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다수의 법률 개정안과 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재원 마련 방안, 소급 적용 여부 등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됨
- 2021년 7월 소상공인법을 개정하여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제12조의4(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등과 같은 손실보상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됨
 - 법 개정 후 정부는 2021년 9월 이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2021년 10월, 2022년 3월과 6월에 2021년 3분기,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각각 마련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분기별로 손실보상 대상 기업을 다음과 같이 확대함
 - 2021년 3분기: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 2021년 4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 2022년 1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 손실보상 금액은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출함
 - 일평균 손실액 = (2019년 대비 2021년 또는 2022년 같은 달의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으로 계산함
 - 보정률은 2021년 3분기 80%, 2021년 4분기 90%, 2022년 1분기 100%로 확대함
 - 손실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이며, 하한액은 2021년 3분기 10만 원, 4분기 50만 원, 2022년 1분기 100만 원으로 확대함
 - 2022년 2분기(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9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있음

- 정부는 소상공인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는 별도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을 지원함
 - 2021년 12월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하면서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사업체와 2021년 11월과 12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모두 351만 9천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12월 27일부터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함
 - 그리고 2022년 방역 조치 연장에 따른 피해를 추가로 보상하기 위해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2월부터 364만 4천 개 사업체에 300만 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뿐만 아니라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도 지원함
 -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으로 5월 30일부터 348만 개 사업체에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함

2 향후 논의 사항

-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지원 근거와 지원 대상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음
 - 하나는 2021년 7월 개정된 소상공인법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등을 이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이고, 다른 하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를 근거로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에 다양한 이름으로 지급한 지원금임
 -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등의 이름으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 나아가 연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중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함
- 2022년 4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되었고 감염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4월 1일부터 17일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고, 7월 말까지 예정된 손실보전금 지급이 완료되면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지원은 일단락될 것임
- 새로운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여 정부는 방역 조치에 따른 기업 손실보상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함

- 정부가 방역을 위해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완화를 요구하는 정치적, 경제적 압력을 견뎌낼 수 있으려면, 방역 조치로 발생한 기업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해야 함
- 손실보상금과 모두 7차례에 걸쳐 지급한 지원금이 방역 조치로 입은 기업의 피해를 실제로 어느 정도 보상했는지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통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손실보상 대상 기업의 범위, 손실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식 등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 등과 같은 지원금과 소상공인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통합하여, 방역 조치 대상 사업체뿐만 아니라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일정 비율 이상 매출이 감소한 기업도 손실보상제도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인건비, 임차료뿐만 아니라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다른 비용도 포함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 손실보상금 지급 방식을 미국 연방정부가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시행한 급여보장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처럼 대출 후 상환면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중소기업부가 2021년 4분기부터 일정액(분기별 25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하였는데, 사업체별로 인건비, 임차료를 포함한 비용의 분포가 넓으므로 모든 사업체에 일률적으로 정액을 사전 지급하고, 대상 기간이 지난 후에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 정산 하는 방식은 손실이 큰 사업체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급여보장프로그램처럼, 정액이 아닌 인건비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정률의 자금을 대출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정해진 조건에 맞게 사용한 대출금의 상환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손실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 나아가 감염병 확산과 방역 조치로 인한 기업의 손실보상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함

작성 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박충렬 ☎ : 02-6788-4591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 : 044-204-7324

COVID-19 방역 조치로 폐업한 소기업 지원

1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폐업 및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소상공인법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음
 - 재창업 지원
 -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018년 12월 소상공인법 개정 시,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을 신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전국 30개소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총 1,159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이와 함께 희망리턴패키지의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정책자금(사업전환자금)을 대출 지원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중 1,019억 원,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중 점포철거지원금 잔액 141억 원,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중 406억 원 등 모두 1,566억 원의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을 마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조치일인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각 50만 원을 지원함

2 향후 논의 사항

-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소상공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폐업 및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의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임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외에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50만 원에 불과하고 지원 횟수도 1회에 그침
 - 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예산은 1,159억 2,500만 원으로 2019년 1,692억 8,200만 원이나 2021년 1,169억 5,900만 원보다 오히려 감소하였음
- 더구나 최근의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과 같은 매출 감소 소기업에 대한 지원금과 소상공인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지급 당시 영업 중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따라서 방역 조치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건비와 임대료를 비롯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여 폐업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원 대상이 될 기업주와 소상공인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선별해야 하는데, 통계청이 다양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고 있는 ‘기업생멸행정통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2년 4월 18일에 해제되었으므로 방역 조치로 폐업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방식이 적용될 수밖에 없음
 - 대부분 이미 폐업한 상태일 것이므로 사업정리 컨설팅이나 점포철거, 법률 자문보다는 취업 교육, 전직장려수당 지급, 재창업 교육 및 멘토링,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이와 함께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야 하므로, 방역 조치에 따른 매출 감소로 폐업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함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박총렬 ☎ : 02-6788-4591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 : 044-204-7834

배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음식점주 상생협력 촉진

1 현황

-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동향조사」의 음식서비스 거래액을 통해 배달 온라인 플랫폼(이하 ‘배달앱’) 시장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음
 - 통계청은 2017년 1월부터 ‘온라인 주문 후 음식을 조리하여 배달하는 서비스’를 음식서비스로 규정하고, 이를 따로 분리하여 그 거래액을 발표하고 있음
 - 판매매체별/상품군별 거래액 중에서 판매매체 ‘모바일쇼핑’, 상품군 ‘음식서비스’ 거래액을 배달앱을 통한 거래액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따르면 배달앱 시장 규모는 2017년 2조 3,543억 원에서 2021년 24조 9,828억 원으로 증가하여, 4년 동안 10배 이상 성장함
 - 한편 증가율은 2018년 102.7%, 2019년 90.0%, 2020년 81.2%, 2021년 52.0%로 매년 줄어들고 있음

| 온라인쇼핑 음식서비스 거래액 |

[단위: 백만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2,732,573	5,262,777	9,735,363	17,334,238	25,678,337
인터넷쇼핑	378,319	489,773	666,029	900,004	695,527
모바일쇼핑	2,354,254	4,773,004	9,069,334	16,434,234	24,982,810
(전년 대비 증가율)	-	102.7%	90.0%	81.2%	52.0%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kr), 주제별 통계 > 도소매·서비스 > 온라인쇼핑동향조사 > 온라인쇼핑물 판매매체별/상품군별 거래액

- 음식점의 배달앱 이용 현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의 ‘배달앱 및 배달 대행 이용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¹⁸⁵⁾
 -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는 외식업체 비중은 2018년 7.6%, 2019년 11.2%에서 2020년 19.9%, 2021년 29.5%로 크게 증가함

185) 농림축산식품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8년부터 해마다 표본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대면조사를 통해 외식업체의 세부적인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로 발표하고 있는데, 연도별 통계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매출액이 많을수록 배달앱 이용 비중이 높는데, 2021년 기준 월평균 매출액 구간별 배달 앱 이용업체 비중은 5천만 원 미만 9.9%,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22.0%,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36.2%, 5억 원 이상 38.9%로 나타남
- 배달앱을 이용하는 외식업체의 월평균 배달앱 이용 비용은 2018년 24만 7천 원에서 2019년 31만 8천 원, 2020년 36만 원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2021년 27만 2천 원으로 감소함
 - 2021년 기준 월평균 이용 비용 분포를 보면 5만 원 이상 15만 원 미만 41.8%, 15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36.9%, 50만 원 이상 16.0%, 5만 원 미만 5.2% 순으로 나타남
- 배달앱을 운영하는 배달앱 사업자의 수익 원천은 중개수수료, 배달 대행 수수료, 결제 대행 수수료 등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배달앱 사업자마다 조금씩 다름
 - 중개수수료: 월정액 또는 주문금액의 일정 비율
 - 배달 대행 수수료: 건당 정액 또는 주문금액의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음식점주와 소비자가 분담
 - 결제 대행 수수료: 전자결제지급대행 과정에서 2차 PG사인 배달앱 사업자는 음식점주로부터 받은 금액과 1차 PG사에게 지급한 금액 사이의 차액을 수익으로 하는데,¹⁸⁶⁾ 언론보도¹⁸⁷⁾에 따르면, 배달앱의 결제 대행 수수료는 음식점주의 연매출 수준에 따라 1.8%에서 3%로 책정하고 있음
- 배달판매가 주 수입원인 음식점주뿐만 아니라 배달을 병행하는 음식점주에게도 배달앱 이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음
- 따라서 배달앱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고, 늘어난 노동량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정도로 매출이 증가해야만 음식점주와 배달앱 사업자의 상생이 가능한데, 음식점주가 기대할 수 있는 배달앱 서비스 이용에 따른 매출액 증가는 한계가 있음
 - 끼니를 해결하는 방법은 직접 해 먹는 ‘가정식’,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 와서 먹는 ‘포장식’, ‘외식’, ‘급식’, ‘배달식’ 등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배달앱 서비스로 가정식, 외식, 포장식에 대한 수요가 배달식의 수요로 전환되었고, 이로 인해 배달앱 시장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이러한 전환이 한계에 다다르면, 배달앱 서비스 이용에 따른 매출액 증대 효과도 한계에 이르게 될 것임

186) 배달앱 결제구조에서 배달앱 사업자는 2차 PG(Payment Gateway: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사 역할을 하는데, 음식점주는 카드 수수료와 결제망 이용료(PG 수수료)를 배달앱 사업자에 지급하고, 배달앱 사업자는 1차 PG사에 카드 수수료와 PG 수수료를 지급하며, 1차 PG사는 카드회사나 은행에 카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 및 정산 업무가 진행됨

187) 권성훈, 「식당 사장님의 영수증 손글씨 읍소, 그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 『오마이뉴스』, 2022. 4. 11.

- 더구나 배달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주가 많아짐에 따라 이들 사이의 경쟁이 과열된다면, 이 또한 매출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2 향후 논의 사항

- 배달앱 사업자와 음식점주 사이의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배달앱 이용에 따른 비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음식점주들은 이 비용을 정부가 관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이는 배달앱 사업자의 경영 활동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음
 - 음식점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배달앱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적절한 광고료와 수수료의 기준을 정부가 마련하고, 이를 배달앱 사업자에게 권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배달앱 사업자가 음식점주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에 힘쓰도록 유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음식점주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광고료나 판매수수료를 낮춘다면, 배달앱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게 될 것임
 - 소비자의 편익이 확대되는 수익모델의 경우는 그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배달앱 사업자는 음식의 맛과 질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가 제대로 노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해야 함
 -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경우는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정한 사업영역이 배달앱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중거점 등록¹⁸⁸⁾을 조정해야 함
- 음식점주가 매장판매, 포장판매, 배달판매 등 각 판매방식별로 원가나 비용을 정확하게 분석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 분석 결과는 각 판매방식별로 판매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배달앱을 이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감내할 수 있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188) 보통 배달앱에 등록된 업체는 자신이 선택한 거점 반경 3km를 영업지역으로 하는데,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복수의 거점을 등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특정 가맹점이 가맹본부와 합의한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범할 가능성이 있음

-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또는 경쟁업체가 하고 있으므로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 결과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박총렬 ☎ : 02-6788-4591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 044-204-7921

소규모 물류거점(MFC) 현황 파악 및 규제 필요성 점검

1 현황

- 배달앱 사업자는 최근 도시에 소규모 물류거점(MFC, Micro Fulfillment Center)을 마련하여 생필품이나 식료품을 소비자에게 즉시 배송하는 서비스(퀵커머스, Quick Commerce)를 제공하고 있음

 - 소비자가 각 사업자의 배달앱을 통해 생필품이나 신선식품, 가공식품 등을 주문하면 1시간 이내에 배송하는 서비스임
- 퀵커머스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들 배달앱 운영업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중심의 대형유통업체와 중소규모 배달앱 운영업체, 배송전문업체 등도 퀵커머스 사업에 진출하거나 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퀵커머스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는 배송시스템과 MFC나 Dark Store 등으로 불리는 도시에 위치한 거점(이하 MFC로 통칭함)인데, 이곳에서 상품의 적재, 재고 관리, 포장, 출하, 배송 등이 이루어짐
- 퀵커머스는 지리적으로 MFC를 중심으로 일정 반경 내에 있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품을 신속하게 배송하는 서비스이므로, 해당 구역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을 비롯하여 퀵커머스가 취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상권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퀵커머스 시장 확대에 따라 기존 소매점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을 현행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슈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중소상인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음
-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생계형적합업종법') 등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제도를 퀵커머스 서비스업체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먼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개설등록제,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제도를 퀵커머스 서비스업체에도 적용하기는 어려움
 - 개설등록제의 적용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이고 영업시간 제한 대상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이므로, MFC가 매장으로 분류되더라도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해야 관련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음
 - 그런데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MFC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음
 - 그리고 배달앱 사업자가 매장 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를 경영하고 있지 않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운영하는 MFC는 준대규모점포로 분류할 수 없음
 - 퀵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이들이 운영하는 MFC에 대해서도 등록제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MFC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이들에게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충족하는 퀵커머스 서비스 기업과 편의점을 MFC로 활용하여 퀵커머스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할지도 함께 고려해야 함
- MFC를 대상으로 상생협력법에 따른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MFC를 소매점포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는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현행 법령에 대한 해석과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검토를 통해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
 -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퀵커머스 사업에 진출한 대기업이 특정 지역에 MFC를 새로 개설할 때 해당 지역의 중소상인도 자신들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MFC를 대상으로 상생협력법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그런데 MFC는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소비자 배송을 위한 물류거점이기 때문에 슈퍼마켓과 같은 소매점포와는 그 업종이 달라 이들이 MFC를 대상으로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가를 둘러싼 논란이 있음
 - MFC를 개설하는 기업이 대기업이고 MFC가 직영점형 또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으로 운영하는 소매점포에 해당한다면 신설되는 MFC를 대상으로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하지만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MFC를 소매점포로 보지 않으면, 소매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이 MFC를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음
 - 중소기업 측은 비록 오프라인 판매는 하지 않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운 MFC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이 바로 배송되므로 자신들과 상권을 공유하는 소매점포로 봐야 하고, 다른 대기업 체인점포와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 한편, 쿠팡커머스 사업을 상생협력법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나 생계형적합업종법에 따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자단체나 소상공인단체가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현재 쿠팡커머스 사업에는 대기업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라 실제로 신청 주체가 없음

작성 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박종렬 ☎ : 02-6788-4591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 044-204-792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기한 폐지

1 현황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중소기업인력법’) 제35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함
 -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나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차입금, 수익금,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구성함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 성과보상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중소기업인력법 제35조의6에 따라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2014년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고 있고, 2018년부터 6월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고 있음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 12월 중소기업인력법 개정 시 제2조제5호의2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업상 필요하여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로서 채용 시점의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로 정의하고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의 가입 대상에 포함함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규정」(이하 ‘공제규정’) 제2조제6호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장기 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으로 규정함
- 공제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은 해당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인데, 청년근로자는 5년 동안 720만 원(월 12만 원), 중소기업은 1,200만 원(월 20만 원)을 납입하고, 정부는 7회에 걸쳐 모두 1,080만 원을 적립하여 공제에 가입한 청년근로자에게 5년 후 3천만 원의 공제금을 지급함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35,898명의 청년근로자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총 7,798억 1,900만 원의 정부지원금이 적립됨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현황 |

[단위: 명, 백만 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계
가입자 수	36,031	37,358	32,087	30,422	135,898
정부 적립금	41,203	164,046	276,985	297,585	779,81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2022. 6.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하여 2018년 3월 15일에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세부 과제 중의 하나로 시행되었는데, 도입 당시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사업이므로 2021년 말까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신규 가입이 가능하지만 2022년부터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여 2022년까지 2만 명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자금 2,839억 8,400만 원을 2022년 예산에 편성함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90억 원이 감액되어 실제 예산은 2,749억 8,4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2022년 6월 현재까지 모두 20,378명의 청년재직자가 공제에 새로 가입함

2 향후 논의 사항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정부 지원에 힘입어 시행된 지 만 4년 만에 13만 5천 명이 넘는 청년노동자가 공제에 가입함
 - 2014년에 도입하였으나, 정부 적립금이 지원되지 않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2021년 누적 기준 69,627명에 불과함
 - 공제규정 제23조에 따라 내일채움공제 공제부금은 중소기업 기여금과 핵심인력의 공제 납입금을 합산하여 월 최소 34만 원 이상으로 하고, 중소기업의 월 기여금은 핵심인력의 월 공제납입금의 2배 이상으로 함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3만 명 이상의 청년노동자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새로 가입하고 있는 상황과 공제사업의 고용유지 성과를 고려하여 이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공제에 가입한 청년근로자의 6개월 고용유지율은 96%에 달함
 - 더구나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청년의 고용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신규 가입자 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재정만으로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임
-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은 6개월이 아니라 36개월에 전액 적립((1/6개월 각 120만 원, 12/18개월 각 150만 원, 24/30/36개월 각 180만 원)하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36개월이 지난 가입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부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박충렬 ☎ : 02-6788-4591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 : 044-204-7790

중소기업 ESG 경영 촉진 및 확산

1 현황

- 중소기업본부는 2021년 11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등과 함께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준비 민·관 협의회’를 발족하고, ‘중소기업 ESG 촉진 방안’을 발표함
 - 국내외 ESG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공급망 내에서 재생 원료 사용, 노동 조건 개선 등 ESG 참여를 요구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아직 ESG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함
 - 2021년 6월의 실태조사와 7월의 간담회 결과, 중소기업의 ESG 이해력 제고, 중소기업에 적합한 가이드라인 마련, 손에 잡히는 사례 제공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힘
- 촉진 방안으로 ‘중소기업 ESG 인식 제고’, ‘중소기업 ESG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ESG 거버넌스 제공’ 등을 제시함
 - ESG 인식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 꼭 필요하고 실천 가능한 항목을 선별하여 총 23개 지표(환경 10개, 사회 7개, 지배구조 3개, ESG 전반 3개)로 구성된 ‘중소기업 ESG 체크리스트’를 마련함
 -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비대면 스마트 자가진단 시스템(K-doctor)을 통해 자발적으로 ESG 진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진단을 완료하면 자사의 ESG 수준과 분야별 개선과제가 포함된 결과서가 자동으로 발급됨
 -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상생 노력이 중요하므로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ESG 지원을 동반성장지수 가점에 반영하고, 중소기업 ESG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을 ‘자상한기업’으로 추가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임
 - 수출중소기업에는 ESG 관련 해외인증 획득 시 가점 부여, 수출국별 ESG 가이드라인 제공 등 지원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을 위해 전용 자금, 탈탄소 R&D 등을 지원할 계획임
 - 노동자 보호나 복지지원 등 우수 사회적 책임 실천기업에는 컨설팅, 정책자금 금리우대 등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에 투명·윤리경영 지표를 일부 반영할 계획임

- ESG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마련한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인 업계 의견 청취 및 실무협의를 추진할 계획임

2 향후 논의 사항

- 국내외 글로벌기업은 이미 협력기업에 높은 수준의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으며, 금융 및 투자 기관도 ESG 경영평가를 대출과 투자 대상 선정에 활용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수출중소기업, 그리고 금융 및 투자 기관의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음
- 그러나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ESG 경영을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거래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임
- 정부가 2021년 11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ESG 촉진 방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ESG 경영에 관한 중소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음
- 이 방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2년부터 온라인 ESG 평가 서비스인 K-Doctor(<https://kdoctor.kosmes.or.kr>)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는 2022년 3월 동반성장지수 평가체계를 개편하여 대기업의 ESG 상생 노력을 우대하는 ‘ESG 경영 지원’ 지표를 신설함
- 정부가 ESG 촉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ESG 경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021년 8월에 발간한 보고서¹⁸⁹⁾에 제시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ESG로 인해 위험 요인이 발생한 중소기업을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89) 나수미, 「ESG 확산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지원 방향」, 『KOSI 중소기업 포커스』 제21-14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1. 8. 9.

- 수출이나 대기업에의 납품, M&A 등과 관련하여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ESG 경영 리포트를 요구받은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 지원 창구를 마련하여 ESG 경영 실사 및 진단부터 리포트 작성까지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ESG 평가를 근거로 공급망에서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신고와 구제를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정책자금 지원 대상 중소기업 선정 시 ESG 경영 성과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과 전용 펀드를 조성하여 개별 중소기업의 ESG 성과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개별 중소기업은 ESG 특정 영역의 측정 가능한 구체적 목표와 추진 방안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담당 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정책자금을 선별 지원하고 사후 관리에 힘써야 함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박종렬 ☎ : 02-6788-4591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산업전략팀
☎ : 044-204-7680

소상공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1 현황

- 제20대 국회는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이들에게 특화된 기본법으로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함
 -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함
- 이 법 제24조(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제1항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제2항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30조에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이전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던 소상공인법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었음
- 이처럼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정부는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현재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에 따라 월평균보수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3년 동안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고 있고,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1인 소상공인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들의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도 없음

2 향후 논의 사항

- 소상공인을 위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소규모 기업 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사업주와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012년부터 운영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참고할 수 있음
 - 노동자의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노동자가 분담하여 납부하는데,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 부담금과 노동자 기여금 일부를 지원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정부는 고용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의 노동자 중에서 월평균보수가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의 기여금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사업주의 부담금도 지원하고 있음
 -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월평균보수 기준은 2012년 125만 원에서 2015년 140만 원으로 해마다 5만 원씩 증가하다가, 2018년 190만 원, 2019년 210만 원으로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2020년에는 215만 원, 2021년부터는 220만 원으로 증가함
 - 정부 지원 비율도 2012년 50%에서 2016년 60%로 확대하고, 2018년부터는 80%(노동자 수 5인 미만 90%)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함
 - 2021년부터 정부 지원 비율은 80%로 통일됨
 -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 비율은 2016년 50%에서 40%로 축소하고, 2020년에는 다시 30% 줄인 이후 2021년부터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 입자만 지원하고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폐지함
-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확대하여 월평균 소득이 2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자신들을 위해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80%)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또는 저소득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지원 받는 노동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저소득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의 타당성은 높다고 할 수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박충렬 ☎ : 02-6788-4591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 044-204-7820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1 현황

-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의 고용보험료를 노동자와 분담하여 납부함
- 2005년 이전까지는 사업주를 포함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2005년 12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시 자영업자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였음
 - 그런데 당시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혜택은 받을 수 없었고, 정부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만 받을 수 있었음
-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1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음
 - 이와 함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 정함
 - 그리고 2019년 6월 이 법 시행령 제56조의5를 개정하여 고용보험 가입가능기간(개업일부터 5년 이내)을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함
- 이처럼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수는 2015년 말 16,404명에 불과하였음
-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 1월 소상공인법 개정 시 제12조의3과 제21조제1항제17의2호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지원 수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로 정하도록 함
 - 2021년 7월 법 개정 시 손실보상 관련 조항을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6에 신설하면서 고용보험료 지원 조항을 제12조의7로 옮김

- 2016년 7월 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4(현재는 제4조의14)를 신설하여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을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소상공인’, 즉 1인 소상공인으로 한정함
- 그리고 2017년 12월 제정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 2018년 1월부터 기준보수(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보수)가 1등급(182만원)인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30%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음
 - 같은 해 9월부터는 기준보수가 2등급(208만 원)인 1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 규모도 50%로 확대함
 - 2019년부터는 기준보수가 3등급(234만 원)과 4등급(260만 원)인 1인 소상공인에게도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지원 기간은 모든 경우 최대 3년으로 한정함
 - 2021년에 지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고시 제5조(고용보험료 지원수준) 제2항에 최대 3년간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으면 보험료 지원 비율, 기준보수 등급 및 지원 기간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제3항을 근거로 5년으로 연장함

2 향후 논의 사항

-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현재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고, 이들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함
-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6,000명 수준에 정체되어 있었던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수는 2018년 18,265명, 2019년 22,529명, 2020년 30,629명, 2021년 36,859명, 2022년 4월 현재 38,455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 수에 비하면, 이들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임

- 2022년 4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28,185명에 불과한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431만 6천 명에 달함¹⁹⁰⁾
-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함
 - 1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더라도 기준보수 4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
 - 기준보수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
 -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
- 이와 함께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지원 대상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하여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28,185명(2022년 4월 기준) 중에서 13,961명(2022년 5월 기준)만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음

작성 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박충렬 ☎ : 02-6788-4591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 044-204-7820

190) 고용보험 가입 1인 소상공인 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확인하였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통계청 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자료임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1 현황

- 2015년 1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명을 소상공인법으로 변경하고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맞게 정비하였는데, 제2조에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함

 - 이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이외 업종은 5명 미만으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를 정함
- 2020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소상공인의 범위 기준에 관한 규정을 이 법 제2조에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은 소상공인법과 같지만, 같은 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 졸업유예제도를 도입함

 -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보는데,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소상공인법 시행령과 같은 내용으로 업종별 소상공인 범위 기준을 규정함
- 이처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평균매출액 기준과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소상공인으로 분류됨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평균매출액 기준은 소상공인이 아니라 소기업 범위를 규정하는 기준인데, 소상공인에 포함되려면 이 평균매출액 기준을 일단 충족해야 하고 소상공인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기준도 충족해야 함
- 2015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기업 범위 기준을 상시 근로자 수에서 연평균매출액으로 바꾸는 것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때, 소상공인 범위 기준도 상시 근로자 수가 아니라 연평균매출액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으로 계속 남기 위해 성장을 피하려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범위 기준을 매출액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와 함께 전문직 고소득자, 고소득 임대업자 등을 소상공인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함
- 하지만 이와 관련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됨

2 향후 논의 사항

-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범위 기준을 연평균매출액으로 개편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기업이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 소기업에서 중기업, 중기업에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야 하는데, 기업 범위 기준을 상시 근로자 수로 하면 기업은 이를 조정하여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고자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음
- 소상공인도 매출액 증가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동자를 더 고용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소상공인으로 남아 있기 위해 임시직을 이용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조정하거나 더 이상의 성장을 꾀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리고 매출액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매출액이 소기업 범위 기준을 넘어서지 않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나 10인 미만을 유지하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소상공인 범위 기준도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범위 기준처럼 업종별 연평균매출액으로 개편하여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수를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제21대 국회에서 소상공인 범위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000)이 발의되어 계류되어 있음
- 소상공인 범위 기준을 상시 근로자 수에서 연평균매출액으로 개편하면 소상공인 수는 업종별 연평균매출액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연평균매출액으로 개편할 때 업종별 연평균매출액 기준은 개편 전 중소기업 비중을 유지하도록 설정한 전례를 참고할 수

있음

- 중소기업부는 소기업 범위 기준의 업종 분류와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의 소상공인 비중과 매출액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소상공인의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¹⁹¹⁾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박총렬 ☎ : 02-6788-4591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 044-204-7820

191) 한편 업종별 적정 연평균매출액 기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남윤형, 「소상공인 개념 및 범위기준 검토」, 2015. 11.)를 참고할 수 있음

제2벤처 붐 지속을 위한 엔젤투자 활성화

1 현황

- 정부는 2019년 3월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벤처 붐 확산전략 보고회’에서 벤처투자 확대(목표: 신규투자액 5조 원 달성)를 천명하고 동년 범정부 차원에서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을 수립·시행한 이래 벤처투자의 절대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입법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들 수 있음
 - 2020년 2월 11일 제정되어 2020년 8월 12일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2장(제8조~제11조)에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즉 엔젤투자(angel investments)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창업초기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투자형태로 제공하는 엔젤투자는 이들 기업의 생존에 있어 절대적인 자금줄 역할을 함
 - 또한 기업가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금 제공뿐만 아니라 기업 성장에 관심을 갖고 컨설팅을 제공해 초기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도 함

| 벤처·창업 성장단계별 자금 공급원 |

구 분	매출/이익 발생	자금 공급원
발아 단계 (seed stage)	x/x	창업자 자금, 가족·친구·동료, 정부출연금
신생기업 단계 (start-up)	x/x	창업자 자금, 가족·친구·동료, 정부출연금, 엔젤투자, 벤처캐피탈
성장초기 단계 (early-growth)	o/x	엔젤투자, 벤처캐피탈
확장 단계 (expansion)	o/o	벤처캐피탈, 프라이빗 에쿼티, 메자닌펀드, 연기금 등

자료: 박용린, 「벤처생태계 현황과 발전방안」, 『과학기술정책』 제23권 제2호, 2013.

2 향후 논의 사항

- 현재 피투자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매칭투자금액은 총 6억 원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는데(근거: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영지침」 제15조¹⁹²⁾), 점차 초기 벤처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그러나 엔젤투자매칭펀드의 운영 목적은 완전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시드머니(seed money)를 제공한다는 데 있으므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검토 후 제도설계가 필요함
 - 엔젤투자매칭펀드 지원 확대는 초기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들(TIPS,¹⁹³⁾ 모태펀드 등)과의 형평성,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 집중으로 인한 국가예산의 쓸림현상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또한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보다는 후속투자를 받아 기업의 규모를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정부지원이 더 요구된다는 현장의 의견도 있음
- 한편 엔젤투자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엔젤투자지원센터에서는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영규정」 및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영지침」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¹⁹⁴⁾ 벤처투자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투자자의 편의를 돕고 엔젤투자 활성화를 제고해야 할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박재영 ☎ : 02-6788-4598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 : 044-204-7721

192)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영지침」 제15조(매칭투자금액 및 투자한도) ①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매칭투자금액은 총 6억원 이내로 한다.

193) TIPS(Tech Incubator Program of Startup)는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주도로 선발하여 미래유망 창업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민간투자주도형 프로그램임

194) 엔젤투자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임

신산업 구독경제 활성화

1 현황

- 상거래시장에서 전통적인 소비의 형태는 구매(buying)를 통한 소유(ownership)가 일반적(이를 ‘소유경제’라고 함)이었으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협력적인 소비, 즉 공유(sharing) 방식의 경제(이를 ‘공유경제’라고 함)가 확산된 바 있음¹⁹⁵⁾
-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일정기간 대가를 지불하고 상품을 이용(use) 또는 경험(experience)하는 소비구조로의 변화인 구독경제(購讀經濟)가 주목받고 있음
 - 또한 실리적인 소비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증가와 비대면 방식을 권장하는 사회분위기도 구독(subscription) 방식의 소비와 서비스를 보편화 시키는 요인이 됨

| 상거래시장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



자료: 조사관 작성

- 신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구독경제 서비스의 전체 시장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구독경제 서비스의 한 유형인 ‘차량 렌탈 및 개인·가정용품 렌탈 마켓’의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¹⁹⁶⁾
 - 차량렌탈 시장은 2015년 10조 8,000억 원 규모에서 2020년에는 17조 6,000억 원 수준으로 약 1.6배 성장함
 - 개인 및 가정용품 렌탈시장은 동기간 5조 1,000억 원에서 10조 7,000억 원으로 연평균 16%의 성장세를 보임
- 한편 구독경제는 유통·소비재산업, 미디어·콘텐츠·게임산업, 모빌리티 산업, 헬스케어산업 등 여러 분야로 활발히 확대되고 있음

195) 대표적인 공유경제 사례로는 우버(Uber)와 같은 공유차량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로 대표되는 공유숙박 서비스, 국내 대표적인 벤처기업인 위콕(Wecook)이 제공하는 공유주방 서비스 등을 들 수 있음

196) 삼정KPMG, 「디지털 구독경제 트렌드와 비즈니스 기회」, 『삼정 인사이트』 Vol 75, 2021., p.29.

2 향후 논의 사항

- 구독경제 시장이 확대되면서 일정 금액을 지불한 구독자(고객)는 개인의 취향과 요구가 반영된 맞춤형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며, 이에 데이터 기반 ICT기술이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다¹⁹⁷⁾
 - 특히 대량의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라인 플랫폼 방식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중개사업자)는 더욱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큼
 - 이에 우월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에 관한 공정한 거래조건을 지키도록 강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의 개정(2021년 8월)¹⁹⁸⁾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IPTV, OTT¹⁹⁹⁾, 종합편성채널, 1인 미디어, 유튜브로 대표되는 MCN²⁰⁰⁾ 등의 도입은 방송 형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구독형태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기존 방송 관련 법체계의 개편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구독경제 제공자 및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제20대 국회에서는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으로 분산된 방송 관련법을 통합하여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²⁰¹⁾되었으나 임기만으로 폐기되었음
 - 이 안에서는 구독서비스 제공자인 방송사업자의 정의 등을 새롭게 규정하여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였음(안 제2조제6호)²⁰²⁾
 - 구독경제 시장이 급성장하는 지금, 신산업 및 신서비스의 부상으로 구독경제 제공자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그 범위와 정의를 관련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에 규정함으로써 구독경제 서비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197) 장미, 「2021년 우리 삶을 바꿀 10대 기술 ⑧구독경제 서비스」, 조선일보, 2020년 1월 28일자.

198)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결제대행업체가 하위가맹점에게 신용카드회원 등의 거래 조건(거래내용, 금액, 결제일정 등)을 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힘

199) OTT(Over The Top): 온라인 스트리밍 방송을 뜻함

200) MCN(Multi Channel Network): 전문성과 입담을 지닌 1인 창작자들의 동영상 제작·유통·수익화 등을 도와주고 광고 수익을 나누어 갖는 기업이나 서비스를 이르는 용어로서 여러 개의 동영상 채널을 묶어 활동하기 때문에 멀티채널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라 불림

201) 2019년 7월 29일 김성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21707)

202) 그러나 유튜브, 아프리카 TV와 같은 MCN사업자에 대해서는 미적용하여 한계로 지적되었음

- 기존 구독경제 서비스의 주요 분야가 소상공인의 주요 제품군과 유사해 이들의 참여가 늦어질 경우 거대 ICT기업을 중심으로 구독경제 서비스가 정착돼 소상공인이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므로 소상공인이 구독경제 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박재영 ☎ : 02-6788-4598

관련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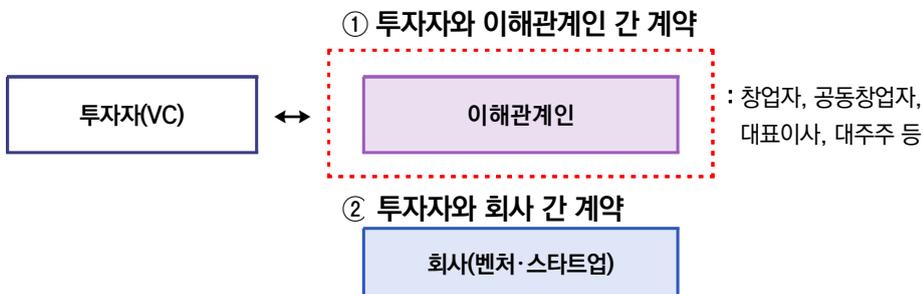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경제추진단
☎ : 044-204-7281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 : 044-200-4471

벤처기업 대표자-공동창업자 간 분쟁 방지

1 현황

- 벤처기업이 기업성장을 위해 벤처캐피탈(VC)로 대표되는 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를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계약이 존재할 수 있음
 - 첫째, 투자자와 이해관계인 간 계약
 - 이 경우 투자자는 주주(shareholder)인 이해관계인(stakeholder)과 주주 간 합의서(Share Holder's Agreement, SHA)를 작성함
 - 이때 이해관계인이란 기업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이나 기업을 말하는데, 투자를 한 주주, 자본을 대출해준 채권자, 공동창업자, 노동자 등이 이에 해당하지만 투자계약에 서는 주식 보유를 통해 의결권이 있는 대주주로 좁혀서 보기도 함
 - 둘째, 투자자와 벤처기업 간 계약
 - 이 경우 투자 유형에 따라 주식인수계약서(Share Purchase Agreement, SPA) 또는 사채인수계약서를 작성함

| 투자계약의 일반적인 구조 |



자료: 조사관 작성

2 향후 논의 사항

- 투자자인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에 대해 투자할 때 벤처기업 창업주(또는 대표자) 외 공동창업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려는 경향이 있음
 - 이는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이 많아졌을 경우 이해관계인 간 이해관계(interest) 충돌 우려와 주주의 이익 우선보다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중심을 둘 우려가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이유로 공동창업자(co-founder)는 대표자 1인만 주주로 등재하기로 합의하고, 엑시트(exit)²⁰³ 이후 수익을 분배받는 경우가 있음
 - 그러나 수익분배에 대해 명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대표자-공동창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함
- 벤처기업 공동창업 시 상기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표자-공동창업자 간 ‘동업계약서(partnership agreement)’ 작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현금, 부동산, 지식재산권·영업권과 같은 권리를 출자(出資)한 공동창업자가 전략적으로 주주 등재를 하지 않고 대표자 1인에게 지분을 명의신탁(trust of name)했을지라도, 엑시트 시 합당한 수익분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동업계약서는 인간적인 믿음이 아닌 제도적 신뢰를 의미하므로 수익분배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
 - 이때 동업계약서에는 출자 조항, 출자에 따른 지분율, 명의신탁자(공동창업자)와 명의수탁자(대표자)의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엑시트 시 지분권 행사 및 수익분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할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박재영 ☎ : 02-6788-4598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 : 044-204-7713

203) 벤처·스타트업이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을 돌려 주거나 창업자가 사업에 대한 성과를 거두는 과정을 말함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

1 현황

-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지분희석(equity dilution)의 우려 없이 투자자본을 조달하고 창업주는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수의결권주식(Multiple Voting Shares)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복수의결권주식은 주(株)당 의결권의 수(數)가 복수로 부여되는 주식을 말함
 - 그러나 「상법」 제369조204)에서 ‘1주 1의결권’이라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상법」 또는 특별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의 개정이 필요함
- 제21대 국회에서는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총 5건의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으나 대안반영 폐기 후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 제출된 상태임

|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제안한 개정법률안 현황 |

	법률안명	대표발의자	제안일	처리결과
1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 의원	2020.6.5.	대안반영폐기
2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영 의원	2020.8.20.	대안반영폐기
3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0.12.23.	대안반영폐기
4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2021.05.26	대안반영폐기
5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의원	2021.11.18.	대안반영폐기
6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1.12.2.	대안

204) 「상법」제369조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2 향후 논의 사항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대안)은 혁신을 추구하는 벤처기업의 성장 견인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함²⁰⁵⁾
 - 첫째,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주체를 벤처기업으로 특정하여 정책대상을 명확히 해야 함
 - 이를 통해 대기업중심 경제에서 벤처·스타트업 중심의 역동성있고 혁신적인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함
 - 둘째,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한도는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함
 - 주당 의결권의 수가 상한 없이 허용될 경우 기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셋째, 보통주식-복수의결권주식의 차등 상장 가능성도 검토가 필요함
 - 보통주식과 복수의결권주식을 모두 발행한 벤처기업이 상장 시, 복수의결권주식은 상장 직후 보통주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 반면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술개발 업종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의 상장뿐만 아니라 보통주식으로의 전환 제한을 생각해볼 수 있음
 - 넷째,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요건(일몰)을 엄격히 해야 함
 -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전환요건을 적용해야 할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박재영 ☎ : 02-6788-4598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 044-204-7706

205) 박재영, 「벤처기업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 쟁점과 과제는? ③주요쟁점별 입법·정책방안 제언2」, 『NARS 현안분석』제 195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4.16.

특허청

인공지능(AI) 진보에 대응한 지식재산권 확립

1 현황

- 2016년 알파고(AlphaGo)의 등장으로 인공지능(AI)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일어났고, 산업분야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공장,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혁신기술에 적용 중임
 - 또한 교육서비스, 쇼핑, 헬스케어, 인터넷 포털과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용되기 시작함
- 인공지능과 관련된 우리 법률은 모두 ‘지능(知能, intellig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이 법률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발전, 보급을 위해서 해야 할 일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 여기에서 ‘지능형 로봇’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perception)하고 상황을 판단(cognition)하여 자율적으로 동작(manipulation)하는 기계장치’²⁰⁶⁾로 일반적인 ‘산업용 로봇’과는 구별됨
 -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기능은 곧 인공지능에 기초한 기능으로 이를 로봇과 결합해 개발·보급을 장려하는 것이 이 법률의 목적임
 - 「지능정보화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이 법률은 지능정보기술(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을 활용해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지능정보기술²⁰⁷⁾’이란 전자적 방법(electronic method)으로 학습, 추론, 판단 등을 구

206)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207)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4호 각 목

현하는 기술로 넓은 의미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과 저작권(Copyright)으로 구분하는데,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저작권은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등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함
-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 종래 지식재산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새롭게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신(新)지식재산²⁰⁸⁾이라 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DB와 같은 산업저작권,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와 같은 첨단산업저작권, 영업비밀(Trade Secrets), 지리적 표시 등이 여기에 속함

| 지식재산권의 범위와 종류 |



자료: 박재영, 「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감정)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제238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12.31.

2 향후 논의 사항

-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을 창작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에 대해 「특허법」, 「실용신안법」,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현재 세계 각국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우리도 이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시급함
-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한 입법 추진이 필요함
 - 첫째, 인공지능을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로 볼 수 있는가?
 - 「제조물 책임법」에서 정의한 ‘제조물(product)²⁰⁹⁾’은 ‘동산(動産, movables)’만을 의미

208) 「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2호는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신지식재산”으로 정의함

209) 「제조물 책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하나 소프트웨어인 인공지능을 동산으로 볼 것인지는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공론화된 논의가 필요함

- 둘째, 인공지능은 발명(invent) 또는 창작(creation)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주체성)
 - 인공지능을 「특허법」상의 발명행위, 「저작권법」상의 창작행위의 주체로서 인정할 것인가는 그동안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여겼던 발명·창작행위의 주체를 인공지능으로까지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임
 - 따라서 인공지능이 사실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함
- 셋째,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에 「저작권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객체성)
 - 현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주체(저작자)를 오직 인간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저작자가 될 수 없음
 - 그러나 기술의 진보로 최근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인간에 의한 것과 비교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문화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이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범위의 사각지대에 두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함²¹⁰⁾

작성 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박재영 ☎ : 02-6788-4598

관련부처

특허청 특허제도과
☎ : 044-481-5736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 044-203-2476

210) 계승균,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지식재산연구총서17, 세창출판사, 2020, p.82.



제2부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음
(2022년 6월 현재)

상임위원회	정부부처	피감기관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150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미채택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미채택
		한국전력공사	4		
		한국수력원자력	9		
		발전5개사	12		
		한국가스공사	19		
		한국석유공사	10		
		한국지역난방공사	2		
		한국광물자원공사	8		
		대한석탄공사	5		
		한국전력기술	-		
		한전KPS	-		
		한국가스기술공사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5		
		한국무역보험공사	1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		
		한국산업단지공단	21		
		한국디자인진흥원	-		
		한국세라믹기술원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8		
		한국전기안전공사	3		
		한국가스안전공사	6		
		한국에너지공단	6		
		한국광해관리공단	1		
		한국전력거래소	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5		
한국석유관리원	3				

상임위원회	정부부처	피감기관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랜드	6		
		전략물자관리원	1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전KDN	-		
		한전원자력연료	3		
		기초전력연구원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한국에너지재단	1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		
		특허청	특허청	20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한국발명진흥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12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3		
		기술보증기금	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		
		공영홈쇼핑	14		
		중소기업유통센터	6		
		창업진흥원	6		
		중소기업연구원	6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		
		한국벤처투자	5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		
		한국산학연합회(신규지정)	1		
		계 (건수)		589	-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V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제1부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

제2부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제1부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육성

1 현황

- 2021년 기준 국내 103만 1천 농가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7.2세임²¹¹⁾
 - 경영주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가 42.7%(44.1만 가구), 60대인 경우가 34.6%(35.7만 가구)로 높게 나타나며, 40세 미만인 경우는 0.8%(8,477 가구)에 불과한 실정임
 - 2011년 대비 2021년 전체 농가 수의 감소 비율이 11.2%(116.3만 가구 → 103.1만 가구)인데 비하여, 같은 기간 40세 미만 농가는 매우 급격히 감소(22,277가구 → 8,477가구로 61.9% 감소)한 상황임
- 정부는 이런 상황에 위기감을 느끼고 2017.12.부터 청년 창업농 육성 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정책사업(현재 '농촌정착지원' 사업)을 펼쳐오고 있음
 -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예비농 포함)²¹²⁾의 영농창업 초기 경영 안정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농지·창업자금·기술교육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이 골자임
 - 최장 6년의 의무 영농이나 지원금 성실 사용 등 의무사항의 준수를 전제로 독립경영 1년 차에게는 월 100만 원, 2년차 월 90만 원, 3년차 월 80만 원이 지급되며, 창업예정자의 경우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이 지급됨
 - 물론 지원 초기에는 농촌 실정과 다소 맞지 않는 지원금 용도 제한 규정이나, 혹은 반대로 지원금의 부정 사용 문제 등이 자주 지적되기도 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규정 변경 및 사업관리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상황이 꾸준히 개선되어온 것으로 보임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600명의 인력을 선발하여 지원해오다 2021년(1,800명)과 2022년(2,000명)에는 지원인력을 늘린 결과, 2022년 6월 현재 누적 지원인력이 총 8,600명

211) 통계청 보도자료, 「202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22.4.12., p.9.

212) 청년농업인의 연령 요건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40세 미만'임

에 이르고 있음²¹³⁾

- 지원대상자 중 창업예정자의 비율이 2018년 42.5%(680명)에서 2020년 65.6%(1,051명), 2021년 67.6%(1,216명)로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매년 1,300~1,400명 내외의 독립 영농창업 인원(비승계농)도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음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71번.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에도 ‘청년농업인 육성’이 포함되어 있음

- 예비 청년농의 창업장려 및 창업초기 정착 지원 강화, 후계농 자금상환 완화 및 상속세 공제 상향, 청년농 전용펀드 조성 확대, ‘농지 선임대 후매도’ 방식 도입 등으로 맞춤형 농지 지원 강화, ‘청년농촌보급자리(임대주택)’ 확대 조성 등이 주요 내용임
- 이를 통해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 명을 육성하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임

■ 다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 교육·훈련 정책, 주거 정책, 복지·생활 안정 정책 등을 모두 아우르는 사업 성격상 아직 성과보다는 투입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경향이 있고, 다수의 설문과 연구에서 청년농업인의 핵심적인 애로사항으로 제시하는 농지 지원과 관련된 실질적 개선책 마련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2 향후 논의 사항

■ 선발된 인원뿐만 아니라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였으나 선발되지 못한 청년과 미신청 청년들도 지원·육성할 수 있는 종류의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농업인의 ‘풀(pool)’을 넓게 봐야 함
 - 특정 정책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청년도 미래 영농담당 인력이 될 수 있으며, 당장 농업 창업(창농)의 위험을 부담하기는 조심스러워 귀촌이나 농업법인 등의 실무 취업 등을 시작으로 농업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로도 현실에는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임
- 예를 들어 농지·빈집 등의 거래 지원이나 농장 실습 기회 제공, 판로개척 지원 등 농업 부문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의향이 있는 다수 ‘청년’에게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종류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구비될 필요가 있음

■ 농촌정착지원 사업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지원금이 종료되는 인력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바, 이들의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영농종사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213) 농림축산식품부, 『202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2022.5., p.427.

-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등의 연구·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임
- 이들 인력의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 제고나 기존 청년농과 신규 청년농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등도 과제가 될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김규호 ☎ : 02-6788-4593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 044-201-1533

쌀 수급 안정

1 현황

-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으로 산지 쌀값 하락, 비축 및 관리 비용 증가, 농업소득의 정체 등 다양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음
 - 쌀 소비량이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2021년 쌀 생산량은 6년 만에 전년에 비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로서는 쌀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임
 - 2021년 쌀 생산량은 388.2만 톤으로 전년(350.7만 톤) 대비 10.7%가 증가하였으나, 2021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9kg으로 전년(57.7kg) 대비 1.4%가 감소함
 - 일례로 올해 쌀 가격은 1월 이후 계속 하락 중이며, 전년 동월 대비 하락폭 또한 매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월평균 쌀값 추이(도매 20kg,上品 기준)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21년	56,548원	57,430원	58,051원	58,523원	58,706원	58,889원
2022년	52,378원	52,231원	51,996원	50,426원	48,821원	48,098원
전년 동월 대비 하락폭	△7.4%	△9.1%	△10.4%	△13.8%	△16.8%	△18.3%

자료: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정보(KAMIS) 게시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이에 정부는 쌀 시장격리, 벼 재배면적 조정 및 작물 전환, 쌀 가공산업 활성화 등의 대책 이행을 통해 쌀 수급 안정에 힘쓰고 있음
 - 2020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공익직불제)’의 시행과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2020.1.29.)으로 함께 도입된 쌀 시장격리제(쌀 수급안정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됨
 - 1차 시장격리(2월)를 통해 14.4만 톤을, 2차 시장격리(5월)를 통해 12.6만 톤을 매입하였으며, 7월 말 현재 10만 톤 규모의 3차 시장격리가 진행 중인 상황임
 - 또한 농정당국은 2021년 73.2만ha에 달했던 벼 재배면적을 2022년에는 70만ha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지자체별 감축목표 설정 및 달성 추진, ‘감축협약’ 농업경영체(농가, 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독려 등에 나서고 있음²¹⁴⁾

214) 나명옥,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벼 재배면적 전년비 3만2천ha 줄인다」, 『식품저널』, 2022.4.8.

- 최근(2022.6.8.) 발표한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도 ‘밀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쌀 수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정부 입장임²¹⁵⁾
 -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대책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72번)인 ‘식량주권 확보’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주식용 쌀을 대체할 수 있는 가공용 쌀 생산·공급의 확대 및 쌀 가공산업 활성화와 소비 기반 확대 등을 위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그러나 시장격리 시행과 예고 후에도 쌀값 하락세가 진정되지 않는 등 아직 가시화된 정책효과가 드물고, 과거에도 벼 재배면적 조정²¹⁶⁾이나 쌀 가공산업 육성²¹⁷⁾ 등의 정책이 도입 초반 이후 존재감이 희미해진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임

2 향후 논의 사항

-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주식인 ‘쌀’의 수급 안정이 갖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적극 홍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임
-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주요 방법론의 하나로 쌀의 대량 소비처인 식품제조업 부문에서 ‘쌀가루’가 갖는 산업적 잠재력에 착안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생산-유통-가공 및 R&D 등을 아우르는 관련 산업 생태계의 구축이 관건인 만큼 가치사슬(value chain)에 위치한 각 주체의 정책 수요를 광범위하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지원해야 할 것임
 - 가령 ‘분질미’를 활용해 쌀가루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가공적성이 제빵이나 제면, 제과 등에 적합한지는 별개의 문제로, 처음부터 비용과 품질 두 측면에서의 업체 수요와 전략을 모두 감안한 ‘고품질’ 쌀가루 생산 기반의 조성을 염두에 뒀야 할 것임
 - 농가·재배단지과 식품업체의 계약재배 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생산은 물론 유통 및 저장 단계의 일관되고 차별화된 관리를 위하여 일선 RPC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수반되어야 할 것임

215)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분질 쌀가루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로 ‘식량안보 강화, 쌀 수급균형 달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2022.6.8.

216) 예컨대 2003 ~ 2005년(쌀 생산조정제), 2011 ~ 2013년(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2018 ~ 2020년(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등 2000년대 들어 세 번에 걸쳐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음

217) 예컨대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2015.9.)이 쌀 관세화 이후의 대책 중 하나로 수립·추진된 바 있음

- 휴경과 전작을 비롯해 ‘탄소중립’ 기여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확대로 논농사 기반은 유지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전체 쌀 생산량을 조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김규호 ☎ : 02-6788-4593**관련부처**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 044-201-1822

밀과 콩의 재배 확대

1 현황

- 정부는 2021.9.16.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식량계획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밀과 콩의 자급률(2019년 기준 각각 0.7%, 26.7%)을 2025년까지 5.0%(밀), 33.0%(콩)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힘
 - 이를 위해 쌀뿐만 아니라 밀과 콩의 국내 비축도 확대하고자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밀의 경우 2020년 기준 3천 톤인 비축물량을 2022년에 1만 4천 톤으로 늘리고, 콩은 2020년 기준 1만 7천 톤인 비축물량을 2022년에 2만 5천 톤으로 늘릴 계획임
 - 또한 밀·콩 생산단지의 조성·확대 및 수요처 발굴을 통한 안정적인 국내 공급 기반 확보도 주요 추진 전략인데, 2022년 정책사업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밀 전문 생산단지 조성('21년 39개소 → '22년 51개소), 수확기 건조·저장을 위한 시설 지원('21년 2개소 → '22년 4개소), 정부보급종 종자 50% 할인공급('21년 1,300톤 → '22년 1,900톤 예정)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생산 기반을 조성함
 - 또한 국산 밀 가격 안정과 수요 확대를 위해 정부 구매('21년 8천 톤 → '22년 17천 톤 예정) 및 제분·가공지원('22년 신규 16억 원) 등도 추진하고 있음
 - 콩의 경우 올해부터 기존 배수개선 사업(배수장·배수문 설치, 용·배수로 정비 등)에 논콩 전문생산단지를 신규로 포함하고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55원/kg)사업도 추진하는 등 주로 '논콩'을 중심으로 재배면적 확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72번)에서도 밀과 콩은 주요 품목으로 다뤄지고 있음
 - '식량주권 확보' 차원에서 밀·콩 전문 생산단지 및 전용 비축 시설 확보 계획이 포함됨
 - 나아가 '농업직불금 확대'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전략작물직불제 신설 계획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전략작물'에는 밀, 콩, 분질미(粉質米)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밀과 콩 생산을 정책적으로 늘리려 한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다가도 이내 후퇴한 경험이 있기에 정책적 일관성과 인센티브 부여 등 향후 추가적인 지원책 도입이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 가령 2011년에 「주요곡물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밀, 콩, 옥수수, 잡곡 등 국내 주요 곡물자급률의 확대 목표(2015년까지 14.3%)를 제시한 바 있음

- 당시 1.7% 정도이던 밀 자급률을 2015년까지 10%대로 높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종자 개발, 저장시설 확충 등의 정책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남
- 「국산콩 적정 생산 대책」(2012년)과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2018~2020년) 등 콩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도 몇 차례 실시되어왔고 그 성과 또한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애초 정책 도입 당시의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남

2 향후 논의 사항

-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²¹⁸⁾을 밀과 콩의 재배 확대를 위한 주요 지원 근거로 삼아야 할 것임
 -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5.8%, 곡물자급률(사료 포함)은 20.2%로 외부 변동에 취약한 구조인 만큼, 쌀 이외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제고하여 리스크 요인을 최대한 내부화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인 성과(지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규모화·조직화된 산지와 식품기업 간 다양한 계약재배 사례의 확산 등 추후 국제 곡물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난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단단하게 유지될 수 있는 국내적 가치사슬 구축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아직 밀이나 콩의 재배 기술이 쌀에 비하여 일선 농가에 충분히 보급되지 못했고, 두 작물의 소득작물로서의 지위 또한 확고하지 않은 상황²¹⁸⁾이므로 다년간 정책적 의지와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현장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임
- 밀과 콩은 사료 외에 식품 원료로도 자주 쓰이는 품목으로서 이 경우 생산 및 생산 준비 단계에서부터 가공적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재배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구분 생산·유통 등의 질적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임
 - 품종의 개발·보급 단계에서부터 생산 및 대량 소비 주체가 최종재를 함께 기획하고 산지를 육성하는 모델을 권장할 필요가 있으며, 농협 등의 코디네이터 역할도 강화해야 할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김규호 ☎ : 02-6788-4593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 044-201-1831

218)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과 콩의 톤당 선물가격(2022.5. 기준 밀 420달러, 콩 616달러)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안정적이던 2020년 평균(밀 202달러, 콩 350달러) 대비 각각 107.9%(밀), 76.0%(콩)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남(김규호, 「세계 식량위기의 부상 배경과 대응 방향」, 『이슈와 논점』제1968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7.1.)

농가 경영 부담 완화

1 현황

- 2022년 1/4분기의 농가구입가격지수²¹⁹⁾는 120.2로 기준연도인 2015년 평균보다 20.2%가 오른 것으로 확인됨
 - 가계용품 가격의 인상률은 11.8%로 총지수 인상률보다 낮지만, 노무비(41.4%), 재료비(37.5%), 경비(17.1%) 등 농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항목의 인상률이 높게 나타남
 - 이 중 '노무비'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하는 등 고용 인력 조달이 여의치 않던 2019년, 2020년을 기점으로 크게 오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재료비'의 경우 국제 곡물과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비료비, 사료비, 영농자재비 등이 뛰면서 올해 들어 폭등한(2021년 110.0 → 2022.1/4분기 137.5) 상황임

| 농가구입가격지수 추이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1/4
총지수	100.9	102.5	104.1	106.1	111.1	120.2
가계용품	103.3	104.6	104.9	106.1	108.9	111.8
재료비	93.2	92.7	95.6	101.8	110.0	137.5
노무비	108.8	114.8	119.6	124.2	135.3	141.4
경비	98.0	102.7	106.6	103.3	107.5	117.1
자산구입비	109.4	111.6	112.4	113.2	118.6	111.0

자료: 국가통계로털(KOSIS), 『농가 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자료 갱신일: 2022.4.27.)

- 정부는 농번기를 앞둔 지난 4월 '선제적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5월 말 확정된 제2차 추경예산에서도 비료와 사료 구매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힘쓰고 있으나 농가가 느끼는 비용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임
 - 인력수급 지원대책은 25개 중점관리 시·군 선정 및 세부 지원 계획 수립·운영, 내·외국인 근로자의 공급 활성화 지원, 마늘·양파 생산 전(全) 과정 기계화지원사업 확대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제2차 추경예산을 통해서도 무기질 비료 인상분의 30%를 정부가 지원하고, 특별사료구매자금의 금리도 기존 1.8%에서 1%로 인하하기로 함

219) 농업경영체의 가계 및 경영활동에 투입된 421개 품목(가계 부문 378개 및 농업 부문 43개)의 2015년 기준(=100) 가격지수를 뜻함

- 그러나 정부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로 외부 비용 상승 요인의 영향이 잦아들지 않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7월 이후 전기요금 인상(4.3%) 방침도 결정됨에 따라 농가의 경영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 한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72번)에서도 '농가 경영안정 강화'가 주요한 과제로 제시되고는 있으나, 자연재해나 인력 공급 문제에 대한 대안이 주를 이뤄 현재의 농업 생산비 상승 요인을 모두 포괄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재해보험 품목 확대, 재해복구비 현실화, 체류형 영농작업반과 공공형 계절근로 등 인력 공급의 다양화 등이 국정과제로서 '농가 경영안정 강화'에 담긴 주요 내용임

2 향후 논의 사항

- 국정과제에서 농가의 경영안정을 강조한 점은 고무적이거나, 자연재해와 인력 공급 문제에 한정하기보다는 농자재, 연료 등 생산요소의 가격 폭등까지 폭넓게 대처해갈 필요가 있음
 - 고령화·공동화된 농촌에서 농업 인력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 과제임은 분명함²²⁰⁾
 - 다만 현재 농가의 경영 부담은 국제적인 공급망 혼란 등 여러 경제적인 현상들의 까다롭고 복합적인 영향에 기인하는 바가 큰 바, 시장적인 해결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임
 - 단순히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측면을 넘어 농가의 경영비 압박이 소위 '밥상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면 최근 우리 경제 전반에 걸친 인플레이션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가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과 그러한 지원이 없을 경우의 물가 상승(추정치)에 따른 가계 전반의 실질소득 감소 효과를 실증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제2차 추경예산 확정 시 감액된 사업 중에는 '농업재해보험', '수리시설개보수' 등 자연재해 관련 예산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함은 물론 농가 경영에 추가적인 부담 요소가 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가야 할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김규호 ☎ : 02-6788-4593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 044-201-1531

220) 실제 60% 이상의 농가가 인력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임(편지은, 「농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요 대응정책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1966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6.29., p.2.)

통상환경의 변화와 농업부문 대응 과제

1 현황

- 올해 2월 1일 국내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정식 발효된 데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계획의 서면 의결(대외경제장관회의, 4.15.),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선언(대통령실, 5.23.) 등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농업 부문도 예외가 아님
 - 우리나라는 RCEP 협상에서 전체 농산물 세번(稅番)의 63.4%인 1,029개 세번의 관세를 20년 내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존 개방 추세를 베이스라인으로 한 추가적인 농업생산 감소액이 20년간 연평균 77억 원, 누적 1,53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²²¹⁾
 - CPTPP의 경우에도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호주, 뉴질랜드 등 농업 강국으로부터의 수입 증대로 인하여 기체결 FTA 대비 15년간 연평균 853억 원 ~ 4,400억 원의 농업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²²²⁾
- 특히 최근 대두되는 통상 사안은 과거의 자유무역협정 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무역규범(trade rules)이나 제도적인 부분의 논의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음
 - 농업·식품 부문에서 이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무역상 기술장벽(TBT) 등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역내 적용 규범을 마련하는 형태로 나타남
 - 예를 들어 RCEP은 15개국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통합하고 원산지 증명 및 신고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며, SPS 챕터도 절차 요건의 구체화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
 - CPTPP의 경우에도 특히 SPS 챕터에 WTO/SPS 협정보다 수입국 의무가 강화된 성격의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²²³⁾
 - IPEF도 아직 세부 운영 규칙이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하나, 출범 배경이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검역 등 농식품 수입 관리 과정의 여러 제도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접근성 개선이 농업 부문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²²⁴⁾

2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영향평가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2021.6., p.241.

22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CPTPP 가입신청 관련 공청회 개최」, 2022.3.25.

223) 상세한 내용은 김규호, 「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상의 쟁점과 과제」, 『NARS 현안분석』 제248호, 2022.5.3. 참조

224) 김소영, 「美, IPEF 협상 때 검역제도 손질 요구해올 것」, 농민신문, 2022.5.30.

- 이는 주로 관세(tariffs)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기존의 자유무역협정과 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우리 농업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응 과제를 모색 하고 필요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갈 필요가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통상 이슈가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대응 전략 마련 등에 기존과 다른, 혹은 보다 심화된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경제적 타당성 검토나 영향평가 등의 결과를 기본 토대로 삼되, 더 나아가 보다 정밀한 단계의 정성분석이나 부분균형분석이 함께, 혹은 연이어 수행되어야 할 것임
 - 가령 통상환경의 변화로 향후 수입이 대폭 늘 수 있음에도 아직은 수입량이 미미한 품목 의 경우 현재 확보된 데이터에 기반한 정량분석뿐만 아니라 외국 유사 사례 참고, 수출국 전략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야 함
 - 특히 비관세조치와 같은 법적·제도적 체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통상 이슈의 경우 ‘관세 상당치(Ad-Valorem Equivalents)’ 추정 등 파급효과 분석 과정이 복잡하고 오랜 시간을 요 하므로 미리 시나리오에 따른 민감품목 등을 선정하여 예상 피해 수준 등을 추정하고 대응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임
- 통상협정의 이행 및 협상 추진 과정에서 되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업계와 긴 밀히 소통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CPTPP는 이미 정해진 농업 관련 규범이 존재하므로 그 주요 내용의 임시 번역본을 농업계 와 공유하고 사전에 예상 피해나 대비책 등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IPEF의 경우 우리가 최초 협의 국가로 참여하게 된 만큼 참여국 간에 새롭게 성립될 무역규 범에 농업계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임
 - 통상협정 이행으로 발생하는 무역 이익의 일부가 효과적으로 농업 부문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농어촌상생협력’ 기금의 조성에 힘쓰는 것도 정부의 태도에 신뢰를 더해줄 것임
- 통상환경의 변화는 물론 농식품 안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대된 사실을 감안할 때 국내 의 SPS 관리 체계와 인적·물적 기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보완도 필요한 시점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김규호 ☎ : 02-6788-4593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 : 044-201-2061

해외농업자원개발의 실효성 제고

1 현황

- 우리나라는 민간의 해외농업개발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컨설팅, 투자비용 지원 및 비상시 반입체계 구축 등의 정책사업(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을 실시해오고 있음
 - 2007~2008년의 애플리케이션 직후 2008년에 발표된 「해외농업개발 추진방안」이 시초임
 - 2011년에는 「해외농업개발협력법」(현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2012.9.)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됨
 - 현재는 2018.1.에 수립된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2018~2022)」이 추진 중이며, 이 사업의 목표는 해외농업자원 확보량을 점진적으로 늘려 계획 종료연도인 올해 기준 76만 톤의 해외농업자원을 확보하는 것임
 - 또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72번)에서도 '식량주권 확보'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기업의 해외 곡물공급망 확보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비상시 해외 곡물 국내 반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천명함
- 현재 총 15개국에 43개의 기업이 진출하여 활동 중이며 해외농업자원개발면적은 2021년 기준 29만 4천ha(2021년 기준)로 나타남
 - 2021년 기준 해외농업자원 확보량은 215.5만 톤, 반입량은 63.4만 톤임

| 해외농업자원개발 주요 실적 추이 |

구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개발면적(천ha)	70	74	80	101	270	294
확보량(천톤)	284	284	493	781	1,634	2,155
반입량(천톤)	10	10	37	44	109	63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2022.5., p.287.

- 정부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913억 원의 용자 및 315억 원의 보조금 집행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왔음

- 그러나 곡물 등 해외농업자원의 국내 반입량이 아직 그리 많다고는 할 수 없으며,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차질이 당분간 불가피한 실정임
 - 상술한 76만 톤의 해외농업자원 확보 계획도 조기 목표 달성은 의미가 있으나 애초 2021년까지 국내 곡물 소비량의 35%(약 700만 톤)를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확보하려 했던 2012년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 당시의 목표에 비하면 크게 후퇴한 것이었음
 - 최근 들어 러시아 연해주 지역 진출 기업의 생산 실적과 우크라이나에 곡물 수출터미널을 확보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성과에 힘입어 국내로의 곡물(밀, 콩, 옥수수 등) 반입량을 점차 늘려오고 있었으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곡물 도입 및 대금 결제 등의 안정적인 운용이 불투명해진 상황임

2 향후 논의 사항

-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2018~2022)」이 올해로 완료되므로 성과는 계승하되 미비점과 새로운 위협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새롭게 수립될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역할과 기여를 기업의 역량 및 노력과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겠으나, 되도록 이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민·관의 성과를 평가하고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위한 바람직한 상호 역할 모델 정립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임
-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면 이른바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될 수밖에 없는 시기인 만큼 확보된 해외 농산물의 반입 프로세스를 상시 점검하고, 수입선이나 곡물 반입 모델 등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비상시 해외 진출기업이 생산한 농산물이 수출금지 조치 등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평시에 정부 차원의 외교·경제적 소통을 긴밀히 함으로써 국가 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관개 시스템이나 곡물 보관·운송 등에 필요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 등 우리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경제적·정책적 수요에도 맞닿아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임
 - 또한 유의미한 시도거나 일정한 성과가 있음에도 기업 단위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는 국제정세의 변동 등으로 인해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구체적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고 정부 역할을 신속히 강구해야 할 것임

- 해외농업 부문에 대한 '진출'과 함께 지금은 어느 정도 현지 적응 경험이 쌓인 기업의 활동 '유지'를 위해서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김규호 ☎ : 02-6788-4593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 : 044-201-2040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대책

1 현황

-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는 세계 평균 추이보다 빠른 속도로 뜨거워져 왔으며, 이에 따라 최근 들어 폭염과 한파, 호우, 대설, 가뭄 등의 ‘이상기후’²²⁵⁾ 현상도 빈발하고 있음
 - 1912년부터 2017년까지 10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지표 기온 변화율은 0.18℃/10년이나 같은 기간에 전 지구(육지) 평균은 0.14℃/10년으로 나타남²²⁶⁾
 - 또한 1968~2016년 기간에 우리나라 주변 해표면의 수온이 1.23℃ 오른 데 비하여 세계 평균은 0.47℃가 올라, 우리나라 상승 속도가 2.6배 빠름
 - 2020년에는 역대 최장기간인 54일(6.24.~8.16.)에 걸쳐 지속된 장마로 전국 33,492ha의 농경지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는가 하면, 올해는 2021.12.~2022.5.까지 6개월 강수량이 167.4mm로 평년의 48.6% 수준에 그치고 특히 지난 5월 강수량(5.8mm)은 평년의 6%에 지나지 않는 봄 가뭄이 극심했을 만큼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빈도와 시기, 양상, 강도 등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 국내 ‘평균’의 변화만이 문제가 아니라 나아가 공간별·기간별 이상기후 분포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사실 또한 효과적인 농업부문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는 요인임
 - 예를 들어 지난 100년의 통계를 보면 강수일수에는 큰 변화가 없음에도 여름 강수량(+11.6mm/10년)을 중심으로 연 강수량(+16.3mm/10년)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한편으로 지난 100년 동안 일 강수량 10mm 이상, 특히 80mm 이상²²⁷⁾ 강한 강수의 빈도와 강수량이 증가하고 약한 강수는 감소하는 강수의 양극화도 진행 중인 상황임
 - 반면 이처럼 전반적인 강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1~2040년과 2071~2100년에 우리나라의 물부족과 관련된 모든 지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남부 지역보다 중부 지역에서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²²⁸⁾

225) 이상기후는 ‘기온, 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평년값(1981~2010년)에 비해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극한현상’으로 정의되며, 세계기상기구(WMO)에서는 90퍼센타일(Percentile, 백분위수) 초과 또는 10퍼센타일 미만의 범위를 가리킴(‘퍼센타일’은 평년 동일 기간에 발생한 자료를 크기순으로 작은 쪽에서부터 세어 몇 번째인지를 나타내는 백분위수를 말함)

226) 기상청,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2020 - 기후변화 과학적 근거』, 2020.7., p.34.

227) 일 80mm 이상 집중호우 발생일수(전국 60개 관측 지점 평균)는 1970년대 1.68일에서 2000년대 2.62일로 크게 증가함

228) 성재훈 외, 『이상기후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10., pp.22~23.

- 이처럼 불안정해진 기후 조건은 자연재해 발생이나 농작물 생육상황의 교란 등으로 농업 인프라 관리와 영농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물적 요인(병해충, 토양 미생물, 잡초 등)이나 토양 요인(토질, 경사, 배수성 등)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각 생산요인 간의 자연적·전통적·유기적 조화에 균열을 가져오고 기존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임

2 향후 논의 사항

- 점차 일상화되어가는 농업 현장의 기후변화 리스크를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청사진이 요망됨
 - 불규칙적이고 비정형적인 최근의 기상이변은 재해보험이나 농업관측, 병해충 관리, 기반시설 정비 등 종래의 리스크 관리 정책이 전제된 기후와 환경의 예측 가능 수준이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방증함
 - 따라서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기존의 관련 정책도 전면 재검토하여 지금의 기후위기 양상에 맞는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선·재배치해야 할 것임
- 종합적인 정책 청사진의 연장선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과제를 다루는 부서를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연과 기후 조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농업부문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중요성은 현장의 모든 농업 주체가 체감하는 바로 지금보다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임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내에서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정책과 ‘적응(adaptation)’ 정책 관련 업무는 소수 인원의 팀 단위로 수행되고 있으나 관련 업무는 앞으로 더욱 늘어나고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지역 공간별로 불확실성이 커진 이상기후 현상의 분포 패턴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역할을 독려하고 국가-지역 간 협업 및 관련 지원 등을 늘려가야 할 것임
 - 특히 기후변화 영향 관련 농가 및 지역 단위 통계의 생산·축적·연계가 시급한 시점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김규호 ☎ : 02-6788-4593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 : 044-201-2918

농지대책 후속 과제

1 현황

- 2021년 8월 「농지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농지 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 세 건이 공포된 이후 올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농지 제도와 관련된 여러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우선 2022.2.18.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확대·개편한 ‘농지은행관리원’을 출범시킴
 - 이를 통해 토지대장, 농지원부, 부동산등기부 등 각종 정책 DB를 연계한 농지정보 수집·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종합정보를 제공할 계획임
 - 또한 농지 취득·소유 실태조사, 농지 이용·전용 현황조사, 농업진흥지역 현황 및 유희농지조사 등의 상시조사·관리 기관으로서 지자체 농지관리 업무를 지원하게 될 것임
 - 이 밖에 지자체에 대한 교육·컨설팅 지원 및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 지원 등도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농지은행관리원에 부여된 역할임
 - 농지원부 관련 제도도 4월 15일부로 개편되어 시행 중임
 - 농업인(농가)과 (준)농업법인 단위로 작성해온 농지원부를 농지별 이력 관리를 위해 농지 지번인 필지 단위로 작성하도록 하고, 종래 1천㎡ 이상(농업인 기준)이던 농지원부 작성 대상 농지의 면적제한 기준도 없애 전 농지가 작성·관리 대상이 됨
 - 이에 따라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하는 행정기관도 농업인 주소지의 관할 행정청이 아닌 농지 소재지의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됨
 - 나아가 8월 18일부터는 ‘농지원부’의 명칭과 체계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하고 임대차 등의 농지 이용현황 신고를 의무화함은 물론,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임
 - 5월 18일부터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도 강화되기에 이룸
 - 농업경영 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등의 기재 및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함
 -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도 강화하였으며,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도 구체화함
- 한편 ‘식량주권 확보’ 관련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72번)에서는 ‘기초식량 자급기반 마련’ 차원에서 ‘우량농지 보전·지원 강화’를 제시하고 있음
- 다만 농지 감소와 비농업인 농지 소유 현상 등의 진행이 점차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강화된 농지 규제가 농지의 농업적 활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법론이 부재하고 농지전용 방지책도 모호하다는 점은 후속 대책 등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향후 논의 사항

- 연이어 도입되고 있는 농지대책이 농지 유동화 현상과 실경작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러한 현실에 기반하여 농업정책이 적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농지는 농가소득지정정책, 농지집적·규모화 정책, 영농 후계인력 유입 및 정착 정책 등 주요 농정 이슈의 물적 기반으로서, '실경작자'에 대한 지원과 기대효과의 귀속은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적인 집행과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 요소가 됨
 - 최근 농촌 고령화와 공동화로 행정적 파악이나 정책적·체계적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농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농정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게 될 것임
 - 따라서 이번 농지대책의 일차적인 목표와 실시 방향을 농지 유동화 및 실경작자 관련 정보를 현행화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의 조기 구축에 둘 필요가 있음
- 비농업인 소유 농지의 활용 문제와 고령농의 농지 처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함
 - 농가의 영농 후계자 확보율이 5% 내외에 불과하여²²⁹⁾ 앞으로 대부분의 농지는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상속되거나 도시권에서 멀리 떨어졌을 경우 처분조차 어려워질 가능성이 큼
 - 이는 우선 농지의 농지로서의 존속 문제를 낳으며, 다음으로 농지 상태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방치되지 않고 제대로 농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결부됨
 - 이런 문제들은 특히 농지의 전용(개발) 및 지가차익 실현 가능성에 대한 농지소유자의 기대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적어도 국정과제에 명시된 '우량농지'부터라도 명확한 정의 및 '식량안보' 관점에서의 구체적인 보전 원칙과 계획이 시장에 제시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농지은행관리원이 농지 현황과 농업적 활용을 전제로 한 농지 실수요자 현황의 매칭 역량을 신속히 제고할 수 있도록 초기에 적절한 인력·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김규호 ☎ : 02-6788-4593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 044-201-1731

229) 조병옥, 「농지 이용과 보전 제도개선 방안」, 『농지 이용과 보전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자료집』,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국회의원 위성곤, 2021.12.7., p.31.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1 현황

- 윤석열 정부가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을 표방하는 국정과제(70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제시한 상황임
 - 농촌공간이 여건에 따라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재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임
 - 이를 위해 올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장기계획에 대응하여 서비스 거점 확충, 주거지 인접 공장·축사 정비·집적화 등을 지원하는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40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내용임
- 이에 작년부터 시범사업(농촌공간정비)을 통해 일차적으로 구체화된 ‘농촌공간계획’²³⁰⁾이 향후 좀 더 탄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위에서 전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임
 - 이는 지역의 장기비전 및 방향성을 제시하고 농촌 공간의 구조 및 정주체계를 고려하는 기반 위에서 농업·농촌 부문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도입됨
 - 지금까지 농촌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부재한 가운데²³¹⁾ 상황에 따라 규제 완화나 개발 승인 등으로 서로 조화되지 않는 다양한 시설과 건축물이 들어서다 보니 농촌지역의 난개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농촌공간계획’의 도입 근거임
 -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농촌 공간을 주택·공장·축사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정비계획을 세우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2021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이었음
 - 2021년에 총 25억 원의 예산을 5개 시·군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 국정과제 수립 이전에 확정된 올해 계획(45개 시·군, 315억 원 지원)이 이미 작년에 비하여 크게 확대되어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본 사업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 다만 농촌 공간이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러한 공간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여기는 방향으로 재구성·재배치하는 일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관련 정책사업의 본격적 추진 이전에

230) 농촌의 자원과 공간구조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 구상의 틀 안에서 농촌개발사업과 관련 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전략계획을 말함(성주인, 「농촌공간계획 수립 방향과 과제」, 『제2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방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6., p.83.)

231) 법적으로 인구 10만 이하 시·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의무가 없음. 이러한 현실과 관련하여 ‘비도시지역은 장래 시가화용지의 공급원에 불과하며, 비도시지역 공간계획은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라는 평가가 있음(김승종 외,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촌계획체계 정비방향』, 국토연구원, 2019.7., p.50.)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범부처 차원의 법적·제도적 조정과 조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계 및 역할 분담 차원의 고민도 필요해 보임

2 향후 논의 사항

- ‘농촌공간의 재구조화’가 현재 국정과제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과제와 달리 대선 정국에서나 국정과제의 수립·공표 과정 등에서 상대적으로 거의 거론되거나 강조된 적이 없는 과제라는 점에서 이제라도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설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 농업 부문의 한 정책사업으로 축소·환원하기에는 범부처 차원의 논의와 협력을 필요로 하는 대형과제인 만큼 정부 당국의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비전(추진 체계 포함) 제시가 필요하며 그 전후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 무엇보다 농촌공간이 그간 무계획적인 토지이용과 소규모의 산발적인 난개발을 가능하게 한 무분별한 개발 규제 완화로 크게 훼손되어왔고, 이는 지역의 공간적·경제적 잠재력 발현과 국토 관리는 물론 농촌 거주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도 심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사실부터 널리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음
- 예산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공간계획 및 향후 진행될 재구조화 사업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개정에서 새로운 법의 제정까지 아우르는 법·제도적 과제를 전면 검토하여 목록화하는 일이 급선무로 보임
- ‘농촌공간계획’이 적용되는 공간 범위에 대하여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지자체 단위에서 이는 법정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소요되는 행정력이나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임
 - 예를 들어 계획 적용 범위를 해당 지자체 전체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 내 일부 농촌적 특성이 강한 지역에 한정되는 별도의 계획으로 볼 것인지 분명치 않음
 - 또한 면 수준, 마을 수준에서 계획을 적용하고자 할 때 난개발 문제가 아닌 지형적, 인문·사회적으로 각기 다른 경험과 역사에서 연유하는 차이의 문제를 어떻게 공간적으로 일관된 기준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도 필요해 보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김규호 ☎ : 02-6788-4593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 044-201-1511

농어촌지역 보건·의료분야 서비스 질 향상

1 현황

■ 농어촌지역은 응급 의료, 분만, 소아 등의 진료과목과 주민의 질병 예방·건강 증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도 낮은데다, 농작업 특성상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문제도 심각함²³²⁾

- 의료 취약지(19): (응급 의료) 76개 군 > 23개 시, (분만 의료) 30개 군 > 2개 시
- 응급실 편도 소요시간(18): (농어촌) 26.5분 > (도시) 18.3분
-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는 있으나 분만실 없는 지역(17): (군) 53개 > (시) 7개
-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²³³⁾(19): (재해율) 농업 0.81, > 전체 산업 평균 0.58, (사망만인율) 농업 1.13 > 전체 산업 평균 1.08

■ 이에 정부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24)」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농어촌 지역 의료 공공성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충 지원,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
- (의료 취약지역 지원 확대)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분만 및 소아청소년과 등 의료취약지 해소 지원, 낙도·벽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
 - 응급의료기관 지원(117개), 의료인력 파견·응급원격협진(약 1,316회) 등
 - 취약지 응급실 파견 공보의 93명, 14개 의료취약지 파견 간호사 22명
 -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신규지정: (20) 3개소 → (21) 10개소
- (농어업인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여성 농어업인 특수 건강검진 도입, 농업안전보건센터 역할 재정립, 농어업인 정신건강 관리 지원,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한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

232) 관계부처 합동,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2020.2., p.21.; 김규호, 「농업인 안전보험의 개선 필요성과 향후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21.2.9.

233) '재해율'은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을 말하며,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을 뜻함(김규호, 앞의 자료, 2021.2.9.)

2 향후 논의 사항

- 이처럼 열악한 농어촌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농어촌 주민들이 도시민에 비해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분야는 여전히 보건·복지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농어촌 주민은 전반적으로 도시 주민보다 정주여건을 열악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복지 부문에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도시 주민보다 특히 낮게 나타남²³⁴⁾
 - 농어촌 주민은 보건·복지 분야의 세부 항목 중 ‘의료서비스 접근성’에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의료서비스 범위’와 ‘의료서비스 수준’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 의료 시설이 가까이 있어도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농어촌 주민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세부 항목은 ‘분만 의료서비스’로 나타남

|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부문별 정주 만족도 점수 |

[11점 척도]

부문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도농간 차이	
	'20	'21	'20	'21	'20	'21
보건·복지	6.8	7.0	5.2	5.8	-1.6	-1.2
교육·문화	6.1	6.4	4.8	5.4	-1.3	-1.0
정주기반	6.9	7.1	5.9	6.4	-1.0	-0.7
경제·일자리	5.5	5.6	4.6	5.3	-0.9	-0.3
전체 평균	6.3	6.5	5.1	5.7	-1.2	-0.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2021.12., p.18.

- 이는 전술한 보건분야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포함한 관련 정책과 사업들이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기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²³⁵⁾
 - 관련 정책들이 농촌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평균적으로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음
 -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증가, 분산되어 있는 적은 인구 등 농촌의 특성 상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은 고려하지 않고 시설과 장비 등 하드웨어만을 확충하는 방법은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며 도농간 의료격차와 건강격차 해결에 한계가 있음

234) 농림축산식품부, 「2021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2021.12., pp.18-19.

23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역 비대면 보건·의료 서비스 개발·활용 방안」, 2020.12., pp.110-111.

- 따라서 향후에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개선을 지속 추진하면서,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우수 의료인력을 농어촌, 특히 농어촌 공공의료분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우수한 의료 시설과 장비가 갖춰지더라도 고령인구, 만성질환자 등 이동이 쉽지 않은 주민이 많고 교통이 불편하여 의료서비스에 접근이 쉽지 않은 농어촌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 추진중인 취약지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더욱 확충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보건의료 서비스의 보급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비대면 보건의료 서비스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있는 대면진료의 보완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고령자, 만성질환자에 대한 예방적 관리와 정기적 관리를 가능케하여 지역사회의 일차의료를 강화해 의료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²³⁶⁾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편지은 ☎ : 02-6788-4594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 044-201-1518

236) 농림축산식품부, 앞의 자료, 2020.12.

여성농업인 정책 실효성 제고

1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근거하여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21~’25)」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22년 기준 2개 분야, 43개 세부과제에 예산 226,352백만 원을 투입함
- ’19년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여성정책팀’이 신설된 이후 ’20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의 주요 과제 추진 성과와 향후 목표는 다음과 같음²³⁷⁾
 -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양성평등 교육 확대, 여성농업인 대표성 강화,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추진, 지방자치단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인력 확보 등을 추진함
 - 양성평등 교육인원: (’19년) 25백 명 → (’20) 31 → (’21) 33 → (’25 계획) 41
 - 농촌특화형 성평등 전문강사 선발인원: (’20년) 21명 → (’21) 신규 18명/재위촉 16명 → (’25 계획) 70명
 - 여성 공동경영주 등록현황: 등록자 수 128천 명, 등록률 18.1%(’22.3월)
 - 지방자치단체 전담부서/인력 개소수: (’20년) 5개소²³⁸⁾, 5명 → (’21) 8개소²³⁹⁾, 21명
 - 정부·지자체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09년) 26.1% → (’20) 42.8 → (’21) 44.2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여성농업인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등을 추진함
 - 소규모 가공사업 참여농가 매출액 증가율: (’20년) 12.5% → (’25 계획) 14
 - 지역개발역량강화 교육 여성참여 비율: (’21년) 35% → (’25 계획) 40
 - 여성농업인의 복지·문화서비스 향유 및 건강·안전 제고를 위해 출산·보육 지원, 영농여건개선 교육 등 노동부담 경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등 보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함
 - 농촌여성 특수건강검진 정규사업화 추진(’22년~)
 - 영농여건개선교육 확대: (’20년) 360개소 → (’21) 1,080 → (’25 계획) 2,160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 (’20년) 8개소 → (’25 계획) 18
 - 농가도우미 제도의 지원대상 확대: (’20년) 여성 본인 → (’25 계획) 배우자로 확대

237)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전담팀 제출자료(2022.6.20.)

238) 충남, 전남, 제주, 영월, 니주

239) 경북, 경남, (경남)고성 부서 신설

- 새 정부도 국정과제 70-1번 “농촌맞춤형 사회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여성농업인 육성,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 등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음²⁴⁰⁾

2 향후 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와 인력이 늘고 있으나 그 역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여성농업인 정책을 현장까지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해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역량있는 지원기관이나 민간단체가 부재해 정책 전달 체계가 미흡하다보니 여성농업인의 정책수요나 특성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정책효과가 저하되고 있다는 입장임²⁴¹⁾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여성농업인센터(40여 개소)²⁴²⁾의 역할을 강화하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별도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센터가 대부분 간단한 보육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으로, 여성농업인 정책의 중간지원조직 구축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입법을 통해 조직 설립과 예산 확보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²⁴³⁾
- 농업·농촌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해 여성농업인 대표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이 갖는 상징적 의미에서 더 나아가 공동경영주가 실질적인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공동경영주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기존의 ‘경영주 외 농업인’과 동일한 지위에 불과하므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함²⁴⁴⁾
 -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연구용역과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공동경영주의 법적 지위 명시, 겸업허용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240)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5.

24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전담팀 제출자료(2022.6.20.)

24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전담팀 제출자료(2022.6.20.)

24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전담팀 제출자료(2022.6.20.)

244) 임소영 외, 「농촌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 지위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10.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인의 유형을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구분하고 경영주의 범위 안에 공동경영주를 포함시키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함

- 도시에 비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태도가 낮은²⁴⁵⁾ 농업·농촌 여건을 고려하여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고, 특히 기존의 여성농업인 위주 관련 교육에 남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3년부터 농촌지역 성평등 교육에 여성뿐 아니라 남성농업인까지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나, 이를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임²⁴⁶⁾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편지은 ☎ : 02-6788-4594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전담팀

☎ : 044-201-1569

245)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실태조사」(2016)를 인용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전담팀 제출자료(2022.6.20.)

246)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전담팀 제출자료(2022.6.20.)

농촌관광 활성화

1 현황

- 농촌관광은 농촌지역에서 주민들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한 체험활동과 농촌의 자연과 환경, 역사와 문화, 농업이나 생활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관광 형태를 말함²⁴⁷⁾
 - 여기서 농촌은 산촌과 어촌을 포함하며, 읍·면 지역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곳을 의미함
- 코로나19 이전 증가추세를 보이던 농촌관광 방문객 수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에 따라 급감함
 - 코로나19 이전 농촌관광 방문객 수는 2013년 829만 명에서 2019년 1,307만 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7.9%였음²⁴⁸⁾
 - 2020년에는 농촌관광 방문객 수가 656만 명(2019년 대비 49.8% 감소), 2021년 731만 명(2019년 대비 44.1% 감소)으로 급감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²⁴⁹⁾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국내 여행의 향이 있고, 특히 자연경관이 잘 보전된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국내 여행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기 자료에서 제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²⁵⁰⁾ 코로나19가 지속된 경우에도 응답자의 45.8%가 국내여행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코로나19 종식 후의 국내여행 의향 또한 92.8%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 특히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여행패턴으로 산, 바다 등 자연으로의 방문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81.8%에 이름

247) 예를 들면, 농촌체험활동(농촌체험휴양마을, 교육·체험농장, 농촌축제, 자연휴양림, 승마, 관광농원, 레포츠 등), 농촌숙박(농촌민박, 고택 숙박 등), 농촌 맛집 방문(농가맛집, 농가레스토랑, 향토음식점, 농촌카페, 기타 농촌지역 맛집 등), 농·특산물 직거래, 농촌 둘레길 걷기, 농촌지역에서의 캠핑 등 비일상적인 활동이 해당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20 농촌관광 실태조사-국민부문」, 2022.3.15.)

248) 농촌체험마을 방문객 추이에 한정한 수치임(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2022.6.10.)

249) 김광선 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촌관광의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10.

250)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국민 2,061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임(김광선 외, 앞의 자료, 2021.10., p.60.)

- 한편 같은 자료의 농촌관광 경험 및 향후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²⁵¹⁾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 패턴이 5인 이하 소규모 관광, 근거리 관광, 1~2박 단위 숙박 관광, 단독 공간 및 전통 숙박시설 관광 등을 선호하는 형태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2 향후 논의 사항

- 코로나19는 관광산업 전반에 악재로 작용했으나 한편으로는 도시민들이 인구밀집도가 낮고 자연경관이 보존된 농촌관광을 선호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나고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있는 현재, 농촌관광이 재도약하는 기회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됨
-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지역 간 차별성 없이 단체 관광 위주로 보급된 농촌관광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과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²⁵²⁾
 - 농림축산식품부는 차박 및 캠핑, 숙박(하루/한달살이 등), 트레킹(마을탐방, 피크닉 등), 전통체험형 등 소그룹 단위 콘텐츠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22년, 100개)할 계획임
 - 또한 농촌관광 추진 경영체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농촌관광사업자·전문가·현장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주도·지역단위의 농촌관광 추진을 확대('22년 누계, 주민주도 15개소, 지역단위 20개소)할 계획임
- 이처럼 개발된 차박, 캠핑 등 새로운 농촌관광 콘텐츠 사업화에 있어 영업 허가 요건, 농지 내 편의시설 설치 요건 등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법개정 등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김광선 외(2021)는²⁵³⁾ 현재 농촌체험·휴양마을 대부분은 차박 캠핑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캠핑장 운영에 대한 허가 요건을 법률적으로 충족해야하기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음
- 농촌관광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청년농 육성, 귀농귀촌 활성화, 치유농업, 농촌 빈집 활용 등 다양한 농업분야 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를 적극 추진하고, 문화관광체육부, 환경부, 교육부 등 여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음

251) 2021년 5~6월 기간동안 1,03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임(김광선 외, 앞의 자료, 2021.10., p.77.)

252)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2022.6.10.)

253) 김광선 외, 앞의 자료, 2021.10., p.162.

-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문체부, 교육부 등), 지자체, 공공기관, 카드사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일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1.4월 교육부 등과의 기후위기·환경생태 교육 관련 협업 내용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농촌관광의 한 유형으로 농어촌인성학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운영주체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힘(22년, 5개소)

■ 코로나19로 가속화된 ICT 및 비대면 기술 활용 트렌드를 적극 활용한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과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가령 재택·원격근무나 워케이션(Workation)²⁵⁴ 수요가 늘고 있으므로²⁵⁵ 인터넷, 교통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업무와 관광, 휴식, 휴양 등을 병행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도입하거나, 비대면 근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IT기업이나 여행사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관광콘텐츠를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음²⁵⁶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편지은 ☎ : 02-6788-4594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 : 044-201-1592·1583

254) 업무(Work)와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하는 새로운 근무제도 및 여행트렌드를 의미함

255) 연합뉴스, 「퇴근하는 즉시 휴가 시작...IT 업계서 퍼지는 '워케이션」, 2022.6.26.<<https://www.yna.co.kr/view/AKR20220624147700017?input=1195m>>; 한겨레, 「김 대리는 산으로 출근, 바다로 퇴근... '워케이션' 중입니다」, 2021.11.10.<<https://www.hani.co.kr/arti/area/gangwon/1018659.html>>

256) 강원도관광재단이 지난 3월 민간 여행사와 연합으로 기획·실시하여 2달간 총 22,801박이 판매된 '워케이션 특화상품' 등 지자체들이 실시하는 워케이션 관광상품들을 참고할 수 있음(강원도 관광재단 보도자료, 「워케이션 최적지 강원도로 몰려온다」, 2022.6.9.)

스마트농업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1 현황

- 정부는 스마트농업²⁵⁷⁾을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기후변화 등 농업 여건 변화에 대한 주요 대안으로 인식하고 2014년부터 스마트농업 확산 정책을 추진해왔으며,²⁵⁸⁾ 최근 2021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함²⁵⁹⁾
 - 이번 종합대책은 스마트농업 확산 및 고도화를 통한 농업혁신 가속화를 비전으로 ① 농업 빅데이터·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② 스마트농업 거점 육성, ③ 기술·인력 및 장비 등 지원 강화, ④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활성화 등 4대 정책방향에 대한 13개 핵심과제를 제시함
- 종합대책의 주요 정책방향 중 ‘③ 기술·인력 및 장비 등 지원 강화’는 스마트농업 기술수준과 연구개발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과제가 주요 내용임
 - R&D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농업 + 빅데이터·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기업 육성 및 투자 촉진, 기술·장비, 인공지능 서비스 등 보급, 전·후방 산업 연계 등임
- 특히 ‘R&D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과제는 국내 스마트농업의 확산뿐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세계 스마트농업 시장²⁶⁰⁾ 진출을 위해서도 필수적인데,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농업 기술은 선진국과 다소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술한 종합대책에서는 우리나라 스마트농업 기술과 선진국 간 격차가 4년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전체 농림식품 기술수준은 2020년 기준 세계 최고 기술수준 보유국(미국) 대비 82.3% 수준이며, 농림식품 분야 10대 분야별 기술 중 스마트농업과 관련성이 높은 ‘농림식

257) 스마트농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시설원예, 축산, 노지작물·과수 분야에 생산·유통·소비 분야와 전후방산업까지를 포함한 농업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함(변재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22.6.15., p.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스마트 농업 육성 방안 연구』, 2020.5.)

258) 2013년 「ICT 융복합 스마트팜 확산대책」, 2016년 「스마트팜 확산 가속화 대책」, 2018년에는 「스마트팜 확산방안」 등을 수립·추진함(변재연, 앞의 자료, 2022.6.15., p.1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요정책현안」, 2020.6., p.10.)

259) 관계부처 합동,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 2021.12.23.

260) 농림축산식품부는 글로벌시장조사기업 마켓츠앤마켓츠의 조사를 인용하여 스마트팜 세계 시장 규모가 2020년 138억 달러에서 2025년 220억 달러로 연평균 9.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농림축산식품부 전화인터뷰(2021.11.5.)),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도 스마트농업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관계부처 합동, 앞의 자료, 2021.12.23.),

품 기계·시스템’ 및 ‘농림식품 융복합’ 분야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 대비 각각 81.4%와 78.8%로 나타남²⁶¹⁾

- 스마트농업 중 스마트팜 기술의 경우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 기술수준 보유국(100%) 대비 75.5% 수준이며, 기술격차는 4.8년으로 기술수준을 ‘추격’하는 국가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²⁶²⁾

2 향후 논의 사항

- 그동안 스마트농업 예산이 2014년 464억 원에서 2022년 3,044억 원으로 증가해왔고, 새 정부에서도 스마트농업을 국정과제 ‘71.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스마트농업 육성은 우리나라 농정의 주요한 한 축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임
- 스마트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스마트농업의 국내 보급과 대외 수출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스마트농업이 미래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연구개발 지원을 지속 강화해나가야 함
-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농업 지원정책이 시작된 2014년 이후 스마트농업 연구개발 예산은 2014년 230억 원에서 2022년 839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전체 스마트농업 관련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도리어 2014년 49.6%에서 2022년 27.6%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²⁶³⁾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편지은 ☎ : 02-6788-4594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 : 044-201-2411

261)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식품 기술수준평가」를 인용한 변재연, 앞의 자료, 2022.6.15.

26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년 기술수준평가: 농림수산·식품」, 2019.

263) 변재연, 앞의 자료, 2022.6.15., p.69.

농식품분야 탄소중립 이행계획의 구체화

1 현황

- 2021년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된 이후 그 후속대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도 2021년 12월 이 시나리오의 농식품 부문 이행방안인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이하 농식품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기에 이룸
 - 농식품 탄소중립 전략은 다음과 같은 3+1 실행전략을 위한 14개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음²⁶⁴⁾
 - (구조) ①저탄소 농업구조 전환: DNA 기반 정밀농업 확산, 환경친화적 농업 확산, 농업 자원(토양·수질) 관리 강화, 온실가스 저장 기능 강화
 - (감축) ②온실가스 배출 저감: (경종) 논물관리 및 비료사용 감축, (축산) 사양관리·분뇨처리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유통) 농식품 유통거리 축소, (소비) 식생활 개선 및 음식물 낭비 저감
 - (감축) ③화석에너지 사용 축소 및 에너지 전환: 시설농업 저탄소 에너지 전환, 농산물 유통시설 에너지 효율화, 농기계 에너지 전환
 - (전환) ④재생에너지 확대: 농촌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농촌마을 RE100, 농촌공간계획을 통한 에너지 자립지구 구축
- 이 전략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농축산 분야 합계 8,243천 톤(CO₂eq.)을 감축해 15.3백만 톤(CO₂eq.)의 온실가스만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²⁶⁵⁾
 - 이는 2018년 대비 감축률 37.2%에 이르는 수치이며, 2050년 감축 목표의 71.1%에 달하는 5,858천 톤(CO₂eq.)의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조기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새 정부도 글로벌 탈탄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110대 국정과제 중 86번으로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그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²⁶⁶⁾
 -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수단을 마련하여 범

264) 농림축산식품부,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1.12.27., p.4.

265) 농림축산식품부, 앞의 자료, 2021.12.27., p.9.를 재가공·인용한 김규호·장영주·유제범,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22.1.17.

266)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5., p.147.

- 정 국가계획에 반영(~'23.3월)하여 이행방안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임
- 새 정부는 '3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하고 녹색산업·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농식품분야는 새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방안 조정 기조와 함께 농업분야 탄소배출 특성과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이행방안 조정 방향과 방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함
 - 농업분야의 경우 농축산물 생산과정의 특성 상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대표적인 기후 민감산업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안보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탄소중립과 다소 다른 방향으로 오히려 자원과 에너지를 추가 투입해야 하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²⁶⁷⁾
- 또한 경제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조직, 예산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전략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함
 - 특히 가축분뇨 관리·활용이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²⁶⁸⁾ 관련 정책과 사업의 성과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예를 들어 2009년부터 시행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의 경우 2020년까지 100개소의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하고 연간 365만 톤의 가축분뇨를 바이오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으나, 실제 2020년에는 6개소의 시설에서 연간 45만 톤의 분뇨가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과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²⁶⁹⁾
- 한편 농식품 분야 각 산업별·분야별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별도의 개별법 제정도 고려해볼 수 있음²⁷⁰⁾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편지은 ☎ : 02-6788-4594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 : 044-201-2918

267) 김규호·장영주·유제범, 앞의 자료, 2022.1.17.

268) 김규호·장영주·유제범, 앞의 자료, 2022.1.17.에서는 가축분뇨의 농경지 투입을 줄이고 비농업계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통해 2030년 목표의 63.9%, 2050년 목표의 52.1%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269)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10., pp.87-89.

270) 김규호·장영주·유제범, 앞의 자료, 2022.1.17.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의 확대

1 현황

- 정부는 개도국에 우리 농업분야 발전경험을 전수하고 농업·농촌개발 지원을 통해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노력에 적극참여하기 위해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음
-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은 다음과 같이 기획협력사업, 개도국 농정 컨설팅, 다자성양자사업으로 구분됨
 - (기획협력사업) 우리나라와 수원국 간 직접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장기간(3~5년)에 걸쳐 농업 인프라를 제공하고 운영교육, 컨설팅 등 S/W를 함께 지원함
 - 농촌종합개발, 영농기술 전수, 기계화 영농, 농업 관개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사업 당 3~5년간 30~80억 원 수준임
 - (개도국 농정 컨설팅) 연간 3~5개 개도국의 수요에 따라 분야를 선정하여 공동조사, 초청연수, 워크숍 등을 시행하는 사업(KAPEX; Korean Agricultural Policy Experiences for Food Security)임
 - (다자성양자사업) FAO 등 국제기구를 통해 개도국 농업 기술 지도, 유통 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고 WFP를 통해 개도국에 식량원조를 실시함
 - 9개 국제기구²⁷¹⁾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 국제농업협력(ODA) 사업 예산은 2016년 약 650억 원에서 2020년 약 700억 원, 2022년 약 885억 원으로 증가추세임
 - 매년 전체 예산의 70% 이상이 매년 5만 톤의 쌀 원조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성양자사업에 투입되고 있음

271)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유엔식량농업기구(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글로벌녹색성장기구(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국제미작연구소(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IRRI), 국제축산연구소(International Livestock Research Institute; ILRI), 국제농식품 정책연구소(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PRI) 등

| 국제농업협력(ODA) 사업별 예산 추이 |

[단위: 백만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 총액	65,163	66,413	69,977	82,791	88,477
기획협력사업	15,597	16,663	18,364	26,018	24,962
개도국 농정 컨설팅	1,200	1,200	1,035	1,435	1,206
다자성양자	48,366	48,550	50,578	55,338	62,309

자료: 2020-2022 각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 향후 논의 사항

- 지금 세계는 이상 기후, 코로나19 등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공급망 충격까지 더해지며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등 빈곤국을 중심으로 식량부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임²⁷²⁾
 - 유엔식량농업기구(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와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은 광범위한 식량 위기에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WTO도 농산물의 수출제한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는 선언²⁷³⁾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밀 수입이 급감하는 동시에 가격은 급등하고 있음
- 이에 국제사회의 빈곤국에 대한 긴급 식량 원조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의미를 갖는 시점임
 - 국제농업협력(ODA) 사업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간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 현재 식량가격이 급등하는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기아 위험에 놓인 국가에 대한 긴급 식량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쌀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원조 규모를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음²⁷⁴⁾
- 다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 정부는 빈곤국에서 가장 시급한 구호조치가 식량 공급이고 개도국 대부분이 농업 위주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농업협력(ODA)

272) 김규호, 「세계 식량위기론의 부상 배경과 대응 방안」,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22.7.1.; 강문수 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아프리카·중동 식량안보 리스크와 전망」, 『세계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5.18.

273) 식량안보 각료선언(Emergency Response to Food Insecurity)

274) 김규호, 앞의 자료, 2022.7.1.; 강문수 외, 앞의 자료, 2022.5.18.

사업 예산의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 특히 최근에는 식량 가격뿐 아니라 유가, 환율 등이 상승하면서 식량원조에 따른 물류비 등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 혼란스러운 세계 경제 여건 속에서 국제농업협력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여부와 그 규모가 관건임
- 기후변화 등으로 식량위기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 이슈가 될 것이므로, 개발도상국의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전반에 걸친 농업 생태계 구축을 실효성있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콘텐츠를 지속 발굴·보급해 나가야 할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9월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결과를 토대로 개도국의 푸드시스템을 기아종식, 학교급식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²⁷⁵⁾
- 또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서 국내 R&D 성과와 ODA를 접목한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²⁷⁶⁾ 농업분야에서도 개발도상국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R&D 협력사업의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편지은 ☎ : 02-6788-4594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 : 044-201-2043

275) 관계부처 합동,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22.1.27.

276) 관계부처 합동,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2021.1.20., p.15.

농식품바우처사업 확대

1 현황

- 농식품바우처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지원을 위해 신선·고품질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농가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농식품 산업기반 확장에 목적을 두고 시행되고 있음
- ‘농식품바우처’를 카드방식으로 선정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식생활 교육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가구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영양 보충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고, 지자체와 전담기관(사업운영·관리는 aT)이 담당하고 있음
 - 시범사업을 포함한 본사업에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전자바우처(카드방식) 금액은 월 4만 원(1인 가구 기준)임
 - 지원 품목은 지역의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꿀 등 신선식품류로 한정함
- 이 사업은 2020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21년 하반기에 첫 본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사업 시행 후 성과를 토대로 2022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중임²⁷⁷⁾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2022.6.20.)에 따르면, 시범사업 추진 결과 바우처 지원 후 사업대상 가구의 식품 지출액 및 식생활 만족도와 섭취 식품의 다양성이 증가하였음
 - 식품 지출액이 바우처 지원 전 월 121,476원에서 지원 후 155,317원으로 28%(33,841원) 증가함(18.6.~19.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 같은 연구에서 바우처 지원 수혜 전후 대비 식품 다양성은 24.1%p, 식품 충분성은 16.6%p 증가하였고, 식품 품목별 소비는 과일류 4.98%p, 채소류 7.08%p, 곡물류 9.69%p, 우유류 3.50%p 증가함
 - 반면 바우처 지원 이후 가공식품 소비지출액은 전체 식품비 지출의 55%에서 38%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취약계층의 경상소득 및 가정식비 지출액의 불평등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함²⁷⁸⁾

277) 2021년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본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2022년 실시하기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바우처사업 추진 결과 단기간 내에 가공식품 중심의 식품소비 지출 패턴이 신선식품 중심으로 바뀌는 효과가 나타나 지속적으로 취약계층 대상의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식품류에 한정하여 제공되는 사업으로 로컬식품산업계와의 활발한 연계가 요구되는 사업인 반면 취약계층의 영양섭취 부족(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에 제공되는 식품류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한계도 있음
- 최근 3년간 추진예산은 '20년 35억 원, '21년 89억 원, '22년 89억 원으로 확대되어 본사업 추진 이후 89억 원을 유지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 등 사업 효과, 사업 대상 만족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등과 같은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확대 계획은 아직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를 지역 농산업과 연계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마련하고, 본 제도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 및 예산 확보 방안도 검토하여야 함
 - 2020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전문가 및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도 지원 금액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본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하기에 앞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확대 및 식생활 여건 악화, 식료품 물가상승 등 식생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원 금액 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구입 가능 채널 확대, 온라인몰 이용 활성화 등 사업 대상의 접근성 및 용이성 확대, 거동불편자와 시설 거주자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식품 접근성이 열악한 취약계층으로 사업 대상과 지원 품목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농산업과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로컬푸드 공급망 확대 등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에게 맞춤형 식생활 교육을 제공하여 실제 식생활에서 체화될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홍보 프로그램 지원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임

278) 김상호,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결과분석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021.4.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성과지표 선정 및 관리를 통해 타 복지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여 식품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별화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임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식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맞춰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지자체, 관련 업계와 함께 사업 확대에 따른 관리인력 확충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임

작성 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장영주 ☎ : 02-6788-4590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
☎ : 044-201-2274

한식산업의 식재료산업과의 연계 강화

1 현황

- 한식정책은 2007년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가 한식²⁷⁹⁾ 등 주요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어 2009년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식세계화 추진전략’, 2014년 ‘한식정책 발전방안’, 2015년 ‘한식진흥 정책 강화방안’ 등을 수립하여 추진되어 왔음
 - 2019년 8월 「한식진흥법」 제정으로 한식(문화)의 보전·계승·발전과 한식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한식산업”이란 한식과 관련된 기획·개발·생산·유통·소비·수출 등의 산업을 말함
- 최근에는 농어업 및 식품·외식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식품·외식산업 정책 틀 속에서 한식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례로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에 한식과 음식관광에 의한 국산 농식품의 소비 기반 확대 등 한식과 관련된 정책·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동안 조성된 한식산업의 추진체계가 국내외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산업 환경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그동안 해외 인지도 증가와 한식진흥원 등 추진조직의 확대라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지만 한식산업 발전을 위한 전후방산업 연계 효과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음
- 특히 후방산업인 식재료산업과 한식산업 간 연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²⁸⁰⁾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재료산업과 관련하여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지원’,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등의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지원 사업 규모와 수혜 대상이 크지 않은 특징이 있음
 - 또한 전체 외식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으로는 한식을 지역 식재료와 맞게 특성화한 소규모·영세 한식 외식업체의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용이하지 않다는

279) 「한식진흥법」에서 한식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 온 식재료 또는 그와 유사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조리방법 또는 그와 유사한 조리방법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음식과 그 음식과 관련된 유형·무형의 자원·활동 및 음식문화를 말함

280) 황윤재, 「식재료산업과 연계한 한식산업 발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10.

지적이 있음

- 또한 식품외식산업의 전체 예산 대비 한식정책의 예산 규모도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타 산업과의 연관 관계 강화 등 정책 추진을 유인할 동력이 낮은 편이며, 예산의 주요 부분이 여전히 교육·정보·홍보 등에 주로 할애되고 있어,²⁸¹⁾ 산업적 관점에서의 한식산업 진흥정책을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한식 진흥 및 한식산업 지원 예산 |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명(내역·내내역사업명)	2020	2021	2022
□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13,396	14,134	12,473
○ 한식 진흥 기반의 조성	5,040	4,948	6,013
- 한식정보분석 및 콘텐츠 확산	750	650	830
· 한식아카이브 DB 확산	200	180	200
· 한식 콘텐츠 활성화	-	-	160
· 한식 및 한식산업 실태조사	550	470	470
- 한식진흥 정보화 운영·지원	491	494	494
- 추진기관 운영비	3,799	3,804	4,689
○ 한식의 국내외 확산	4,549	5,909	3,353
- 한식문화공간 운영	1,109	1,189	423
- 해외한식당협의체 역할 강화	540	440	600
- 음식관광 상품 개발·보급	400	200	200
- 한식문화 해외홍보	500	300	200
- 국내외 한식 확산 지원	700	500	600
- 외국인 대상 한식 영상 공모전	-	-	350
- 한국적 이미지 물품 지원	700	700	700
- 장문화 유네스코 등재	100	80	80
- 한식메뉴 표준화 및 해외 확산	-	300	200
- 지역공항 거점 한식 관광클러스터 구축	-	200	-
- 한식복합문화공간 조성	500	2,000	-
○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3,807	3,277	2,907
- 한식 인프라 강화	517	417	567
- 한식 전문인력 취창업 지원	1,790	1,540	1,140
- 해외 우수한식당 지정제	-	600	600
- 한식전문인력 해외진출 인프라 구축	1,500	600	600
- 지역 한식체험 산업 육성	-	120	-
○ 남도 등 향토음식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	-	-	2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2022.6.20.

281) 황윤재, 위의 글.

2 향후 논의 사항

- 법정 외식산업 진흥계획과 차별화된 한식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한식정책 추진 동력을 재정비하여 추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식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후방산업인 지역 식재료산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한식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식재료산업의 다양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향후 한식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한 정책 및 사업들과 연계하는 방안, 농림수산업과의 상생발전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한식산업 진흥정책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장영주 ☎ : 02-6788-4590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 : 044-201-2155

축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 현황

- 조사료는 한육우 및 젖소 사육농가의 사료비 절감 및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필요한 축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투입재임²⁸²⁾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흉작, 우-러 전쟁, 코로나 19에 따른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로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FTA 등 시장개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사료 생산, 시설 및 기계장비, 조사료 유통, 방목생태축산 초지 조성, 방목생태축산 교육 홍보 등 총 7개 사업으로 구성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추진함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목적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을 확충하여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약 900억 원 총 4,500여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한편 국내 조사료 자급률(국내산 조사료 공급량/조사료 총공급량)×100]은 이상 기후로 조사료 작황이 좋지 않았던 2017년 약 71.4%를 제외하고는 2012년 약 77.8%, 2014년 약 80%, 2016년 약 77.6%, 2018년 약 78.1%, 2020년 약 81.4%로 완만하게 상승추세임

 - 그러나 2024년부터 FTA에 따른 국내 조사료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수입산 조사료에 대비 가격 및 품질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산 조사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기반 확충 및 품질 향상은 시급한 과제임

2 향후 논의 사항

- 국내산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초지를 확보하고, 국내산 조사료 품질 신뢰도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 추가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82) 조사료(粗飼料)란 목초, 건초, 사일리지, 옥수수, 파, 씨있는 과일의 껍데기 등 섬유질(조섬유 함량이 높음)이 18% 이상이고 에너지함량(지방, 단백질 등)이 적은 사료로 가축, 특히 소 등 반추동물에게는 생리적으로 배합사료 등과 함께 필수적으로 급여되어야 하는 사료임

- 첫째, 공익증진직불제의 하나인 경관보전직불제를 활용하여 조사료 작물이면서 준경관작물 (청보리, 밀, 보리 등)의 재배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초지법」에 따른 초지를 적극 활용하는 등 조사료 재배지 확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국내산 조사료 품질 제고를 위해 조사료 등급제를 통해 생산된 조사료 품질에 따라 조사료 생산 및 제조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유제범 ☎ : 02-6788-4588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 044-201-2356

폐사가축 신고 등 이력정보 관리 철저

1 현황

- 가축 및 축산물 이력추적제는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쇠고기), 돼지(돼지고기), 닭(닭고기), 계란, 오리(오리고기)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음
 - 도입 경과: 쇠고기는 2004년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시범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²⁸³⁾ 단계적인 법개정을 통해 돼지고기는 2014.12.28.부터 전면실시,²⁸⁴⁾ 닭과 오리 고기는 2018.12.31.부터, 계란은 2020.1.1.부터 시행됨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등에 따라 구제역 등 전염병으로 살처분한 소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²⁸⁵⁾ 일부 지자체²⁸⁶⁾는 가축전염병 외의 사유로 일반 폐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사업 계획’ 등에 따라 폐사 가축의 렌더링²⁸⁷⁾ 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등에 따라 농장경영자는 소가 출생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5일 이내 신고하고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²⁸⁸⁾를 부여받아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에 소에 부착해야 하며, 소가 폐사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5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데, 동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등이 개체식별번호 부여, 출생 및 폐사 신고 접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그리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

283) 2007년 12월 21일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제정·공포

284) 2014년 12월 28일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돼지에 대하여 도입

285) 최근 3년간(2018~2020년) 살처분 보상금으로 총 2,435억 원(2018년 799억 원, 2019년 1,043억 원, 2020년 593억 원)을 지급함

286)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가평군·안성시·양주시·양평군·연천군·파주시·화성시

287) 렌더링(rendering): 가축 폐사체를 고온·고압으로 멸균하여 처리 후 기름 등으로 분리하는 열처리 방식

288)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라 ‘귀표등’이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이력관리를 위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포함한다] 등으로 기재하여 귀나 그 밖의 곳에 붙이거나 표시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 등을 말함

품부와 지자체는 농장경영자 등이 가축의 출생 및 폐사 신고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동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력관리제의 안정적인 정착 및 이력정보의 정확성 향상 등을 위해 ‘축산물 이력제 이행실태 평가계획’ 등에 따라 매년 축산농가,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이력관리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음
- 그런데 2018~2020년까지 3년간 전국 8개 지자체에서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소의 경우 전체 15,143건 중 258건이 ‘도축 출하’(32건)되었거나 ‘사육 중’(226건)인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가축전염병 외의 사유로 폐사된 소의 경우 전체 16,527건 중 908건이 ‘도축 출하’(97건)되었거나 ‘사육 중’(811건)인 것으로 이력관리시스템상 조회되는 등 사망한 소의 이력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음²⁸⁹⁾
 - 특히, 충청북도 등 5개 지자체의 경우 일반 폐사된 소에 대해 폐사 신고가 누락된 총 908건(도축 출하 97건+사육 중 811건)의 대부분(799건, 88%)을 차지하는 등 일반 폐사된 소의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폐사신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되거나 일반 폐사된 소의 폐사 신고가 이행되지 않고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사육 중’이거나 ‘도축 출하’로 조회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농장경영자가 살처분 보상금 또는 폐사체 처리비용의 지급을 신청할 때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7조 또는 지자체의 ‘폐사체 처리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살처분명령서 사본’, ‘폐사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시·군에 제출하면서 위탁기관(지역 축산업협동조합 등)에는 별도로 폐사신고를 하지 않아 이력관리시스템상 ‘사육 중’으로 조회되는 경우가 있었음
 - 그리고 농장경영자가 소를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 귀표가 분실된 소에게 이를 재부착하는 과정에서 분실된 귀표의 개체식별번호가 아니라 과거 폐사된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잘못 기재·부착하여 ‘도축 출하’로 조회되고 있었음
-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소에 대한 보상금을 시·군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면서 폐사신고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정하지 않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일반 폐사된 소의 처리비용을 지급하면서 폐사신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이력관리제의 이행실태를 평가하면서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되거나

289)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염병으로 살처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폐사하여 살처분 보상금 또는 폐사체 처리비용을 지원받은 총 31,670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원 감사(2021.3.17. ~ 4.16.)결과

일반 폐사된 소의 폐사신고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이 관리사각지대 발생의 주요인으로 볼 수 있음

- 이와 같이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되거나 그 외의 사유로 일반 폐사하여 렌더링 처리된 소의 이력정보가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사실과 다르게 관리되어 이력관리제의 신뢰가 저하되고, 최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발생빈도가 높은 실정임을 고려할 때 방역의 효율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폐사 가축 신고 등 이력정보 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향후 개선 및 논의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되거나 일반 폐사된 소 등 해당 가축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이나 폐사처리 비용 등을 지급하기 전에 농장경영자가 가축 폐사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의무적으로 폐사신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 등을 보완하고, 일반 폐사된 소의 처리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도 폐사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이력관리제 이행실태 평가 시에도 폐사신고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이력관리제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유제범 ☎ : 02-6788-4588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 044-201-2346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

1 현황

- 국내에서 반려동물용 사료에 관한 사항만을 위한 별도의 개별법은 없으며, 반려동물용 사료는 일반 축산 사료와 마찬가지로 사료의 수급안정,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료관리법」과 하위 법규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 동법에서 사료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단,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으로 정의됨
 - 사료는 크게 단미사료(單味飼料)·배합사료(配合飼料), 보조사료(補助飼料)와 조사료(粗飼料)로 구분할 수 있음
 - 시중에 유통 중인 반려동물용 사료제품은 반려견을 기준으로 원료의 품질과 가격수준에 따라 오가닉, 홀리시티, 슈퍼프리미엄, 프리미엄, 일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²⁹⁰⁾
 - 그리고 최근에는 고급사료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국산사료 점유율이 높은 대형 마트에서는 대부분 중저가 이하 제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음
 - 국내 법규에서는 반려동물용 사료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²⁹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 및 제6조²⁹²⁾에서 애완동물의 사료는 배합사료

290) 황명철·김태성,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NHERI 리포트』 제215호, 농협경제연구소, 2013.4.30., p.9.

291)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은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동물 등의 범위 및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 성분등록 및 표시사항,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범위와 기준, 함량·혼합제한, 표준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292) 제3조(그 밖에 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실험용 동물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물(마우스(mouse)·랫드(rat)·햄스터(hamster)·저빌(gerbil)·기니피그(guinea pig)·토끼·개·돼지 및 원숭이 등)
2. 애완용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개·고양이·토끼·페렛·기니피그·햄스터) 등 애완용으로 사용하는 동물
3. 사육하는 동물 : 원양새·청둥오리·곤충(누에 등)·멧돼지·곰·호랑이·사자·표범(재규어·퓨마 및 치타를 포함한다)·늑대·원숭이, 기타 동물원 등에서 사육하는 동물
4. 수산동물 : 양식용 수산동물 및 관상용 수산동물

제6조(배합사료의 용도 및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축용 배합사료
2.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3. 대용유용 배합사료

로 분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²⁹³⁾

- 반려동물용 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 전성분 표시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미비함

- 반려동물용 사료의 명칭 및 사용범위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7조(사료의 명칭)에 따른 [별표 3] 배합사료의 범위 제5호나목에 의거, 동 고시 제3조에 따른 동물명에 따라 성장단계 별로 구분하여 제조업자가 정하는데, 통조림 형태로 되어있는 사료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함

- 그 밖의 동물·어류용 배합사료(반려동물 사료 포함)는 그 명칭 앞에 “실험”·“애완”·“사육” 또는 “관상”을 표시하여야 함(예: 실험어린개, 애완어린개, 사육육성원양새, 관상어린금붕어)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점차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용 사료 시장도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용 사료 수출액도 증가추세임

- 반려동물용 사료 생산량은 2019년 기준 109,781톤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했고, 2020년 기준 반려동물용 사료 수출액은 6,749만 달러로 전년 대비 83.5% 증가했으며, 총 수입액은 2억 7,073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9% 증가함

- 최근 세계 반려동물용 사료 시장의 트렌드는 사료(feed)에서 식품(Pet food)으로, 반려동물의 인간화(Pet Humanization), 적극적인 소비자 참여, 시장 세분화 등이 진행되고 있음

- 그런데 국내 「사료관리법」 등 사료 관련 규정에는 반려동물용 사료에 관한 원산지 표시 의무, 전성분 표시 의무 등에 관한 규정 등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 및 품질관리 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21년에 실시한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용 사료 81개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 점검(2021.8.)’ 결과, 8개 업체, 10개 제품에서 중금속 허용기준 초과, ‘무보존제’ 표시위반, 사료 명칭 및 형태, 원료의 명칭, 제조연월일 등 포장의 무표시 사항 위반 등 「사료관리법」 상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²⁹⁴⁾

- 뿐만 아니라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에서 10인 이상 사업체에 한해 국내 반려동물용 사

4.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

5. 그 밖의 동물·어류용 배합사료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293) 참고로 일본의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서는 ‘애완동물용 사료’를 애완동물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294)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온라인 반려동물 사료 10개 제품 안전·표시사항 위반」, 2021.8.18.

료의 산업규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소규모 생산업체가 많은 국내 반려동물용 사료 산업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국내 반려동물용 사료 시장의 규모의 증가추세, 반려동물용 사료산업 규모 파악의 한계, 일본의 별도 입법 사례를 고려할 경우 향후 반려동물용 사료에 관한 별도의 안전 및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별도의 안전 및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반려동물용 사료 유통 및 판매업자의 안전준수 의무, 원산지 표시 의무, 전성분 표시 의무 규정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일본의 경우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8년 6월 18일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일반 가축사료와 별도로 반려동물용 사료에 대한 안전을 관리하고 있음
 - 미국과 EU의 경우 반려동물용 사료에 관한 별도의 개별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일반 식품법규와 사료위생법규 등 다양한 법규에서 그 목적에 맞게 관련 규정이 분산되어 있으며,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사료협회 등 관련 단체 등에서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다만 미국과 EU의 경우와 같이 별도 입법이 아닌 기존 식품관련 법규, 사료관련 법규에서 각 개별법규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맞게 관련 규정이 분산되어 있는 사례도 있고, 현행 「사료관리법」과 하위 법규에서 반려동물용 사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본다면, 별도 입법 방안을 추진할 경우에는 입법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유제범 ☎ : 02-6788-4588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 044-201-2371
축산환경지원과
☎ : 044-201-2359

반려동물 보험 대책

1 현황

-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병원진료비 부담에 대한 소비자의 애로사항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동물병원별 진료비 격차가 크고,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등 불투명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음²⁹⁵⁾
- 이에 정부는 최근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동물의료심사평가원(가칭)’ 설립, 동물복지공단 설립을 통한 진료비 관리, 동물보험 활성화 등을 제시했음²⁹⁶⁾
- 그러나 이와 같은 반려동물 진료비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발표는 이번이 처음 시도된 것은 아니며, 반려동물의료비 보험수가제도, 반려동물보험에서 인(人)의료보험과 같은 공적보험제도, 진료비 상한제 및 표준진료비 도입과 반려동물 의료발전 협의회 구성 등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하여 추진되지 못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소비자 부담완화 방안과 관련하여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2017.12.)’의 연구용역도 실시함
 - 1975년 도입된 ‘동물병원 진료보수기준’은 1999년 2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일명 ‘카르텔일괄정리법’이라 함)의 개정에 따라 폐지되면서 현재와 같은 진료비 체계가 적용됨
- 국내 반려동물 사육 가구별 반려동물 진료비 지출 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작성되지 않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비 중 병원비는 마리당 월평균 4.25만 원으로 조사됨²⁹⁷⁾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소비 실태 조사(2017.10.)’에 따르면 반려동물 1마리당 연간 평균 진료비는 개 267,143원, 고양이 194,633원으로 조사됨²⁹⁸⁾

295) MBC, 「보험수가 없는 동물병원...진료비 비교도 못 하나」, 보도자료, 2019.1.28.

296) 박병국, 「반려동물판 심평원 생긴다...尹펫보험 탄력」, 헤럴드경제, 2022.6.10.

297) 반려동물 양육자 1,296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이며, 반려견은 마리당 월평균 5.21만 원임(농림축산식품부, 「2021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2021.11., p.22.)

- 연간 진료 횟수는 개 3.4회, 고양이 2.9회로 조사됨
- (사)소비자교육중앙회에서는 반려동물 진료비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동물병원별 진료비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격차는 진료행위별과 질병별로 200~700% 차이가 났음²⁹⁹⁾
- 한편 국내에는 국가차원의 ‘반려동물 질병보험’ 제도는 실시되지 않고, 민간보험영역에서 출시되고 있는 ‘반려동물 질병보험’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 보험상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인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하지 않고,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상품의 일환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보험상품)에 동물보험계약으로 분류됨
- 국내 반려동물 질병보험 시장은 미개척 분야로 아직 본격적으로 시장 활성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나, 최근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고, 관련 보험 상품을 출시하는 보험사도 증가하는 추세임³⁰⁰⁾
 - 농림축산식품부의 제출자료(2021.9.17.)에 따르면 2014~2020년의 반려동물 민간보험 가입건수는 2015년 1,826건에서 2020년 33,621건으로 급증하였고, 반려동물 등록제에 따른 등록동물수 기준 보험가입률은 2015년 0.18%에서 2020년 1.45%로 증가함
 - 그러나 국내 민간보험 가입률은 등록동물수 기준으로 2017년 0.22%로 일본 4%, 영국 20%, 미국 10%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 민간차원의 반려동물보험제도가 활성화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人)의료 체계’와 같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표준진료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국내에는 이와 같은 반려동물 표준진료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그리고 그간 민간의 반려동물보험은 높은 손해율로 판매가 지속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통일된 표준상병코드의 부재, 동물등록제 미정착(개체식별방법 부재), 일부 소비자 및 수의사들의 허위 및 과잉 청구, 병원 간 큰 진료비 편차로 인한 진료비 예측의 어려움 및 과다청구 판단의 어려움, 홍보 부족, 고가의 보험료 및 자기부담금, 수의사들의 협조 부족 등이 문제가 됨

298) 지인배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연구보고 R8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10., pp.81~161.

299) (사)소비자교육중앙회 보도자료, 「반려동물판매가격 최고가와 최저가 5.8배 가격 차이나, 동물병원비용 가격 천차만별」, 2017.1.5.

300) 2017년 3개사(롯데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에서 2018년 4개사(한화, 메리츠,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가 추가되어 총 7개사로 확대되었는데, 반려동물 중 개에 대한 상품이 주를 이룸

2 향후 논의 사항

- 따라서 반려동물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보험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첫째,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보험손해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진료와 관련한 표준 진료코드 체계 개발이 필요함
 - 둘째, 동물등록제와의 연계를 통해 보험가입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의 동물등록률은 2020년 기준 약 38.6.%로 추정되며, 일본 약 70%, 미국 뉴욕 주는 약 50%(2018년 기준)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해 동물등록 시 광견병 예방 접종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및 등록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현재 다양한 보험상품이 부족하여 반려동물 주인이 대부분 비싼 수의료 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다양한 종류의 보험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한편 국내와 마찬가지로 해외의 경우에도 반려동물 질병보험으로 국가에서 주도하는 공적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민간보험 상품이 출시되고 있음
 - 축산분야에서 도입하고 있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가축질병보험제도와 같은 공적정책보험을 반려동물보험에 도입하여 국가에서 보험제도를 지원하는 문제는 먼저 반려동물 보험의 공공성 및 재원 마련에 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재원 마련의 경우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고려할 수도 있는데, 독일의 경우 일부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의 하나인 개보유세(Hundesteuer)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유제범 ☎ : 02-6788-4588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 044-201-2371
축산환경지원과
☎ : 044-201-2359

해양수산부

CPTPP 수산분야 대책

1 현황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은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17.1.) 이후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칠레, 베트남, 페루,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2018년 3월 8일 정식 서명한 다자간 무역협정임
- CPTPP는 일본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나라는 올해 4월경 CPTPP 가입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가입 추진을 공식화함(2021.12.13. 기획재정부)
 - CPTPP 참가 11개국의 무역 규모는 전 세계 무역액의 15% 수준이며, 이들 참가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입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의 약 23%, 전체 수입의 약 25%에 달함
- CPTPP는 여타 관세 철폐 품목 비중(개방률)이 95~100%로 2022년 2월부터 발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약 85%와 비교해 개방 수준이 높는데, 특히 수산물의 경우 개방률이 100%에 달함
 - 수산물에 포함된 상품분야의 개방률(자유화 수준)은 95~100%(품목수 기준)의 높은 수준으로 주요 가입국의 개방률은 다음과 같음
 - (일본) 95.0%, (베트남) 97.9%, (멕시코, 칠레, 페루, 캐나다, 호주) 99% 이상,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100%
 - 품목별 관세 철폐율은 공산품은 99.8% 이상, 농산물은 95% 이상, 수산물은 100% 임
 - 수산물은 일본(98%)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이 100% 관세 철폐임

- CPTPP 가입에 따른 어업피해 규모의 경우 가입협상 과정에서 관세 양허 수준 등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 피해규모를 정량적으로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관세 양허 수준이 다른 FTA 등에 비해 높고 특히 수산보조금 제한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CPTPP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수산물 시장의 개방률, 즉 자유화 수준(관세 양허 수준)이 95~100%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CPTPP 가입 시 국내 시장에서 수입 수산물 확대에 의한 수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됨
- 특히 CPTPP의 경우 환경 챕터에서는 수산자원 남획과 과잉생산에 기여하는 어업용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협정 가입 시 관세 양허로 인한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수산보조금 지급 제한에 따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CPTPP의 환경 챕터에서는 환경 관련법 및 정책을 채택하는 각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제공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자간 환경협정 등 국제적 약속을 확인하고 있음
 - 그러나 해양 환경보호를 위해 불법어업(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을 야기하는 보조금, 과잉어획의 상태 등 어족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산보조금 금지조항 등을 신규로 도입하고 금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3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음
 - CPTPP는 과잉어획에 대한 기준을 어업자원이 '최대지속가능생산량(Maximum Sustainable Yield)'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어획량을 제한해야 하는 어종을 규정하고 이 어종에 대하여 남획(濫獲)을 야기하는 특정 유형의 수산보조금 제공 등은 구속성(拘束性) 조항으로 다루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을 많이 지원하는 국가 중의 하나로 수산업에 있어 수산보조금의 의존도가 높음
 - 수산보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업용 면세유 지원금의 경우 연간 6,000~7,000억 원에 달함
 - 어업용 면세유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 보조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각종 영어자금, 수산경영안정자금, 어선현대화 사업 지원금 등도 있음
- 그리고 중국이 2021년 9월 CPTPP 가입을 신청하였는데, 향후 중국의 가입 여부에 따라 수산분야 영향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CPTPP 협정과 관련하여 향후 대책 등 논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CPTPP 협상 과정에서 국내 민감품목에 대한 충분한 관세 철폐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면세유 지원 등 수산보조금 지급 유예기간 확대와 국내 수산자원관리 정책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영어자금 등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함
 - 셋째, 면세유 관련 수산보조금 지급 제한에 대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어선현대화 사업을 통해 연료저감형 어선 및 기관 개발·보급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유제범 ☎ : 02-6788-4588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 : 044-200-5380·5384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1 현황

- 국내 수산업은 대내적으로 어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과잉 어획 등에 의한 수산자원 감소와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생산량 감소, 설비 낙후 등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인해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
- 대외적으로는 연이은 FTA 발효 등 수산물 시장개방 가속화, 국제적인 수산규제 강화, 수산자원 자국화 심화, 중국 등 신흥 수산강국들의 원양산업 확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
 - 국내 전 산업의 총부가가치액에서 어업의 부가가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0.38%, 2005년 0.26%, 2010년 0.3%, 2015년 0.27%, 2016년 0.19%, 2019년 0.17%, 2020년 0.19%, 2021년 0.16%로 감소 추세임³⁰¹⁾
-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환경에 따라 수산물 생산·가공·판매 중심의 기존 수산업으로는 그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어, 수산분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그 하나로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수산기자재산업은 기계, 전자, 정보통신 등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으므로, 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을 통한 수산업의 첨단화,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할 것임
- 수산기자재산업은 수산업의 연관산업으로서 시장규모는 국내 약 5조 원, 세계 약 50~180조 원 수준이며, 향후 수산물 소비량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따라 성장가능성이 높음³⁰²⁾
- 수산기자재 시장규모와 향후 발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이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됨
 - 수산기자재산업의 전후방연쇄효과는 1.330~2.258, 고용유발계수는 5.5~16.4로 나타나 기존 수산물 생산의 수산업(수산물)의 전후방연쇄효과 1.712보다 높았음³⁰³⁾³⁰⁴⁾

30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최종 검색일: 2022.6.8.>

302) 유제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입법 및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7.8.1., p.2.

303) 엄선희·조정희,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기본연구 2014-1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12., p.114.[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2(연장표) 활용·추정]

304) 한국은행의 '2012 산업연관표(연장표)'로부터 기존 수산업(수산물)의 전후방연쇄효과를 살펴본 결과, 영향력계수는 0.915, 감응도계수는 0.797로 나타나, 기존의 수산업의 전후방연쇄효과 보다 수산기자재산업의 전후방연쇄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국내에서는 수산기자재산업을 단순히 수산물 생산에 필요한 부수적인 산업이라는 인식과 관심 부족으로 산업이 침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도 이뤄지지 않는 등 국내 수산정책에서 소외되어 왔음
- 한편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2016.8.30.; 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0.9.6.)이 발의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³⁰⁵⁾³⁰⁶⁾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수산기자재 거래시스템 설치·운영, 신기술 개발·보급 지원, 임대사업 촉진, 수출 지원, 사업 추진 단체의 설립 및 지원
 - 수산기자재 성능과 안전성 검정, 수산기자재의 사후관리,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실시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산기자재산업진흥원 설립

2 향후 논의 사항

- 수산기자재산업의 법적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정확한 정기 실태조사, 국산 수산기자재 보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수산기자재 거래 시스템 구축, 규격화 및 표준화, 품질검사, 국제 수준의 인증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 산업육성을 위한 입법 및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양식산업발전법」상 양식기자재와 관련한 규정, 관련 정책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유제범 ☎ : 02-6788-4588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 044-200-5426

305) 제19대 국회에서도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2014.12.10.)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30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의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다른 계류 법안인 「어구관리법안」(2016.12.23. 정부 제출), 「양식산업발전법안」(2016.12.28. 유기준의원 대표발의)과의 일부 규정이 중복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음

수산부산물 범위 확대

1 현황

-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2021.7.20.)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2년 7월 21일 시행됨
 - 동법에 따라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하는 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수산부산물을 배출하는 자는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서 배출하고, 이를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처리업체를 통해 식품·비료·사료·화장품·의약품 등 완성품의 원료, 공유수면 매립재, 건축물 자재, 탈황제, 소석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가 동법 시행을 위해 입법예고(2022.5.10. ~ 5.31.)한 동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시행령안 제2조(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에 패류 중 굴, 전복(오분자기 포함), 홍합(담치 포함), 꼬막(피조개 포함), 바지락, 키조개에서 단순가공공정을 거쳐 식용으로 사용되는 내용물과 그 밖의 혼합물을 제거한 껍데기로 한정하여 규정함
 - 동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수산부산물'을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으로 정의하여 어류 부산물, 해조류 부산물 등 모든 수산부산물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법예고된 동법 시행령안의 수산부산물의 범위에는 '패각'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동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 수산부산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임
- 동법이 굴 패각의 처리 문제 해결 방안에서 마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에 있어 수산부산물 중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는 어류 부산물이 재활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동법의 당초 입법취지를 반감시키는 문제가 있음
- 전체 수산부산물 발생 규모는 연간 약 85~130만 톤 수준이며, 이 중 굴 패각은 약 28만 톤, 전체 패류 부산물은 약 48만 톤으로 패류 부산물을 제외한 어류 부산물 등 수산부산물의 발생량은 패류 부산물의 약 2배 이상 수준이며, 매년 이와 같은 규모의 수산부산물이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임³⁰⁷⁾

- 어류부산물에는 칼슘, 철분, 단백질, DHA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건강기능식품, 식품 및 의약품의 원료, 비료 및 사료의 원료 등으로 재활용 및 자원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은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따라서 향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어류 및 해조류 부산물 등도 동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포함시키고, 이들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이고 산업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자원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수산부산물의 발생 및 처리 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및 통계 관리가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부패성이 강한 어류 부산물 등 수산부산물의 별도 분리수거 및 선도관리 등 자원화 시스템 구축, 재활용 및 자원화 관련 연구개발 촉진, 수요 창출 방안 마련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유제범 ☎ : 02-6788-4588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 044-200-5633

307) 유제범·김경민, 「수산부산물(水産副産物) 발생 및 처리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향」, 『NARS현안분석』, 제118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2.20.

수산물품질관리 강화

1 현황

- 해양수산부의 수산물품질관리 사업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안전성조사, 인증제 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대표적인 세부 사업으로는 1)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운영 사업, 2)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제 운영 사업 등이 있음
 -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운영사업은 국산과 수입산 수산물의 공정한 가격관리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산물 취급업소(가공업체, 음식점 등)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 등 단속·점검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유통주체별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음
 - 수입업체의 경우, 신고의무대상 지정 수산물 수입 시 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의무대상자로 등록하고 유통업자에게 양도 후 거래내역을 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유통업자에게 신고의무 대상자임을 통보해야 함
 - 유통업체의 경우 신고의무대상 지정 수산물을 유통 전 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의무대상자로 등록하며, 유통·소매업자에게 양도 후 거래내역을 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하위단계 유통업체에게 의무대상자임을 통보해야 함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제 운영 사업은 관세청의 해양수산부로의 업무이관 합의(2018.10.)에 따라 주요 수입 수산물 유통관리 강화를 위한 이력신고 시스템 고도화 및 신고누락 여부 확인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 제31조에 따르면,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이하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신고하여야 함
 - 이에 따라 2021년 기준 천일염(식용)·뱀장어·가리비·방어 등 총 17개 품목이 유통이력수입 수산물로 고시됨(「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 그런데 동 고시 제4조에 따르면,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지정기간은 최대 3년³⁰⁸⁾의 범위 이내로 하되 만료 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음
 - 또한 수산물유통법은 수산물의 유통이력장부의 보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308) 해양수산부는 2021년 17개 품목을 고시할 때 유효기간을 2년(2021.8.1.~2023.7.31.)으로 함

보관 의무 규정은 수입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수입자·유통업자에게만 적용되고 동 고 시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자는 적용이 제외될 뿐만 아니라 보관 자료의 범위 및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일본산의 경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가능성이 크고, 원양어선수산물의 경우에도 일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우려가 있음³⁰⁹⁾
- 반면, 농산물의 경우 축산물을 제외한 수입농산물은 「관세법」 제240조의2에 따라 1년간 거래명세 자료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축산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수산물품질관리 강화 측면에서 향후 수입수산물 신고제 및 수산물이력제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수입수산물 의무신고 품목지정의 유효기간 및 연장, 원산지 거래증빙자료 보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유통이력수입수산물별 유통이력 기간의 지정 및 연장, 원산지 거래명세서 등 거래 증빙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수산물이력제,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제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 제도들은 수산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 및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호연계 추진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제도별로 각각 대상, 주요 내용 등이 상이한데, 특히 유통이력 정보의 관리에 있어서 국내산 수산물은 이력제시스템³¹⁰⁾을 통해 관리되는 반면, 수입산 수산물은 수입유통이력 전산시스

309) 농수축산신문, “이력추적가능 수산물 8%에 불과”, 2021.9.27.

310) 해양수산부는 2020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구축[1단계: 관세청(UNI-PASS)의 수입수산물 유통 DB를 이관하여 단순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및 2021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구축[2단계: 시스템 운영관리와 사용자 업무 활용 확대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함

템311)을 통해 별도 관리되고 있고, 이들 시스템 모두 수산물유통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현재 정보관리대상은 각기 달리하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추진되고 있음

- 이처럼 이력관리 수산물이 국내산의 경우 수산물이력관리제로, 수입산의 경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제를 통해 그 대상품목, 정보관리시스템 및 관리기준 등에서 각각 상이하게 운용되는 것은 효율적인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수산물의 이력관리제는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수산물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하면서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음
- 따라서 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 대국민 신뢰도 제고 및 원산지 허위표시로 인한 국내산 수산물 시장의 피해방지를 위해 유통수입정보 및 이력추적의 체계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 통합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작성 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유제범 ☎ : 02-6788-4588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 044-200-5441

311) 유통신고 업체의 신고, 업무담당자의 신고여부 확인 및 이력조회,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재고관리, 이력내역 조사, 유통이력 분석, 행정처분, 유통신고업체 업무지원 콘텐츠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임

항만배후단지 공공시설 관리 주체 설정

1 현황

- 항만배후단지³¹²⁾를 개발하는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5조를 준용하여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되는 데³¹³⁾ 현재 일부 항만배후단지 내 도로 등의 공공시설은 항만공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일부 도로의 경우 「항만법」 제66조, 그리고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4호 및 제36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 간 위수탁 계약을 통해 항만공사가 배후단지 내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들 공공시설이 지자체로 이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며³¹⁴⁾ 이에 대해 지자체는 해당 시설이 항만시설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임
 - 항만공사는 불법 주정차, 무단적치물 방치, 쓰레기 투기 등과 관련한 단속행위가 불가능하고, 도로관리의 전문기관이 아니며, 민원 처리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 등의 문제로 도로 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만 진입도로 등 일반인들과 같이 사용하는 공공용 도로의 경우 지자체가 관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지자체는 임항도로³¹⁵⁾는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³¹⁶⁾이므로 도시·군계획시설 중 ‘항

312) 항만배후단지란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을 의미함(「항만법」 제2조제11호)

313) 「항만법」 제60조제2항

314) 조선영, “부산항 신항 6차선 임항교통시설 관리 '사각지대'”, 『노컷뉴스』, 2021년 8월 23일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611977>>

315)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해양수산부예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임항도로”는 항만구역 내 화물의 주 수송도로로서 항만터미널과 배후부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터미널에 연결하여 설치되는 도로를 말한다.

316) 「항만법」 제2조제5호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가. 기본시설

3)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나. 기능시설

다. 지원시설

라.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마. 항만배후단지

만'317)으로 결정하고 해양수산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함

- 즉, 항만배후단지 내 해당 공공시설이 어떤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지와 공공시설 관리에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이 공공시설의 지자체 이관 논란의 원인으로 보임
 - 해당 시설이 도시·군 계획시설 상 '항만', '도로(또는 녹지)'로 중복 결정된 경우 지자체는 해당 시설이 '항만'이라는 이유로 해양수산부의 관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도로(또는 녹지)'로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비용 및 인력부담 등의 사유로 이관을 거부하고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항만배후단지 조성 단계에서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등 관련 기관 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공공시설의 성격과 관리주체가 결정될 필요가 있어 보임
 - 국토교통부는 항만배후단지 내 도로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로'로 결정 고시된 경우 해당 지자체가 관리하여야 하며, '항만'으로 결정 고시된 경우 국가관리 항만은 「항만법」에 따라 관리청³¹⁸⁾인 해양수산부가 관리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임
 - 해양수산부는 준공 전 시설의 경우 공공시설 이관을 위한 지자체 협의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지방재정 부담 증가가 이관 거부의 근본 원인이므로 이관한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구세주 ☎ : 02-6788-4606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 : 044-200-5921

317)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318)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관리청"이란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해양수산부장관

나.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연안여객선의 안정적 운영

1 현황

- 현재 정부는 「해운법」 제15조³¹⁹⁾에 따른 보조항로 지정·운영과 함께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지원사업은 민간선사가 운항 중인 항로 중 1) 도서-육지 간 당일 이동이 가능하도록 도서에서 출발하거나 증회 운항하는 항로(1일 생활권 구축 항로) 또는 2) 적자가 지속되어 단절될 우려가 있는 항로(연속 적자항로)에 대해 운항 결손액을 국가·지자체가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는 사업임
 - 1일 생활권 구축 항로의 경우, 추가 운항한 부분에 대하여 국가가 운항결손액의 50%, 관할 지자체가 50%를 부담하여 운항결손액을 100% 지원함
 - 적자항로의 경우, 최근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항로에 대하여 국가가 운항결손액의 70% 이내를 지원함

| 2022년 지원대상 항로 |

항로명	항로 유형	관할 지방청
백령-인천	1일 생활권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덕적	적자	
대천-외연도	1일 생활권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가거도-목포	1일 생활권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상태서리	적자	
거문-여수	1일 생활권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함구미	적자	
통영-용초	적자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319) 「해운법」 제15조(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한다)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보조항로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향후 논의 사항

- 연안여객선은 도서민의 필수 교통수단이자 국민의 보편적 이동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대중교통수단³²⁰⁾이므로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함
 - 2022년 기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지원 사업의 예산은 약 24억 원 수준임
- 도서지역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의 지원뿐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도 중요하며,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도 있음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³²¹⁾에서는 국가와 함께 지자체도 도서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일례로 신안군의 경우, 2019년부터 하의~도초, 지도~병풍, 증도~자은 등의 항로에 대해 여객선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음³²²⁾
 - 공영제 도입 시 공영제 대상 항로의 선정, 여객선 운항과 관리에 있어서 국가 책임의 범위 설정, 조직 체계 구축, 재정 부담의 규모, 지역 주민과 항로 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해양수산부는 2021년 8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현황 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발전방안 및 공영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구세주 ☎ : 02-6788-4606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 044-200-5731

- 32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32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 322) 안관욱, “전남 신안군, 여객선 공영제 확대”, 『한겨레』, 2020년 7월 22일자.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954710.html>>; 홍일갑, “신안군 역발상 행정 ‘여객선 공영제 호평’”, 『전남일보』, 2021년 6월 10일자. <<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1060911295499796>>

친환경선박 건조

1 현황

- 최근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를 중심으로 해양에서의 선박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임
 - 2018년 4월 IMO는 2015년 12월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상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준수하기 위한 ‘IMO 초기전략’을 채택함
 - 선조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추가적·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선박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 연간 총배출량을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50% 감축함
 - 2021년 6월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rom Ships, MARPOL)』에 따라 2023년 1월부터는 현존선에 대한 ‘선박에너지효율’ 및 ‘선박운항 탄소집약도’에 대한 기준을 만족해야 함³²³⁾
-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부터 시행 중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해야 함(법 제3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함(법 제5조)

2 향후 논의 사항

- 해양수산부는 2021년 1월 ‘2021년 한국형 친환경선박(Greenship-K) 보급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323) 선박에너지효율지수 및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등의 도입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2112751호, 최인호의원 등 10인, 2021.9.30. 발의)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임

- 시행계획에서는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23척(해양수산부 18척, 지자체·공공기관 5척)의 관공선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함
 - 공공부문 친환경선박 전환 계획 대상 23척에 대해 2척은 준공되었고 21척은 건조 중으로 계획 대비 100% 실적을 보임
 - 민간부문의 친환경선박 전환 확산을 위해 16척(외항선박 13척, 내항선박 3척)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친환경설비를 장착하는 화물선 86척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총 102척에 대한 전환 계획을 수립함
 - 민간부문 친환경선박 전환 계획 대상 102척 중 보조금 지급 대상은 16척 전부에 대해 지급하였으나, 지원금은 전체 86척 중 38척에만 지급되어 전체 계획 대비 52.9%의 실적을 보임
- 2022년 1월 수립된 ‘2022년 한국형 친환경선박(Greenship-K) 보급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6개월이 남은 현시점에서 살펴보면, 2021년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은 추진실적이 우수한 데 비해, 민간부문은 계획의 달성 여부가 불투명해 보임(2022년 6월 기준)
- 공공부문 친환경선박 보급은 계획 대상 77척 모두 건조 중임
 - 한편 민간부문은 건조 보조금의 지급은 계획 21척 대비 25척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나, 친환경설비 장착 지원은 계획 대상 377척 중 42척에만 지급되어 전체 계획 대비 16.8%의 실적을 보이는 중임
- 기존 내연기관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조속히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임
- 특히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부문의 참여가 저조하므로 지원금액 및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작성 자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김진수 ☎ : 02-6788-4603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 044-200-5838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1 현황

- 해양수산부는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었으나, 육상에서 발생하는 골패각을 재활용·처리하지 못하고 미처리·방치되는 양이 증가하여 2019년부터 폐패각을 동해로 해양배출하고 있음
-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량은 2016년 34.5천 m³, 2017년 28.9천 m³, 2018년 26.9천 m³까지 감소했으나, 골 패각의 해양배출이 시작된 2019년에는 59.2천 m³, 2020년에는 115.9천 m³으로 2018년 대비 약 4.3배 늘어남
- 2020년의 경우, 전체 폐기물 해양배출량 115.9천 m³ 중 78.2%에 해당하는 90.6천 m³이 패각류임

|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현황 및 해역 |



자료: 해양수산부

- 이에 국회는 2021년 7월, 폐패각을 비롯한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022.7.21. 시행)을 제정함
-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5조), 수산부산물의 발생량 및 재활용 실적 조사(제6조),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의무화(제7조),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제9조),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제16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전 세계적으로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발전을 위해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를 확대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도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수산부산물 대상,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자 범위, 분리배출 기준 및 절차, 시·도지사의 지원대상 및 범위,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기준, 재활용 유형, 통계조사 방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시행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함
- 향후 해양수산부, 환경부, 지자체 등 폐기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수립하여 육상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임
 - 지역주민, 수산부산물 배출자, 폐기물·수산부산물처리업자 등 이해당사자 간의 협업이 필요함
 - 수산부산물과 잔류유기물, 코팅사 등 다른 폐기물을 분리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양식업자의 노력과 더불어 수산부산물에 함유된 다양한 유용성분을 활용하기 위한 R&D 투자가 지속되어야 할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김진수 ☎ : 02-6788-4603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 044-200-5633

연안침식 대책

1 현황

- 동해안을 중심으로 소규모 어항을 비롯하여 제방, 호안 등 인공구조물이 지속해서 건설되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수면 온도 및 수위가 상승하는 등 인위적·자연적 외부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연안침식이 가속화되는 추세임
 - 최근 10년간(2012~2021년) 연안침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강원도, 경상북도, 경기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순으로 연안침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연안침식 등급 현황 |

[단위: 년, 개소, %]

구분	총개소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침식우심률
2012	172	2	44	102	24	73.3
2013	225	2	81	129	13	63.1
2014	250	10	131	94	15	43.6
2015	250	6	95	136	13	59.6
2016	250	1	104	115	30	58.0
2017	250	3	109	116	22	55.2
2018	250	6	95	137	12	59.6
2019	250	10	87	136	17	61.2
2020	250	4	90	113	43	62.4
2021	360	9	196	130	25	43.1

주: 1) A등급: 양호, B등급: 보통, C등급: 우려, D등급: 심각

2) 침식우심률 = (C등급 + D등급) / 총개소 × 100

자료: 해양수산부, 『2021년도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 2022.4.

- 연안침식의 영향으로 해안가 주변의 백사장이 사라지고, 해안가 절벽 및 해안도로의 붕괴위험이 증가함
 - 더불어 천연방재시설이라 할 수 있는 모래해안이 급격히 사라짐에 따라, 연안 지역이 해일, 풍랑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해짐

2 향후 논의 사항

- 연안침식에 대해 개별 피해지역 복구에 대한 단기대책과 더불어 중장기 대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 연안침식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적극적으로 방어하되,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곳은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억제하고 해안선을 후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 「연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임의로 시행되는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자연해안을 지속적으로 조성·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연안침식의 원인을 차단하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안침식 조사지점을 확대하여 연안침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함
 - 연안에 위치한 주택, 상가, 산책로, 공원 등은 연안과 육상이 혼재되어 있어, 다수의 기관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작성 자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김진수 ☎ : 02-6788-4603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 : 044-200-5985

농촌진흥청

농기계 사고 예방

1 현황

- 지난 5년(2016~2020년) 간 연평균 1,237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인명 피해도 연평균 1,009명에 이룸³²⁴⁾
 - 영농 작업이 활발한 봄철과 가을철에 사고 발생빈도가 많기는 하나, 사고의 79.7%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만큼 최근에는 대체로 겨울철을 제외한 전 월에 걸쳐 농기계 사고가 빈발하는 실정임
 - 이로 인해 같은 기간(16~20년)에 연평균 93명이 사망했을 만큼 농기계 사고는 인명에 매우 위협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쉬움
 - 특히 농기계 교통사고의 경우 평균 치사율(15.5%)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2.2%)의 7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³²⁵⁾
-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해마다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경찰청, 소방청 등 여러 기관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준에서 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 중인 예방 활동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 가령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이 매년 농번기에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일선 지자체나 농가 대상의 홍보와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체로 캠페인성 활동에 가깝고, 기관별 실적은 쌓여도 바쁜 영농철에 실제 현장 농가가 주되게 체감하거나 주목할만한 이슈로까지는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농촌진흥청도 통계 정비나 간행물 발간, 관련 R&D 등을 통해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324)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본격적인 영농기, 농기계 사고에 주의하세요」, 2022.4.14.

325) 오주석 외, 「농기계 교통사고 특성에 따른 안전대책 및 정책제언」, 『교통연구』 제28권제2호, 한국교통연구원, 2021.6., p.35.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오고 있지만 연구성과의 현장 보급이나 지역 농정 담당자·농가 등의 인식 개선 등이 여전히 관건인 상황임

-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농업인 안전사고 관점에서의 농기계 사고 예방과 관련된 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많은 경우 농촌진흥청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정책보험인 '농기계종합보험'의 경우에도 주요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나 보험사업자 등에게 위탁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리에 주력하는 모양새임

2 향후 논의 사항

- 영농철에는 일이 몰리고 분주한 탓에 역설적으로 농기계 사고 가능성에 대한 농가의 주의가 분산될 수도 있는 만큼, 농한기 교육이나 농업 현장과 일상의 여러 양상 속에서 쉽고 반복적으로 농가가 사고 예방 활동과 정보를 접하고 자연스럽게 안전수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2022.6.10.)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6조의3 신설)되어 농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보급, 교육, 홍보 등의 역할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부여되었으므로(시행 2022.12.11.)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요청된다고 할 것임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종합보험'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도 농가의 물적·인적 손해 보장을 위한 보험 가입률 제고 및 사전적 사고 예방을 통한 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현재 농기계 사고와 관련된 '통계' 정도만 유관기관 간에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농기계 사고 예방과 사각지대 관리 등을 위해 유관기관(부처)의 실질적인 협업·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 반사판(반사지) 설치나 IoT(사물인터넷) 기반 농기계 교통사고 감지·알람 시스템 등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아이디어와 연구개발 성과가 신속히 현장에 적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장치 등의 구체적인 보급 및 예산 확보 계획도 뒤따라야 할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김규호 ☎ : 02-6788-4593

관련부처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
☎ : 063-238-4171

치유농업의 정착과 성장 지원

1 현황

- 2021년 3월부터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치유농업법)이 시행되면서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본격적인 치유농업 육성 정책이 실시되었으며, 2021년 기준 234개소(농장형 191개소, 마을형 43개소)의 치유농업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 치유농장(마을) 육성현황('17~'21) |

구분	합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광역시
합계	234	40	36	10	43	29	29	10	27	2	8
국비 지원	78	10	12	8	5	10	12	7	11	2	1
지방비 지원	156	30	24	2	38	19	17	3	16	-	7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자료(2022.6.20.)

- 지난 4월에는 치유농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2~26)」(이하 종합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치유농업 연구 개발, 성과 확산, 기반 구축, 사업화 촉진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13개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연구 개발) ①자원발굴 및 특성 분석, ②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 ③프로그램 효과검증 및 원리 구명 연구 확대, ④신산업 창출 및 사업 모델 개발
 - (성과 확산) ①거점기관 및 확산체계 구축, ②개발기술 보급, ③전문인력 육성
 - (기반 구축) ①실태조사 및 종합정보망 구축, ②거버넌스 구축, ③법·제도 기반 연구
 - (사업화 촉진) ①치유농업 품질 관리 체계화, ②창업지원 및 개발 기술의 현장 실용화, ③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국제협력 교류 활성화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치유농업은 보건·복지정책의 사전적 예방 중심으로의 변화 등과 맞물려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산업임
 - 농촌진흥청은 5년의 종합계획 시행 기간(22~26년) 동안 치유농업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2,545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349억 원, 고용유발효과 1,889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³²⁶⁾

2 향후 논의 사항

- 치유농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번에 수립된 첫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우선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치유농업 모델을 최대한 포괄하면서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한다는³²⁷⁾ 치유농업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치유농업시설 인증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기존에 추진중인 도시농업과 연계하여 옥상 등 자투리 공간에 소규모로 조성 가능한 '시설형'과 경작지, 텃밭농장 등에 조성 가능한 '농장형'으로 구분되는 '도시형 치유농장 모델'을 통해 치유농업 기반조성을 도모하고 있음³²⁸⁾
- 또한 치유농업시설 내 농지 활용과 편의시설 설치, 활동 중 발생가능한 안전 사고 등 치유농업법에 충분히 규정되지 않은 현장 변수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여 대비해야 함
 -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농지에 설치될 수 있도록 「농지법」 등을 개정하거나 치유농업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치유농업시설에는 유모차, 휠체어 등의 진입로, 휴식공간,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하고, 시설의 안전, 품질 기준도 더욱 엄격하게 운영해야 함
 - 불의의 사고로부터 방문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치유농업 경영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편지은 ☎ : 02-6788-4594

관련부처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
☎ : 063-238-1081

326) 농촌진흥청,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2021.12., p.166.

327) 치유농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28)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보도자료, 「서울시, 강동에 12,803㎡ 규모 치유농업센터 만든다」, 2021.4.7.

산림청

임도(林道) 확충 대책

1 현황

■ 임도(林道)³²⁹⁾는 효율적인 임업경영과 산림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필요불가결한 시설이며, 산불확산방지, 산림휴양이나 산촌의 생활환경 개선, 지역산업의 진흥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임도는 목재생산증대 효과, 휴양효과, 운행비 절감효과, 산불확산방지 효과, 병해충방제 효과, 단기소득임산물 재배면적 확대효과, 생산비 절감 효과 등의 편익을 창출할 수 있고, 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있음
 - 산불확산방지 효과는 산불 발생 시 신속히 현장에 도달함으로써 화재 진압시간의 단축과 이로 인해 산화 면적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함
- 임도 1km 기준으로 임도설치 편익을 살펴보면, 목재생산증대 효과는 약 4억 8천만 원, 산림 휴양효과는 약 9,700만 원, 산불확산방지효과는 약 259만 원, 단기소득임산물 재배면적 확대 효과는 약 1만 원, 생산비 절감 효과는 약 1,190만 원 등 총 약 5억 9,400만 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³³⁰⁾

329) ○ 임도(林道)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4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로서 1) 간선임도, 2) 지선임도, 3) 작업임도로 구분됨
 - 한간선(幹線)임도: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 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
 - 지선(支線)임도: 일정구역의 산림경영 및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간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 작업(作業)임도: 일정구역의 산림사업 시행을 위하여 간선임도·지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 임도는 설치 주체에 따라 1) 국유임도, 2) 공설임도, 3) 사설임도로 구분할 수 있음
 - 국유임도: 국가가 설치하는 임도
 - 공설임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임도
 - 사설임도: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경영하는 자(국유림에 분수림을 설정한 자를 포함)가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임도

330) 전현선 등, 『임도 건설의 투자효과 분석』, 연구보고 13-08, 국립산림과학원, 2013.11, pp.8~14.

- 한편 임도 신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약 5,180억 원, 고용유발효과 3,355명, 부가가치창출효과 약 2,000억 원으로 보고됨³³¹⁾

■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림에서 차지하는 임도 비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산림의 효율적 경영에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임도(林道)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약 23,207km 중 국유임도는 약 7,420km, 민유임도는 15,787km로 민유임도의 비중이 68%를 차지함³³²⁾

- 임도 2020년 기준 주요국의 임도밀도는 독일(46m/ha), 오스트리아(45m/ha), 일본(13m/ha), 미국(9.5m/ha), 노르웨이(6.6m/ha)이며, 이들 국가들은 한국(3.66m/ha)에 비해 높은 임도밀도를 가지고 있음³³³⁾

- '2009년 국정감사요구자료'³³⁴⁾에서는 독일(44.9m/ha), 노르웨이(10.1m/ha), 미국(11.8m/ha), 일본(5.4m/ha), 한국(2.4m/ha) 순으로 나타났음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산림에서 사유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하므로 사유림에서의 임도를 확충하지 않고서는 전체 임도밀도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 2020년 기준 임도시설 비율: 국유임도 32%, 민유(사유)임도 68%

■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높은 임업경쟁력을 갖추게 된 데는 오래 전부터 임도를 비롯한 산림경영 인프라에 투자하였기 때문임

- 임도가 있기에 숲에 접근할 수 있고, 이에 임목 수확의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었음

■ 한편 산림청은 2020년 12월 23일 임도시설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며,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을 실현하겠다는 10년 이행을 담은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2021~2030)”을 발표함

- 각 임지의 특성과 연간 임도 신설량 추이를 반영하여 기본 임도밀도를 6.8m/ha로 재설정하고 '30년 전국 임도밀도를 5.5m/ha 수준으로 향상하고,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를 대상으로 기존 간선임도 이외 10년간 1,000km의 산불예방임도를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됨

331) 전철현 등, 「임도 신설 사업의 투자효과 분석」, 국립산림과학원, 2020.11.

332) 산림청, 「분야별 산림정보-기관별, 연도별 임도시설 현황」, <<http://www.forest.go.kr>>

333) 산림청, 「분야별 산림정보-주요국의 임도밀도」, <<http://www.forest.go.kr>>

334) 산림청, 『2009년 국정감사요구자료(제284회 정기국회(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 p.170.

2 향후 논의 사항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산림자원이 성숙단계에 들어서고 있어 곧 이용기를 맞게 되므로 이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가장 시급한 것은 이용을 위한 임도(林道)를 충분히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대형산불 발생 시 임도 설치 여부에 따라 산불 조기 진화 여부가 좌우되는 등 산불 대책의 주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어 임도 시설 확충은 중요한 사안임³³⁵⁾
- 특히 국유임도 확충과 함께 사유림에서의 임도(민유임도)를 보다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보조금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간선임도 기준으로 1km 당 건설비용은 2020년 기준 2억 700만 원으로 이는 2004년 1억 2,500만 원에 비해 10년간 약 65.6%가 상승했음
 - 현재 임도 건설의 경우 국유림은 전액 국비로, 사유림은 국비, 지방비, 자부담액의 비율을 70%, 20%, 10%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국비의 경우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과 동법 시행령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서 정하고 있음
 - 즉 사유림에서의 임도설치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6호에서 임도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70%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유제범 ☎ : 02-6788-4588

관련부처

산림청 목재산업과
☎ : 042-481-4275

335) 이윤재, 「임도 없는 사유림에 속수무책으로 번진 밀양 산불」, YTN, 2022.6.3.; 권광순, 「울진 산불, 이번에 하루 만에 잡았다. 조기진화는 임도 덕분」, 조선일보, 2022.5.29. 등

산림헬기 및 조종사 확보 필요

1 현황

- 산림청은 산불 예방 및 진화,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산악사고 시 인명구조 등에 2021년 기준 47대(12대 격납고)의 산림헬기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이상 기후로 인한 산불 발생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어 산림헬기를 이용한 신속한 산불 예찰 및 진화 대응은 매우 중요함
 - UNEP(유엔환경계획)³³⁶는 대형산불(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 m²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³³⁷이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14%, 2050년까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의 경우 4월까지 대형산불발생 건수가 총 8건 발생하여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산불피해 면적(23,114ha)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예년의 29.4배를 기록함³³⁸)
- 그러나 현재 산림청이 운영하고 있는 총 47대의 산림헬기 중 기령(機齡) 20년을 초과한 헬기의 비율이 전체 66%(31대)로 노후화가 높은 실정임³³⁹)
 - 운용헬기: 초대형(5,000 l 이상) 6대, 대형(2,700~5,000 l) 29대, 중형(1,000~2,700 l) 1대, 소형(1,000 l 미만) 11대 / 총 47대
 - 노후헬기(기령 20년 초과): 초대형 1대, 대형 21대, 중형 0대, 소형 9대 / 총 31대
- 또한 중·소형 헬기의 비중도 전체 약 26% 수준으로 산불 진화 시 강풍이 동반되면 이들 중·소형 헬기의 경우 운항 제한으로 산불 진화에 투입되지 못함
- 그리고 2022년 6월 기준 산림헬기 조종사 92명의 비행시간을 살펴보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336) 국제연합(UN) 조직 내의 환경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환경 전담 국제 정부 간 기구

337)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5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형 산불 및 중형·소형 산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형 산불: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
2. 중형·소형 산불: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산불

338) 울진 14,140ha 및 삼척 2,161ha 등

339)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 담당자와의 전화인터뷰 내용, 2022.6.17.

건이 2017~2019년 총 140건(2017년 62건, 2018년 36건, 2019년 42건)이며, 7일 연속 비행한 건수도 동기간 총 33건(2017년 25건, 2018년 4건, 2019년 4건)이며,³⁴⁰⁾ 산불경보 '관심단계'와 산불조심기간 중 비상대기 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조종사의 피로도 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실정임

- 「항공안전법」 상 1일 최대비행시간은 8시간이나 대형산불 재난 시 교대인원이 없어 최대비행시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함

2 향후 논의 사항

- 최근 10년간(2013~2022) 국내 대형산불은 총 22건이 발생하여 총 30,233ha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2017년 이후로는 대형산불이 매년 2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불의 예방 및 조기 진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이를 위해서는 산불 예찰과 진화를 위한 산림헬기 확충과 이를 운용하는 조종사 및 정비사 등 인력 확보는 매우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산림헬기의 부족과 노후화, 조종사 부족은 신속한 대응과 예방 체계 구축 운영에 한계가 있음을 방증함
- 따라서 운항안전 등을 고려해 노후헬기 교체는 시급한 사안이며, 강풍 등 기상악화에도 운용이 가능한 대형헬기 추가 확보, 조종사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18년 국정감사에서 2025년까지 산림헬기 50대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지적된 적이 있음
 - 한편 산림청은 2012년 부터 매년 산림헬기 도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교체가 시급한 30년 이상 소형·노후헬기에 대해 대형산불 및 강풍에도 운항할 수 있는 중·대형급 헬기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됨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유제범 ☎ : 02-6788-4588

관련부처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

☎ : 033-769-6006

340) 산림청, 「2021년도 성과계획서」, p.164.



제2부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2022년 5월)되었으나 시정요구 처리결과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음(2022.6. 현재)

상임위원회	정부부처	피감기관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47	86	2021년도 국정감사 시정요구 처리결과보고서 미채택
		한국마사회	11	6	
		한국농어촌공사	15	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5	20	
		농협중앙회	10	6	
		농협경제지주	13	8	
		농협금융지주	1	2	
		농협은행	4	2	
		농협생명	1	-	
		농협손해보험	1	2	
		축산물품질평가원	-	3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3	6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10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8	13	
	국제식품검역인증원	-	-		
	한식진흥원	-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구)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4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26	5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6	10	
산림청	산림청	63	42		
	한국임업진흥원	9	9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5		
	산림조합중앙회	6	13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64	52		
	부산항만공사	13	29		
	인천항만공사	10	16		
	울산항만공사	6	11		
	여수광양항만공사	9	1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2	21		
	수협은행	5	11		

상임위원회	정부부처	피감기관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구)선박안전기술공단	2	7	
		해양환경공단	1	12	
		한국수산자원공단 *구)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11	8	
		한국선급	3	4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3	
		국립해양박물관	-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구)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5	
		한국어촌어항공단	-	5	
		한국해양진흥공사	5	3	
	해양경찰청	-	20	22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	-	
		전라남도	-	-	
		충청남도	-	-	
		제주도	19	-	
		계 (건수)	444	541	

1 농림축산식품부

		기관	정책주제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연속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예산 확대	농업예산 확대 문제 관련하여 전 체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더욱 확 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조 한 집행률을 개선할 것	농업예산 확대 문제 관련하여 전 체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더욱 확 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021년도 국정감사 시정요구 처리결과보고서 미채택
	2	농촌진흥청	여성농업인 복지향상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연 구를 강화할 것	여성, 고령자, 청년 등의 농업인 을 위한 연구를 강화할 것	
	3	농촌진흥청	우리농산물의 가정간편식 활용준비	국내산 농산물이 가정간편식 원 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 비할 것	가정간편식 시장에서 국산원료 확 대 및 과다포장 등 환경부담을 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것	
	4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 화재단	국산 약용작물	약용작물 보급 지속 확대 및 우수 신품종 보급 대책을 마련할 것	- 국산 약용작물의 자급률을 향 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약용작물 원종보급사업 및 우수 신품종 보급 확대에 노력할 것	
	5	한국마사회	불법사설경마 축소를 위한 대책 마련	신고포상금 증액, 포상금 지급기 준 완화, 관계기관 협력 등 불법 사설경마 축소를 위한 대책을 마 련할 것	말산업 발전 및 불법사설경마 흡 수 등을 위해 부작용 축소대책이 포함된 온라인 발매방식의 도입 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6	한국마사회	말산업 육성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졸업 생 취업을 향상을 위한 지원노력 을 강화할 것	한국마사회 상징성을 고려하여 승마선수단에 대한 지원노력을 강화할 것	
	7	한국농수산물식품 유통공사	로컬푸드 확대	농협 위주로 운영되는 로컬푸드 를 벗어나, 귀농인·영세농 등 비 농협 로컬푸드를 확대할 것	로컬푸드 직매장의 지역농산물 외 일반 농산물 판매 문제 및 매 출 감소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8	한국농수산물식품 유통공사	수출인프라 강화 추진	수출인프라강화사업 추진 시 신선 농축산 식품 수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수출인프라 강화사업에서 신선농 산물 수출을 제고할 것	
	9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조합원수 감소 대응 방안	농촌 고령화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조합원수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조합원 감소 및 농업인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0	농업경제 지주회사	하나로마트 PB상품의 국산 원료 사용 비중 제고	하나로마트 PB제품의 국내산 원 료 사용 비중을 제고할 것	하나로마트 PB상품 국산원료 사 용 비율을 제고할 것	
	11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재해보험 보장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병충해 및 품질 저하 피해 보장 확대 필요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품종 확 대와 보장범위 확대, 보험상품 개 선방안을 제시할 것	
2년 연속	12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 육성	청년농 육성을 위해 한농대 입학 생 수를 증원할 것	청년농업인을 비롯한 신규농업인 의 유입을 위해서 그간 농식품부 에서 추진한 청년농업인 육성 정 책을 재점검하고 확실한 유인책 을 마련할 것	
	13	농림축산식품부	외래병해충	외래병해충 국내 유입 차단을 위 해 국경검역을 더욱 철저히 해줄 것	씨앗류 품명을 허위로 기재하여 판매하는 해외소평물을 유해사이 트로 지정·차단하고, 자진신고 홍보 강화 및 과태료 부과 등 처 벌을 강화하여 외래병해충이 들 어오지 않도록 검토할 것	

	기관	정책주제	2019년	2020년	2021년	
2년 연속	14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관련 중앙대책 본부를 가동하는 등 총리가 주관 하는 대응 시스템을 갖출 것	아프리카돼지열병(AFS) 방역 관 련 축산농가의 지원이 현실적으 로 이루어져야 하며, 재입식 후 출하시까지 추가지원이 될 수 있 는 대책을 마련할 것	2021년도 국정감사 시정요구 처리결과보고서 미채택
	15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을 위해 개 설자 요청 시 시장도매인제 도입, 공영도매시장 상장예외 인정범위 명확화, 경매사 업무 추가, 대금 정산 조직 설립, 중도매인 개선명 령제 도입 및 ICT 활용 온라인 거 래 확대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 하는 등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 할 방안을 검토할 것	
	16	농촌진흥청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연구 과제 선정	과제선정위원회 구성에 농업인들 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연구과제 선정 시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 영할 수 있도록 할 것	수요자 중심현장의 목소리를 반 영하고, 도전적인 과제수행을 강 화할 것	
	17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방 제범위 적절성 검토 등 대책을 마 련할 것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급을 개선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보 안할 것	
	18	농촌진흥청	국내산 품종 자급률 확대	국내산 품종 자급률 확대 및 종자 수입액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	국내산 품종 자급률 확대 및 종자 수입액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	
	19	한국마사회	직원 비위행위 관련 징계	직원 비위행위 관련 징계를 강화 하고, 징계기간 급여 지급의 적정 성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할 것	임직원 비위행위 재발방지를 위 해 관련 징계기준을 강화할 것	
	20	농협금융지주	금융지주 회사사	금융지주 회사의 투자자보호와 불완전판매에 대한 점검 방안을 마련할 것	금융지주 회사의 금융소비자보 호와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개 선방안을 마련할 것	
2년 단속	21	농림축산식품부	태양광		농촌태양광 보급이 확대되고 있 으나 영농형 태양광의 보급은 소 극적이므로 이를 개선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	
	22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의 불법전용 관련		농지 불법전용을 줄이기 위해 사 후관리 강화 및 관련 통계 개선을 검토할 것	
	23	농촌진흥청	R&D		R&D 연구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정성적 성과뿐만 아니라 정량적 성과도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 도록 노력할 것	
	24	농촌진흥청	농기계 안전교육 강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 육 및 연구 등을 강화할 것	
	25	한국마사회	영천경마공원		영천경마장 실시설계를 조속히 추진하여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26	한국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수상태양광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기관	정책주제	2019년	2020년	2021년
27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직거래 활성화 사업		유통개선 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유통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바,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2021년도 국정감사 시정요구 처리결과보고서 미채택
28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범농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29	농협경제지주	농촌사랑상품권 판매 활성화		농촌사랑상품권 판매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것	
30	농협은행	착오송금 예방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1	축산물품질 평가원	공정한 인사규정 관련		공공기관으로서 성별에 관계없는 공정한 인사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산림청

	기관	정책주제	2019년	2020년	2021년도
3년 연속	1	산림청	산불감시카메라 점검 및 교체 시 급	산불예방 및 진화에 대한 산불 대책 이행을 철저히 할 것	2021년도 국정감사 시정요구 처리결과보고서 미채택
	2	산림청	산사태 우려 지역 방지 방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제도 를 개선할 것	
	3	산림청	산림헬기 유지보수 계약방법 개 선, 야간산불 헬기진화 운영 효 용성에 대한 검토 필요	지자체 임차헬기에 국비를 지원 하고 노후헬기는 교체할 것	
	4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대책	재선충병 방제 약제에 대한 사전 검증 철저	
	5	산림청	산사태위험등급 개선책 마련	산사태 위험등급 개선책(등급구 분, 기초 자료 등) 마련	
	6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인턴 사업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인턴 사 업의 취업률, 저조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년 연속	7	산림조합중앙회	경영구조 개선	산림조합 경영구조 개선 필요	2021년도 국정감사 시정요구 처리결과보고서 미채택
	8	산림조합중앙회	조합원 자격	조합원 자격에 대한 제도 개선 필 요	
	9	산림조합중앙회	푸른장터 소핑몰 홈페이지의 철 저한 관리 필요	푸른장터를 임산물 전문소핑몰로 발전시킬 방안을 마련할 것	
2년 단속	10	산림청	남북산림협력	남북산림협력사업은 국내·외 상 황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	2021년도 국정감사 시정요구 처리결과보고서 미채택
	11	산림청	R&D사업	R&D사업의 특허·출원 증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2	산림청	소금을 이용한 침당굴 제거사업	소금을 이용한 침당굴 제거사업 을 확대할 것	

	기관	정책주제	2019년	2020년	2021년도
13	산림청	산림레포츠 활성화		임도를 활용한 산림레포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14	산림청	산지태양광발전시설		산지태양광발전시설의 사전안정성 검토 등 관리 점검을 강화할 것	
15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국내 친환경 방제기술을 도입할 것	
16	한국임업진흥원	플라스틱 대체재 개발		플라스틱 사용 증가에 따른 목재제품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3 해양수산부

	기관	정책주제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연속	1	해양수산부	일본 수산물 활어차의 방시능 안전관리 강화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국내 공급과잉에 대해 국내 양식어가 보호를 위한 정책을 검토할 것	2021년도 국정감사 시정요구 처리결과보고서 미채택
	2	해양수산부	어구위반 TAC제도 관련 휴어기 지원, TAC 대상어종 확대, TAC 조사원 확충, ABC 산정 기준 개선 등 TAC 제도 부작용 최소화 노력	- 수산생물질병 발생에 대한 해수부의 철저한 방제 및 방역관리인력을 확충할 것 - 적정 어구 사용량 대비 실제 사용량 과다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3	해양수산부·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뉴딜사업 어촌뉴딜 300사업의 사후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	- 어촌뉴딜300 사업을 전체 어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어촌뉴딜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인프라·특화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할 것	
	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무자격 조합원 무자격 조합원 정비 필요	무자격조합원 관리 및 배당금 지급 대책을 마련할 것	
	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해상풍력발전소 문제 어민 입장 대변하여 해상풍력발전소 설치 반대 노력 필요	정부 해상풍력 정책에 있어 수협이 주도적인 역할 수행하고,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생방안을 마련할 것	
	6	수협중앙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국가정책보험으로 전환 필요	양식어업재해보험 손해율이 높고 가입률이 감소하는 등 미비한 측면이 있어, 가입률을 높이고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3년 연속	7	수협중앙회	어촌계 어업인 감소 및 고령화 대비 어촌계 지원 강화 필요	중국 불법어업에 적극대응하고,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에 따른 담보금, 해상풍력발전소 이익금이 어업인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8	수협중앙회	학교급식에 수산물 공급 등 학교급식 수입수산물 납품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 필요	학교급식에 국내산 수산물 사용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기관	정책주제	2019년	2020년	2021년
	9	수협은행	어업인 지원	어업인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 우대방안을 마련할 것	어업인을 위한 상품 개발 등 어업인 지원 취지를 구현할 것
	10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TAC 소진율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 TAC 조사원 증원 필요, IT 기술 도입을 통한 TAC 모니터링 필요 등 TAC 제도 개선 필요	TAC 관리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조사원 증원, 현장사무소 확대 등으로 체계적인 수산자원조사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
	11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인공어초 사업	공단 발주 용역의 수의계약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인공어초 적지 조사시 생물·물리·해양 쪽의 다양한 분야의 사전조사를 실시할 것
2년 연속	12	해양수산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기운항 국내외 선박 등을 활용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방사능 감시체계를 확대할 것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확산 시뮬레이션 실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적극적 대응·공조방안을 마련할 것
	13	해양수산부	외국인선원 관리	외국인선원 관리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외국인선원 송출입관리를 수협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4	수협중앙회	상호금융 연체대출금	상호금융 연체율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상호금융 연체대출금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15	수협중앙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및 환수율 제고를 위한 내부 대책을 세울 것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환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검사 관련	뉴시어선 안전성검사 등 선박검사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등을 위하여 선박검사원을 증원할 것	연안여객선 해양사고예방을 위해 선박검사 등을 강화할 것
2년 단속	1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직장 내 어린이집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할 것
	18	수협은행	가계대출		가계대출 폭증에 대한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19	수협은행	고액연봉자 연봉 적정성		고액연봉자 연봉 적정성을 검토할 것
	20	수협은행	여성 직원 및 임원 비율 부족		여성 직원 및 임원 비율 부족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일 2022년 8월 2일
발행 김만흠
편집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전화 02. 6788. 4570
인쇄처 명문인쇄공사 02. 2079. 9200

1. 본 책자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nars.go.kr>) '연구 보고서'의 '국정감사관련(보고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SN 2671-9444

발간등록번호 31-9735023-001712-10

© 국회입법조사처, 2022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발간등록번호 31-9735023-001712-10

ISSN 2671-9444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